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Juvenile Justice Agencies' Response to COVID-19

조영오·최지선·박선영·정지혜·김보람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간사

코로나 19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사법기관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으며, 소년보호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등이 대부분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소년보호기관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했고 이는 직원, 기관을 접하는 소년 및 보호자들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의 주된 설립목적은 기관을 접하는 소년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들의 품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감염병 방역이 소년보호기관의 주된 업무가 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지만 이는 방역이라는 물리적인 측면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년보호기관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법무부 자료에 대한 양적분석과 소년보호기관 직원, 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방역과 교육의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변화가 직원을 비롯해서 소년 및 보호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 소년보호기관은 코로나 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년보호기관이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바쁜 중에도 이 연구를 흔쾌히 함께해준 최지선 박사님, 행정업무와 편집을 맡아준

ii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송승연 조사연구원, 연구진 이상의 열정으로 연구팀과 법무부의 가교역할을 해주시고 연구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주신 오현아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 소년보호기관의 대응을 집필해주신 박선영 교수님, 정지혜 박사님, 김보람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지원을 비롯해서 현장경험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통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님, 이현구 서기관님, 박영욱 계장님, 소년범죄예방팀 양현규 팀장님, 이승원 사무관님, 김종진 계장님, 범죄예방정보화센터 이종원 계장님을 비롯해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중 잠깐 곁길로 빠져 방황의 시기를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방황을 마치고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모든 이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이시기에 소년보호기관에 있는 우리의 미래인 소년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 제일 앞에서 애쓰는 소년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마음으로부터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20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조영오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조영오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9
1. 연구 대상	9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1
제2장 조영오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13
제1절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	15
1.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	15
2.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소년보호기관 업무지침	16
제2절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25
1. 코로나 19가 소년원 처분에 미친 영향	25
2. 코로나 19가 소년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미친 영향	29
제3절 소년보호관찰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36
1. 결정전조사	37
2. 지도·감독 실시 현황	38
3. 수강명령	40
4. 사회봉사명령	42

iv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5. 구인 및 구인 후 석방 현황 45
제4절 소결 46

제3장 최지선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심층면접 51

제1절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53
1. 소년원 직원 54
2. 소년원생 소년 및 보호자 66
3. 소결 72
제2절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74
1. 보호관찰소 직원 74
2. 보호관찰 대상 소년 및 보호자 88
3. 소결 96
제3절 분류심사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시사점 98
1. 업무변화 98
2. 대응 한계와 시사점 99

제4장 박선영·정지혜·김보람

각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101

제1절 미국 103
1. 미국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03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04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08
4. 대응 현황 114
5. 소결 119
제2절 영국 121
1. 영국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21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23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27
4. 대응 현황과 향후 방향	130
5. 소결	138
제3절 독일	140
1. 독일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40
2. 코로나 19가 독일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42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50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154
5. 소결	156
제4절 일본	158
1. 일본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58
2. 코로나 19가 일본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60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시설에서의 운영 지침	166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168
5. 소결	169

제5장 조영오·최지선

결론 및 제언 171

제1절 소년보호기관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	173
1. 격리·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재배치	173
2. 소년사법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조	176
3. 감염병 대응 상세 매뉴얼 개발 및 가상훈련 실시	178
제2절 소년보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제언	179
1. 직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	179
2.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180
3.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182

참고문헌 185

Abstract 197

부록 201

〈부록 1〉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 201

〈부록 2〉 형사시설, 입국자수용소 등 면회 관계 - 면회를 위해 교정시설
방문하는자에 대한 요청- 213

〈부록 3〉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2012년 법률 제31호」 214

표 차례

〈표 1-1〉 보호처분의 종류	10
〈표 2-1〉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및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20
〈표 2-2〉 개방처우 운영 현황	36
〈표 2-3〉 지도·감독 실시 현황	39
〈표 2-4〉 수강명령 집행 현황	42
〈표 2-5〉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황	44
〈표 2-6〉 구인 및 구인 후 석방 현황	45
〈표 3-1〉 조사대상자 정보(소년원 직원)	54
〈표 3-2〉 조사대상자 정보(소년원생)	67
〈표 3-3〉 조사대상자 정보(소년원생 보호자)	67
〈표 3-4〉 조사대상자 정보(보호관찰소 직원)	74
〈표 3-5〉 조사대상자 정보(보호관찰 대상 소년)	89
〈표 3-6〉 조사대상자 정보(보호관찰 대상 소년 보호자)	89
〈표 4-1〉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 가이던스	111
〈표 4-2〉 메사추세츠 주 청소년서비스 부 가이던스	112
〈표 4-3〉 플로리다 소년사법부 코로나 19 주요 대응	115
〈표 4-4〉 텍사스 소년사법부 코로나 19 주요 대응	116
〈표 4-5〉 샌프란시스코 보호관찰부 코로나 19 주요 대응	117
〈표 4-6〉 텍사스 현장 보호관찰 서비스(Field Probation Services)	118
〈표 4-7〉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던스	127
〈표 4-8〉 소년사법 위원회의 리플릿	130
〈표 4-9〉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던스	131
〈표 4-10〉 소년사법 위원회의 입장문	133
〈표 4-11〉 소년범죄 대응팀의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 진행	134
〈표 4-12〉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역할	160
〈표 4-13〉 오사카구치소의 대처 현황	161
〈표 4-14〉 도쿄구치소의 대처 현황	164
〈표 4-15〉 교도구치소의 코로나 19 감염대비 상황 시나리오 및 장면별 훈련 현황	165
〈표 4-16〉 교정시설의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방지대책 가이드라인	167
〈표 4-17〉 도쿄구치소의 코로나 19 감염 환자에 대한 대처 예(2020.04)	169



그림 차례

[그림 2-1] 소년원(9호·10호) 수용인원	26
[그림 2-2] 소년원(9호·10호) 신규 입소자	27
[그림 2-3] 소년원(9호·10호) 퇴원자	28
[그림 2-4] 소년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	28
[그림 2-5] 8호 처분자 입소 현황	29
[그림 2-6] 교과교육 받은 인원	30
[그림 2-7] 직업훈련 받은 인원	31
[그림 2-8] 인성교육 받은 인원	32
[그림 2-9] 보호자 교육 받은 인원	33
[그림 2-10] 종교행사 참여 인원	33
[그림 2-11] 면회 인원	34
[그림 2-12] 전화사용 횟수	34
[그림 2-13] 결정전조사 접수 인원	37
[그림 2-14] 결정전조사 접수에서 회보까지 소요 기간(일)	38
[그림 2-15] 지도·감독 횟수	39
[그림 2-16] 수강명령 접수 인원	40
[그림 2-17] 수강명령 집행 인원	41
[그림 2-18] 사회봉사명령 접수 인원	43
[그림 2-19] 사회봉사명령 집행 인원	43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분류심사원)과 소년보호관찰의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여 양적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 소년, 직원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 소년보호기관(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다.

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10호)의 경우 2019년 대비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 입소자, 퇴원자 및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개월 이내 소년원 처분(8호)의 경우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3월에서 5월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과는 달리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소년원에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장단기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교과교육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무단결석 등으로 인한 퇴학처분 등이 감소한 결과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받는 소년들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및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단,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소년원 출입이 금지된 때에는 소년원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한편,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보호자교육의 경우 코로나 19의 확산이 심한 경우 감소 혹은 중지되었고, 종교행사의 경우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일부 소년원에서만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면회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화사용은 증가하였다. 아울러 소년원 밖으로 나가야 되는 봉사활동, 체험학습, 외출, 주말가정학습 등과 같은 개방처우는 거의 실시되지

2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않았다.

소년보호관찰의 경우 결정전조사 접수인원 및 접수에서 회보까지 걸린 기간은 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코로나 19 발병 이후 기존 대면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도·감독의 경우도 실시 횟수에 있어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이 상당부분 증가하였다. 수강명령 접수인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후 대체로 증가한 반면 집행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8월과 9월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사회봉사명령 접수인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집행인원은 수강명령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과 9월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구인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구인후 석방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소년원(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의 직원과 대상 소년 및 소년의 보호자와의 심층 면담 결과에 따르면, 소년보호기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비상사태를 처음 경험하면서도 보호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방역과 소년의 보호와 지도의 양면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의 경우 위탁 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규입소자를 분리하고, 폐쇄형 면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외부강사 및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보호관찰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집행을 실시하고, 비대면 보호관찰을 하는 등 한정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기관에서는 방역을 위한 공간적인 제약, 직원의 업무 과중, 상황별 매뉴얼 미비, 부처 간의 협력 부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호 소년과 보호자의 경우 소년보호기관의 방역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안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소년원생 소년의 경우 제한적인 활동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소년원생과 보호자 모두 제한적 면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생활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의 경우 비대면 보호관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없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보호관찰의 효과 면에서는 대면보호관찰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 소년의 보호자는 보호관찰 자체에 대해

여 매우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제한적인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기관과 구성원의 노력으로 현재의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보호대상 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보호기관의 안전유지는 문제 상황을 임시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비상시·장기적인 위험 수준이 매우 높아 대응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년보호기관 업무관련 통계 분석, 소년보호기관 직원, 소년 및 보호자와의 심층면담 및 외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소년보호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감염병 확산 방지 측면과 업무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소년보호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련하여 첫째, 감염병 감염자, 유증상자 및 시설 신규 입소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혹은 업무와 교육을 위한 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 특히, 분류심사원과 8호 처분 시설의 경우 사회 내에 있던 소년이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기간동안 격리시킬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경찰 및 법원 등 소년사법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집단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수감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과 같이 대면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처분을 일시적으로라도 감소시키거나 유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방역물품 조달 및 관련 조치를 위해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충분한 가상훈련을 통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첫째,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은 직원들의 기존 업무에 방역이라는 업무가 추가되고 심리적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년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나 교육 중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때에도 소년보호기관의 기본적인 업무 및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0년

4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한 해 동안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 직원, 소년 및 보호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년복지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서 론

조 영 오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2월 24일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77,920,564명이었으며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람은 1,731,901명이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2020년 12월 24일까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54,770명이었고 코로나 19로 사망한 사람은 773명이었다.²⁾ 이처럼 코로나 19는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대면 접촉의 제한은 사회, 경제 및 문화를 비롯해서 우리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19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21일 경찰청 본청에서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자가 머물렀던 층 전체가 일정 기간 동안 폐쇄되었고,³⁾ 법원행정처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2일부터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으며,⁴⁾ 2020년 12월

1) WHO,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usjwsaLp7QIV0IVgCh3ruAlzEAAAYASABEgJvDvD_BwE, 최종검색 : 2020.12.28).

2)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5일)(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1588&act=view, 최종검색 : 2020.12.28).

3) 한동훈, 경찰청 본청도 뚫렸다...코로나 19 첫 확진자 발생, 서울경제 2020년 8월 21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Y90SXT>, 최종검색 : 2020.12.28).

4) 표태준, 코로나 확산에... 대법 “법원 3주 휴정 권고”, 조선일보 2020년 12월 21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1/ZFSRA2OCRZEGHLHALHSENAEWEVU/, 최종검색 : 2020.12.28).

8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25일 기준으로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감염자는 직원 20명을 포함하여 총 498명으로 늘어났다.⁵⁾

소년보호기관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소년원에서는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족수련회, 사회봉사, 민속촌 방문과 같은 외부 프로그램 및 종교행사 등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였고, 면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면회 인원을 제한하다보니 면회 시간을 4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였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성교육의 경우도 외부인의 소년원 출입을 금지하다보니 소년원 직원들이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⁶⁾ 사회 내 처분인 소년보호관찰의 경우 소년원보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호관찰관의 소년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결정전조사가 대부분 대면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집단적으로 대면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소년보호관찰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프로그램 및 교육의 취소 및 집행방식의 변경(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의 변화가 소년보호기관의 설립목적인 소년 범죄자의 품행개선, 사회정착 지원 및 재범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대면으로만 실시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로 인한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에 있어서의 변화는 소년보호기관을 접하는 소년의 정서 및 행동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의 경우 소년원 출원 후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존감 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가족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위한

5) 이제희,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288명 어제 코로나 19 추가 확진, KBS NEWS 2020년 12월 25일자(<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0137>, 최종검색 : 2020.12.28).

6) 법무부 보도자료, 코로나는 '소년원'에도...가족 느낄 '부모님 세족식'도 취소 (<http://www.moj.go.kr/bbs/cppb/33/524675/artclView.do>, 최종검색 : 2020.12.28).

프로그램 및 교육이 제한되다보니 소년들이 출원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들을 비대면으로 지도·감독하게 되면서 소년의 태도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없고 이는 소년의 재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방식에서의 업무 전환은 소년들의 품행개선 및 재범방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기관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새롭게 부과된 감염병 예방과 기존 업무인 소년의 교육 집행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향후 이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음을 대비하여 소년보호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1. 연구 대상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처분과 같은 사회 내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상시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이라는 위험이 소년과 담당 보호관찰관의 면담 방식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소년원 처분과 같은 시설 내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자신이 코로나 19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내 처분을 받은 소년에 비해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험은 낮을 수 있지만 외부활동이 중단되고 면회가 제한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인의 소년원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년원생의 고립감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를 사회 내 기관과 시설 기관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자 한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에 의하면 소년

10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릴 수 있다. 단, 1호·2호·3호·4호, 1호·2호·3호·5호, 4호·6호, 5호·6호, 5호·8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0가지 처분 중 1호~5호는 사회 내 처분에 해당하며 6호~10호는 시설 내 처분에 해당한다.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는 2호인 수감 명령 중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집행을 위탁한 경우와 3호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 장·단기 보호관찰의 경우이다. 시설 내 처분인 6호에서 10호 중 소년원에서 소년을 수용하는 경우는 7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대전소년원에 위탁된 경우와 8호에서 10호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 **〈표 1-1〉 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감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⁷⁾

본 연구는 법무부(즉,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과 향후 감염병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관찰에서 집행을 담당할 경우(2호~5호)와 7호 처분을 제외한 소년원에 위탁한 경우(8호~10호)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7)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의 종류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최종검색 : 2020.12.28).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있어서의 변화와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소년보호기관에 내린 업무지침에 대해 정리하였다.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있어서의 변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분석하였고,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은 법무부에서 제공한 소년원, 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에 보낸 업무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에 미친 영향 및 소년보호기관의 대응은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분석의 경우 법무부에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업무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내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소년원의 경우 소년원 수용인원과 관련된 통계와 교육 및 프로그램 관련 통계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서는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 입소자 인원, 출원생 인원 및 임시 출원생 인원을 파악하였다. 교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외부의 접촉이 비교적 적은 학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비롯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한 보호자교육, 종교 집회, 면회 및 개방처우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소년보호관찰과 관련하여서는 결정전조사, 지도·감독,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구인/구인 후 석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에 있어서 코로나 19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9년 1월 1일에서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직원, 소년원 재원생 및 보호관찰대상 소년, 소년원 및 보호관찰대상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정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인천 권, 경상·강원권, 전라·충정 권으로 구분하여 심층면담에 참여할 기관 및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외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방식을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문헌연구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공개되어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형법, 소년범죄

12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소년보호시설과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제 2 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조 영 오

제2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제1절 |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

일선 소년보호기관(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은 법무부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무부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따라 지침을 정한다. 그러므로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방침과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에 있어서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보도 자료를 기초로 정리하였다.⁸⁾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 정부는 1월 8일에 4단계로 이루어진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의 첫 번째 단계인 ‘관심 단계’를 발표하였다. 이 후 1월 20일에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날 정부는 경보수준의 두 번째 단계인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고, 1월 27일에는 세 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 후 소위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월 23일에 정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의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5,000명대를

8)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도 자료를 기초로 정리하였음(http://ncov.mohw.go.kr/tcmBoardList.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140&gubun=, 최종검색 : 2020.12.28).

16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넘어섬에 따라⁹⁾ 정부는 3월 22일부터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고 이 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였다.

4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게 되고 이에 정부는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5월 6일 이후로는 더 완화된 형태인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대응 방침을 변경하였다. 정부는 수도권외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8월 1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8월 23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수도권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였다. 이 후 수도권외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9월 13일에 수도권에 시행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계를 낮추는 대신 9월 27일까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로 10월 12일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였다.

2020년 1월에서 10월까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을 정리하면 코로나 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감염병 대응 방침을 강화하였다. 그 후 5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누그러지고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 19 대응 방침을 완화시켰다.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방침을 다시 강화하였다가 10월 중순부터 다시 대응 방침을 완화시켰다.

2.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소년보호기관 업무지침

법무부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라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일선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업무지침은 정부의 대응방침 발표시기와 비슷하다.¹⁰⁾

9) 안현선, [코로나 19] 확진자 5000명 돌파 ... 5186명 확진·29명 사망, 세이프타임즈 2020년 3월 3일자(<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65>, 최종검색 : 2020.12.28.).

10) 법무부의 업무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구성하였음.

정부에서 1월 27일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경계 단계로 발표하면서 법무부에서도 일선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업무지침을 내리기 시작했다. 업무지침의 주된 내용은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것으로 코로나 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지침, 예방교육 실시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인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대면으로 이루어진 업무를 비대면(보호자 상담) 혹은 기존 방식을 변경(면회의 경우 폐쇄형 면회실 설치)하여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 감염 위험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소년보호시설의 업무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소년원의 경우 대면면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었고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였으며, 외부 강사의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아울러 조기 임시퇴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년원생들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배식 방식을 바꾸었으며, 8호 처분 시설의 경우 교육을 전면으로 중단하였다. 직원의 경우 원격 및 자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권장하였고 시차출퇴근제 및 증식시간 2부제를 실시하였으며 대면회의 및 보고를 영상회의 및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출장도 자제하도록 하였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집합교육(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개별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대면 지도·감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외부위원 상담, 멘토링, 불시 약물검사 등을 중지하였다. 아울러 구인장 발부를 제한하는 대신 구인 후 석방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를 우선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손세정제를 비치하였으며, 출입문을 일원화하였고 외부인 출입 시 지정한 독립된 공간만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4월 20일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5월 5일에 더 완화된 조치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소년보호기관에 업무지침을 송달하였다. 이번 업무지침은 소년보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의 경우 보호자 상담(마스크 착용, 2m 거리유지), 폐쇄형 면회실에서의 대면면회 및 타 소년원 이송 등을 재개하였고, 외부 유급강사 및 인성교육, 예·체능교육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8호 처분 교육은 일반학교 등교 시기에 맞추어 재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방처우는 지속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소년에게 간식지원, 화상면회 및 전화통화, 스포츠 활동

등을 확대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리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집중: 대면 지도감독 주2회, 주요 I: 대면 지도감독 주1회, 주요 II 및 일반: 통신 지도) 하였으며, 약물검사는 재범위험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개시 출장 및 구인장 신청을 위한 소재추적은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구인장 발부자에 대한 소재추적은 지양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경우 3일 연속, 주 3회 이상 무단가출로 인한 위반자는 출장지도 등을 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수강명령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집행하다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15명 내외로 집행하도록 완화하였다.

8월 중순 이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다시 격상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의 업무 방식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으로 전환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의 경우 다시 유급강사 및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고 타 기관으로의 이송을 제한하였으며, 폐쇄형 개별면회를 중지하고 화상면회·전화통화를 확대하였으며, 분류심사 시 보호자 대면상담을 중지하였다. 보호관찰소의 경우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으로 업무 방식이 변경되었다. 예를 들어, 집합교육을 전면 개별교육으로 대체하였고, 관리 등급에 상관없이 잔여 지도감독은 통신지도로 대체하였으며, 약물검사는 선별적으로 실시하였고 소재추적도 제한하였다. 또한, 외부위원 연계 상담 및 멘토링을 중지하였고 수강명령은 지역 사정에 따라 소집단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우선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10월 12일에 수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기초해서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소년보호기관이 다시 제약이 완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소년원의 경우 폐쇄형면회를 재개하였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유급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8호 처분의 경우 방침지침을 준수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분류심사관의 보호자 대면상담을 재개하였고(마스크 착용, 2m 거리유지 등), 타기관 이송도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교정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외출을 실시하였고, 경찰, 변호사, 국선보조인 등 공무상 접견의 경우 폐쇄형 면회실 내에서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보호관찰

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개시교육·처우프로그램 등 집합교육의 경우 개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봉사의 경우 직접 집행 유지 및 협력기관 사전 논의 후 배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강명령의 경우 지역별 감염추세에 따라 집단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경우 집단 운영을 허락하였으며, 조사의 경우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무부에서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에 내린 지침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방침의 강도에 상응하여 즉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의 감염 전파 정도에 있어서 지역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표 2-1》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및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발표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발표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p>▶ 20.01.08 : 관심단계</p> <p>▶ 20.01.20 : 주의단계 격상</p> <p>▶ 20.01.27 : 경계단계 격상</p>	<p>※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수용자 등 감염예방 교육 실시 • 감염 직원 발생 시 병가 조치 • 감염 직원 증가 시 자체 수용관리 및 집행대책 수립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 	<p>1월 28일/29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발생 시 위탁 변경 등 신청 • 외부 병원 진료 연기(응급 환자 제외) • 외부 활동, 외부 자원봉사자 출입, 면회 및 종교 활동 전면 금지 • 폐쇄형 개별 면회실 운영 • 정문 체온측정 부스 설치 및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설치 • 분류심사관의 보호자 대면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대체 	<p>보호관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 대상자 감염 시 집행연기
		2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및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요청 시 한시적 집행 중지(필요 시 개별 집행) • 대면 지도·감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청사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무실 내 손세정제 비치 • 출입자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철저, 직원 여행 자제 등
<p>▶ 20.02.23 : 심각단계 격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수용소년 14일간 이동 경로 파악 • 면회 전면 중지, 화상면회 및 전화통화 확대 • 소년원 조절 이송 실시 및 유급강사 등 외부출입자 전면 통제 • 관찰법원 등 업무 협의, 소년원 송치 및 위탁 등 한시적 중지 • 8호 처분 교육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세정제 사용, 출입문 일원화 • 외부인 출입 시 지정한 독립된 공간만 활용 •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및 확진자와 동선 검출 시 병가, 연가, 공가 등을 통해 자가 격리 • 감염국가 여행 통제 • 집합교육을 개별교육으로 대체 • 심층면담, 지도, 감독 등 비대면으로 실시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발표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면담 한시적 정지 안내문 발송 외부위원 상담 및 멘토링 중지(필요시 유선) 불시 약물 검사 등 중지 구인장 발부자에 대한 현지 출장을 통한 소재추적 일시 중지 (비대면 활용) 준수사항 위반이 경한 경우 구인 후 석방 적극 활용 준수사항 위반이 중한 경우 통상 제재조치 실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교육·집행 등 연기 조사대상자의 회보기일 탄력적으로 조정 및 유선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 임시퇴원 실시 수용사고방지 훈련을 코로나 19 대응훈련으로 대체 학생식당 자율배식 한시적 중지 원격 및 자택근무, 연가 권장, 시차출퇴근제, 중식시간 2부제 운영 대면회의 및 보고를 영상회의 및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출장 자제 교과교육으로 인한 이송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수사항 위반이 중한 경우를 강력사건의 제범을 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 및 발열체크와 2주 동선 확인 철저 준수사항 위반자의 구인 후 석방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22 ~ 20.04.19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 20.04.20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월 1일/6일	<p>※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택근무 완화 및 연가 적극 활용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2부제 유지 회의 및 보고의 서면 대체,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유지 	
	4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유급강사 및 인성교육, 예·체능교육 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8호 교육은 일반학교 등교 시기에 맞추어 재개 분류심사관 보호자 대면 상담 재개 (마스크 착용, 2m 거리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도감독 (심층: 대면 지도감독 주2회/주요 1: 대면 지도감독 주1회/주요 II, 일반: 통신지도) 약물검사는 제범 등을 감안 선별적 실시 개시 출장, 구인장 신청을 위한 소재추적은 정상적 실시, 구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발표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처우 중단 • 폐쇄형 면회실 내 대면면회 재개 • 동일 교육과정, 수용인원 조절, 이송 중지 해제 (의심증세가 없는 소년에 한함) • 대구소년원 이송(인계·인수) 중지 해제 • 간식지원, 화상면회 및 전화통화 확대 실시, 스포츠 활동 확대 실시 • 소년원 등 업무지원 인력 축소 	<p>인장 발부자에 대한 소재추적은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의 3일 연속, 주 3회 이상 무단기출로 인한 위반자는 출장지도 등 대면으로 실시 • 수감명령의 경우 개별진행 원칙, 하루 5시간 이하 분할 집행 권장 	
<p>▶ 20.05.05 : 생활 속 거리두기</p>	5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지정 독립면담 공간 폐쇄 • 출입문 일원화,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유지 • 지도·감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집합교육은 지양하고 개별 집행 • 수감명령의 경우 15명 내외의 소집단 운영하고 강사·직원·교육생 의무적 마스크 착용 및 교육장 내 손세정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노현동 일대 방문 직원 및 수용소년 전수조사 실시 통해 방문자 격리 및 확진자 접촉 의심자 선별검사 실시 • 직원 및 수용소년 마스크 착용 생활화, 생활 속 거리두기 (2m 이상 원직, 최소 1m) 준수, 직원 생활방역수칙 이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사용 • 출입문 일원화, 기관 출입자 전원 체온 측정 및 문진표 작성 • 외부인 출입 시 지정한 공간 활용 • 보호관찰 신고 시 지정한 공간 활용 • 집합교육 개별교육으로 대체 • 심층면담을 위한 보호관찰 등 개시출장 정상 실시
<p>▶ 20.08.16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p>	8월 18일 (※ 서울, 경기, 부산 소재 기관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강사 및 외부자원봉사자 출입 전면 차단 • 부분적 이송 실시 • 폐쇄형 개별면회 중지, 화상면회·전화통화 확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발표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등급에 상관없이 잔여 지도감독은 통신지도로 대체 • 외부위원 연계상담 및 멘토링 중지(필요시 우선 실시) • 악물검사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실시 • 구인장 신청을 위한 소재추적은 정상 실시, 구인장 발부자에 대한 소재추적은 지양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구인 후 석방' 적극 활용, 준수사항이 중한 경우 통상 제재조치 실시 • 수감명령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하되 소집단 운영 • 조사대상자의 경우 차단막 설치 및 마스크 착용 후 대면조사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우선조사 병행 실시 	
<p>▶ 20.08.22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심사 시 보호자 대면상담 중지 • 유급강사 및 외부자원봉사자 출입 전면 차단 • 부분적 이송 실시 • 폐쇄형 개별면회 중지, 화상면회·전화통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시 지정한 공간 활용 • 집합교육을 개별교육으로 대체 • 심층면담을 위한 보호관찰 등 개시출장 정상 실시 • 관리 등급에 상관없이 잔여 지도감독은 통신지도로 대체 • 외부위원 연계상담 및 멘토링 중지(필요시 우선 실시) • 악물검사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실시 • 구인장 신청을 위한 소재추적은 정상 실시, 구인장 발부자에 대한 소재추적은 지양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구인 후 석방' 적극 활용, 준수사항이 중한 경우 통상 제재조치 실시 • 수감명령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하되 소집단 운영 • 조사대상자의 경우 차단막 설치 및 마스크 착용 후 대면조사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우선조사 병행 실시 	
<p>▶ 20.09.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형면회 재개 및 교육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전문 강사 		

24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행정을 위한 연구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	
대표일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p>수도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p>	<p>출입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자원봉사자 등의 출입 전면 차단 및 보호자 대면상담 중 지는 유지 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를 통해 온라인(비대면) 발급 서비스 개시 		
<p>20.10.12 :수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호 교육 방역지침 준수하여 진행 유급강사, 인성교육 및 예·체능교육 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2인 이내 특강 허용 분류심사관 보호자 대면상담 재개(마스크 착용, 2m 거리유지 등) 이송은 평시 기준 적용 폐쇄형 면회 실시 개방처우, 다수가 출입하는 종교집회 및 공연 등 제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외 출입 제한, 의료봉사는 출입 허용 교정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외출 실시 경찰, 변호사, 국선보조인 등 공무원 점건 폐쇄형 면회실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관찰 정상적 시행 개시교육·처우프로그램 등 집합교육 지양, 개별 집행 실시 사회봉사자의 경우 직접 집행 유지 및 협력기관 사전 논의 후 배치 수강명령의 경우 지역별 감염추세에 따라 집단 인원수 탄력적 조정, 집단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조사의 경우 정상적 시행 	

제2절 |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소년원 처분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 소년원 수용인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년원 수용인원의 경우 신규 입소자와 퇴원자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신규 입소자와 퇴원자 현황을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을 더 받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운용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은 임시퇴원이기 때문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현황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소년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중 교과교육,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은 외부인과 접촉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보호자 교육, 종교활동, 면회 및 개방처우는 외부인 및 외부와의 접촉이 상당히 수반된다.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코로나 19가 소년원 처분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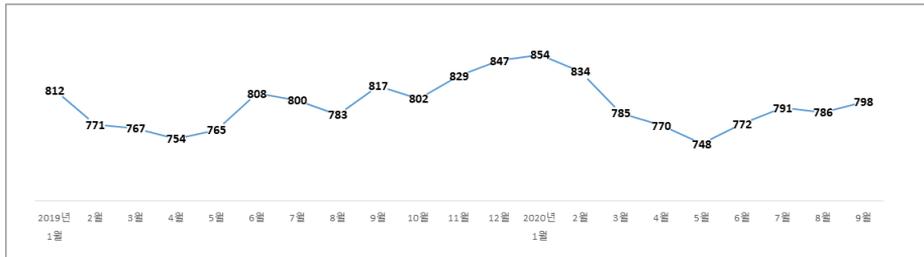
가. 단기(9호) 및 장기(10호) 소년원 처분 현황

1) 소년원 수용인원 현황

코로나 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자가 밀집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의 수용인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수위에 있어서의 변화(1월에서 4월까지의 강화되었다가 5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완화되었고 8월 중순 이후 다시 강화됨)가 실제로 소년원 수용인원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소년원 수용인원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자가 1월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소년원 수용인원에서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 [그림 2-1] 소년원(9호·10호) 수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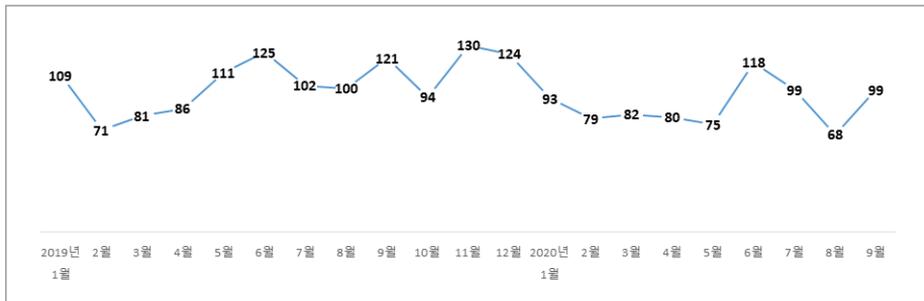
소년원 수용인원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 같은 달의 소년원 수용인원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2019년의 경우 1월에서 4월까지 소년원 수용인원이 감소하였다가 5월과 6월에 증가하였다가 7월과 8월에는 다시 감소하였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준다. 1월부터 5월까지 감소하였다가 7월까지 증가한 후 8월과 9월에 소폭 증감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었던 2020년 1월에서 4월까지 소년원 수용인원은 2019년 같은 시기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5월에서 9월까지의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용인원이 조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 즉,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과 발생한 이후의 소년원 수용인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수용인원에서의 변화를 보면 1월부터 5월까지의 감소하였다가 9월까지 대체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있어서의 변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의 영향인지 아니면 계절효과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2019년의 소년원 수용인원의 계절별 변화를 보면 2020년 소년원 수용인원의 변화가 코로나 19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절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소년원 수용인원의 경우 소년원 신규 입소자와 소년원 퇴원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 입소자와 퇴원자 통계를 분석하면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소년원 수용인원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2) 소년원 신규 입소자 현황

소년원 신규 입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에 전년 동월대비 16명(14.7%)이 감소하였으나 2월에서 4월까지의 전년 동월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전년 동월대비

가장 큰 감소가 있었던 기간은 2020년 5월(36명, 32.4%), 8월(32명, 32%) 및 9월(22명, 18.2%)이다. 2019년 동월대비 2020년 1월, 5월, 8월 및 9월에 신규 입소자 수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은 계절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년원 신규 입소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년원 처분을 결정할 때 코로나 19를 어느 정도 참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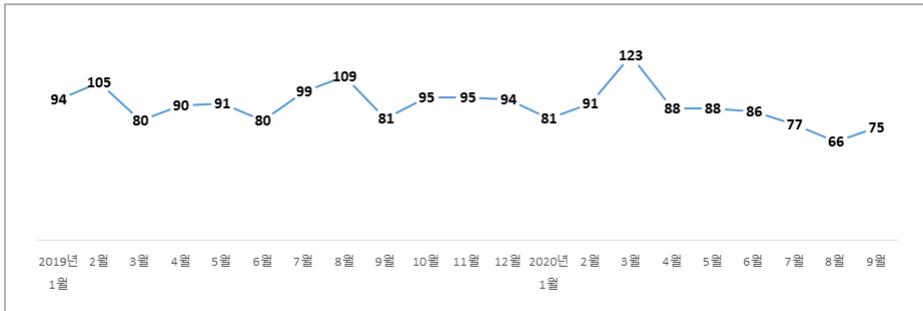
» [그림 2-2] 소년원(9호·10호) 신규 입소자



3) 소년원 퇴원자 현황

2020년 소년원 퇴원자 현황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1월과 2월에는 오히려 2019년 동월대비 감소하였다가 2020년 3월에는 작년 동월대비 43명(53.8%)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작년 동월대비 소년원 퇴원자 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7월에서 9월까지의 2019년 동월대비 퇴원자 수가 감소하였다. 퇴원자 전체 수만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19가 퇴원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년원 퇴원은 소년이 받은 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원하는 만기퇴원과 소년이 받은 기간 이전에 가퇴원하는 임시퇴원으로 구분된다. 만약 소년원 퇴원을 결정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코로나 19가 소년원 운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임시퇴원을 활용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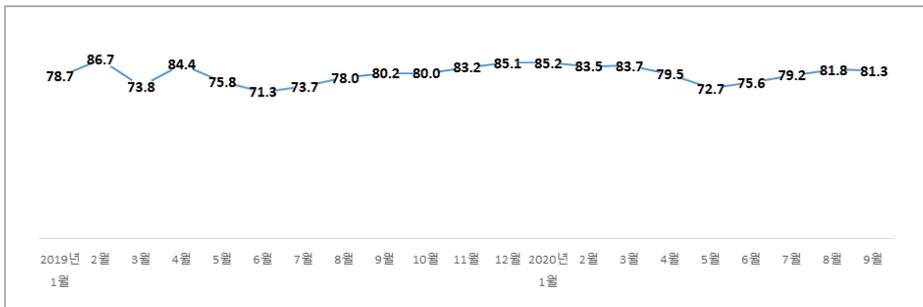
▶▶ [그림 2-3] 소년원(9호·10호) 퇴원자



4) 소년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

2020년 소년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1월과 3월에 2019년 동월대비 임시퇴원자 비율이 각각 6.5%와 9.9% 증가하였으며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2019년 동월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19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소년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임시퇴원 심사기준을 짧은 기간에 수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코로나 19가 소년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퇴원자의 비율을 좀 더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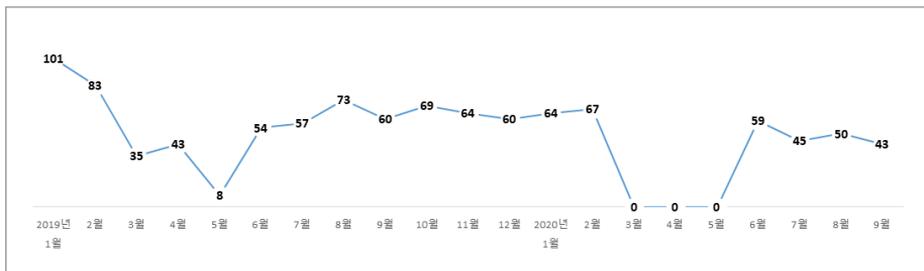
▶▶ [그림 2-4] 소년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



나. 8호 처분자(1개월 소년원 수용) 입소 현황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와 10호)을 받은 소년의 경우 소년원에 신규로 입소하기 전에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원 신규 입소자가 소년원에 코로나 19 감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8호 처분 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정해진 시기에 교육을 받기 위해 소년원에 입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입소 현황은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에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5] 8호 처분자 입소 현황



8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입소한 소년의 현황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이 전국으로 전파되기 이전인 2020년 1월과 2월의 경우 각각 64명과 67명으로 2019년 동월대비 각각 36.7%와 19.5% 감소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된 3월에서 5월까지 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누그러진 6월 이후로 다시 교육을 재개하였으나 작년 동월대비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8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1개월 교육을 받는 경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에 비해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그에 상응한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2. 코로나 19가 소년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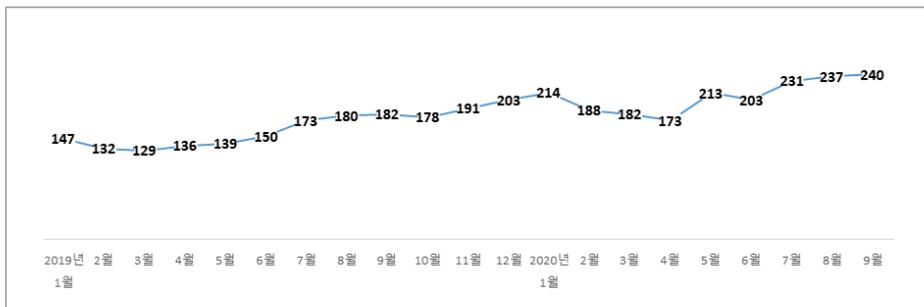
코로나 19가 소년원 운영에 미친 영향은 교과교육,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과 같이 외부인과의 접촉이 아주 제한적이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 보호자 교육,

종교행사, 면회 및 개방처우와 같이 외부인 및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구분하였다.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이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된 프로그램 및 교육에 비해 코로나 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8호 처분의 경우 교육생들이 같은 날 입소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받고 같은 날 퇴소하기 때문에 앞에서 분석한 교육 입소 현황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 교과교육 운영 현황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받은 소년의 코로나 19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는 2019년 동월대비 45.6%가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교과교육을 받은 소년이 가장 많은 월은 9월로 240명의 소년이 교과교육을 받았으면 이는 작년 동월대비 58명이 증가한 것으로 31.9%가 증가한 수치이다. 교과교육을 받은 소년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전에는 무단결석 등으로 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들이 학교를 출석하지 않다보니 무단결석 등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퇴학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도 감소하였고 이 소년들이 소년원에 왔을 때 교과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9년 초반 이후 안양소년원의 교과교육 과정이 증가한 것도 교과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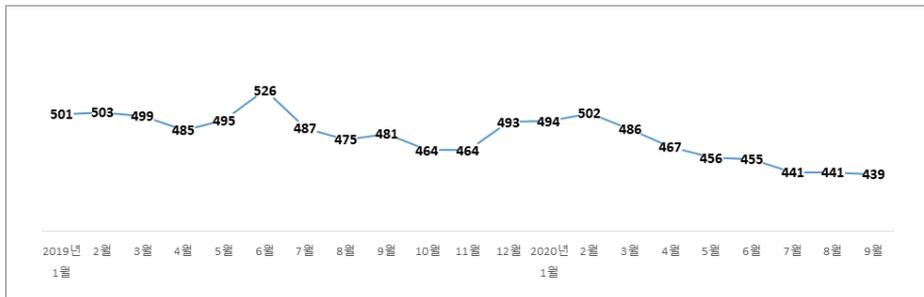
» [그림 2-6] 교과교육 받은 인원



나. 직업훈련 운영 현황

직업훈련을 받은 소년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가 코로나 19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일부 소년원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심했던 시기에는 직업훈련을 도와주는 유급강사가 소년원에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7] 직업훈련 받은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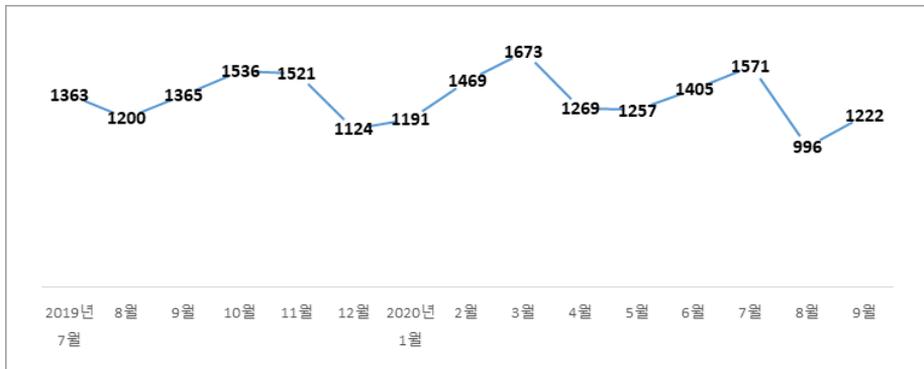
다. 인성교육 운영 현황

소년원에서 인성교육을 받은 소년에 대한 통계는 2019년 7월부터 산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2019년 7월에서 2020년 9월까지의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성교육의 경우 상당부분이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전파가 심했던 시기인 1월에서 4월까지의 인성교육을 받은 소년의 수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19 방역 지침이 완화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소년원 출입이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은 소년의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20년 월별 인성교육 수료 통계를 보면 2019년 대비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방역 방침에 있어서의 변화와도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즉, 코로나 19가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소년원에 출입할 수 있을 때에는 전문가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된 반면 전문가의 소년원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중지하기보다는

32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소년원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인성교육 횟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인성교육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소년원 직원이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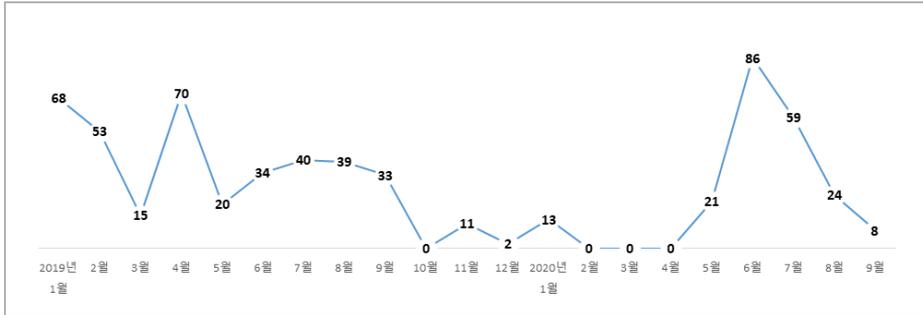
» [그림 2-8] 인성교육 받은 인원



라. 보호자 교육 운영 현황

소년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중의 하나는 보호자 교육일 것이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심할 경우에는 외부인의 소년원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보호자 교육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것이고 코로나 19 감염이 누그러졌을 때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교육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작년 동월대비 교육이 훨씬 증가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자 교육 운영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인 2월부터 4월까지의 보호자 교육이 운영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누그러진 시기인 6월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교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2019년 동월대비 약 15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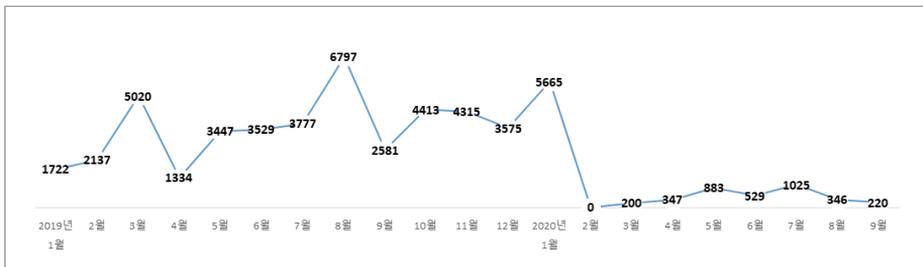
» [그림 2-9] 보호자 교육 받은 인원



마. 종교행사 운영 현황

종교행사의 경우도 보호자교육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소년원 출입이 금지되었던 시기에는 실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자 교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종교행사의 경우에는 소년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실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종교행사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2020년 2월에는 종교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020년 2월 이후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종교행사도 금지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에 참여한 소년의 수가 많게는 1000명(7월)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일부 소년원의 경우 종교행사를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해서 실시했기 때문이다. 종교행사의 경우 소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년들에게 미쳤을 긍정적인 영향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 혹은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10] 종교행사 참여 인원



바. 면회 및 전화사용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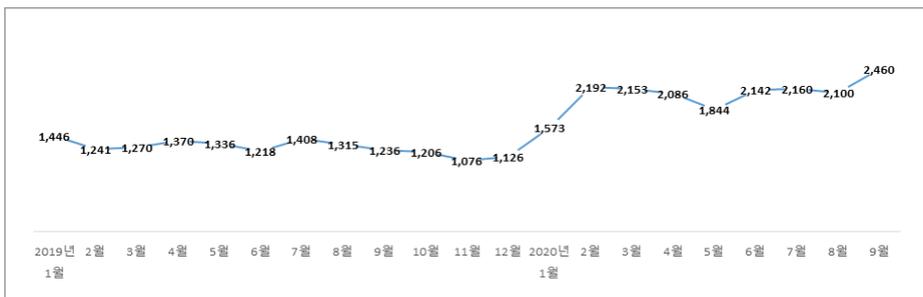
면회운영 통계를 보면 2020년 2월부터 2019년 동월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면회 또한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폐쇄형 면회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면회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있었고 코로나 19 감염 전파가 심한 시기에는 그나마 실시되었던 폐쇄형 면회도 금지되었다.

이처럼 면회할 수 있는 소년의 수가 제한되고 때로는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년원에서 소년의 전화사용을 증가시켰다. 전화사용 통계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소년의 전화사용이 가장 많았던 2020년 9월에는 2019년 동월대비 100% 가까이 증가하였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경우 소년원 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정착을 위해서도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소년의 전화사용을 확대한 것은 면회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소년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그나마 전화로라도 할 수 있도록 소년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2-11] 면회 인원



» [그림 2-12] 전화사용 횟수



사. 개방처우 운영 현황

봉사활동, 체험학습, 외출, 주말가정학습 등을 포함하는 개방처우 통제(기능경기대회 참여는 개방처우에 포함되지 않음)를 살펴보면 2020년 1월에 개방처우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2월에서 6월까지의 거의 실시되지 않았으며 8월에 잠깐 실시되었다가 9월에는 다시 실시되지 않았다. 개방처우가 급격히 감소되거나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소년원 시설의 특성상 개방처우를 하다가 소년원에 거주하는 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19에 걸리면 순식간에 다른 소년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능경기대회 참여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간혹 봉사활동이나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 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이 낮은 경우이거나 기능경기대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직업훈련을 받는 소년에게는 교육을 열심히 받고자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봉사활동과 기능경기대회의 취소는 소년들의 소년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교육훈련을 받는 소년에게는 사기를 저하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년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부 봉사활동은 내부봉사활동으로 바꾸고 소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제체육대회 혹은 장기자랑 및 삼겹살파티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다.¹¹⁾

11) 이경우, 춘천소년원, 사제가 함께 하는 축구 대회...서로 격려, 강원신문 2020년 3월 5일자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49009>, 최종검색 : 2020.12.28).

»» **〈표 2-2〉 개방처우 운영 현황**

구분	개방처우 인원	봉사활동 인원	기능경기대회 참여 인원
2019년 1월	147	53	0
2월	209	81	0
3월	233	67	0
4월	252	105	14
5월	189	79	12
6월	366	100	21
7월	219	95	1
8월	210	95	0
9월	136	64	7
10월	248	116	31
11월	304	107	44
12월	98	45	3
2020년 1월	75	31	0
2월	1	0	0
3월	0	0	0
4월	0	0	0
5월	0	0	0
6월	0	0	26
7월	24	24	27
8월	79	79	0
9월	0	0	10

제3절 | 소년보호관찰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코로나 19가 보호관찰 업무에 미친 영향 및 보호관찰소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결정전조사, 지도·감독,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구인·구인후 석방 등 5 가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취합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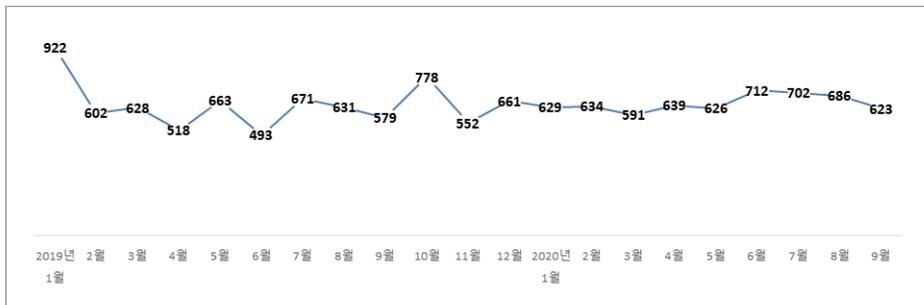
램들은 상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19 전후의 변화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결정전조사

가. 결정전조사 접수 인원

법원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결정전 조사를 의뢰한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결정전조사 인원을 보면 2019년 동월대비 1월, 3월, 5월에는 감소하였지만 그 외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법원에서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를 의뢰할 때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2-13] 결정전조사 접수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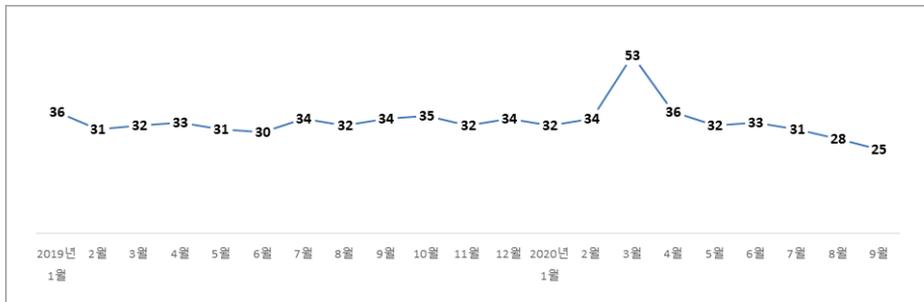
나. 결정전조사 접수에서 회보까지 소요 기간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결정전조사의 접수시점에서 회보까지 소요 기간에 대한 통계를 보면 2020년 3월에 53일로 2019년 대비 소요기간이 크게 늘어난 반면 2020년 다른 시기에는 2019년 동월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가 의뢰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전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로 인해 조사 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하여 실시해서 법원에 통보하였기

38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때문이다. 다만, 3월에 결정전조사 접수에서 회보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결정 전조사가 시행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는데 그 기간 동안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법원이 휴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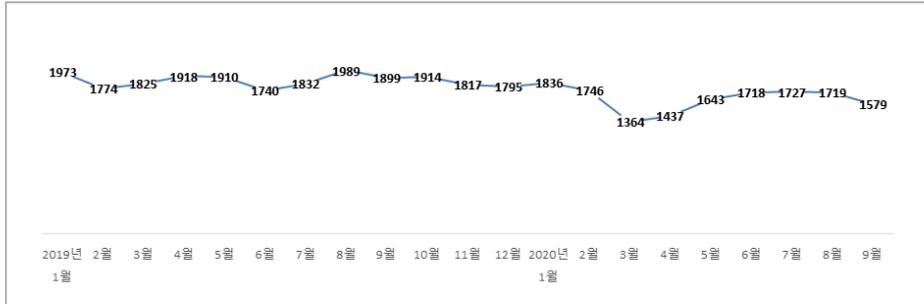
▶▶ [그림 2-14] 결정전조사 접수에서 회보까지 소요 기간(일)



2. 지도·감독 실시 현황

지도 및 감독은 여러 종류가 있다. 대면 지도·감독에는 출석면담, 출석지도, 출장면담, 출장지도가 포함되고 비대면 지도·감독으로는 전화지도, 전화통화, 출장지도(비대면)가 포함된다. 대면과 비대면 지도·감독의 총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대면과 비대면 각각에 대한 실시현황 및 전체 지도·감독 중 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우선 전체 지도·감독 횟수를 보면 2020년 지도·감독 횟수는 2019년 동월대비 대체로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인 3월과 4월에는 작년 동월대비 500건 가까이 감소하였다.

▶▶ [그림 2-15] 지도·감독 횟수



대면 지도·감독 실시 현황을 보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절정에 달한 2월에서 4월까지의 대면 지도·감독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누그러지던 시기에는 점차 증가하였다. 반면, 비대면 지도·감독은 대면 지도·감독과 정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가장 많이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3월과 4월의 경우에는 전체 지도·감독 중 각각 4%와 15%만이 대면으로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면과 비대면이 각각 절반정도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도·감독에 있어서의 방식 변화는 코로나 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 <표 2-3> 지도·감독 실시 현황

구분	총 지도·감독	대면 지도·감독	비대면 지도·감독	대면 지도·감독 비율(%)
2019년 1월	1973	1380	593	70
2월	1774	1192	582	67
3월	1825	1208	617	66
4월	1918	1255	663	65
5월	1910	1234	676	65
6월	1740	1154	586	66
7월	1832	1172	660	64
8월	1989	1262	727	63
9월	1899	1242	657	65
10월	1914	1260	654	66

40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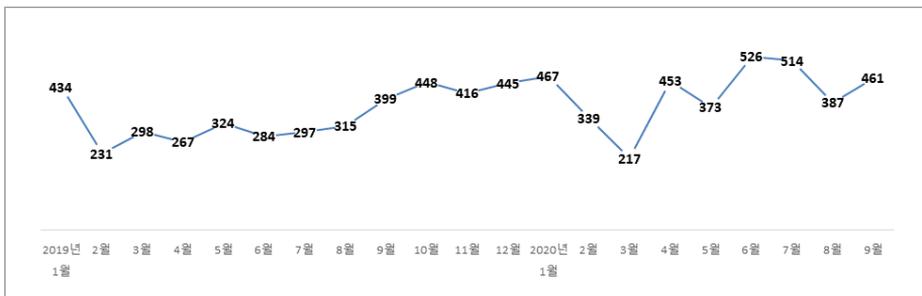
구분	총 지도·감독	대면 지도·감독	비대면 지도·감독	대면 지도·감독 비율(%)
11월	1817	1203	614	66
12월	1795	1213	582	68
2020년 1월	1836	1158	678	63
2월	1746	858	888	49
3월	1364	61	1303	4
4월	1437	211	1226	15
5월	1643	874	769	53
6월	1718	982	736	57
7월	1727	969	758	56
8월	1719	932	787	54
9월	1579	708	871	45

3. 수강명령

가. 수강명령 접수 현황

소년보호 처분 중 2호 처분인 수강명령의 접수 통계를 보면 2020년 3월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가 2019년 동월대비 27.2%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기에는 오히려 2019년 동월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도 수강명령 처분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단, 3월에 수강명령 처분이 감소한 것은 법원이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휴정을 한 영향으로 보인다. 즉, 법원이 수강명령 처분을 내릴 때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16] 수강명령 접수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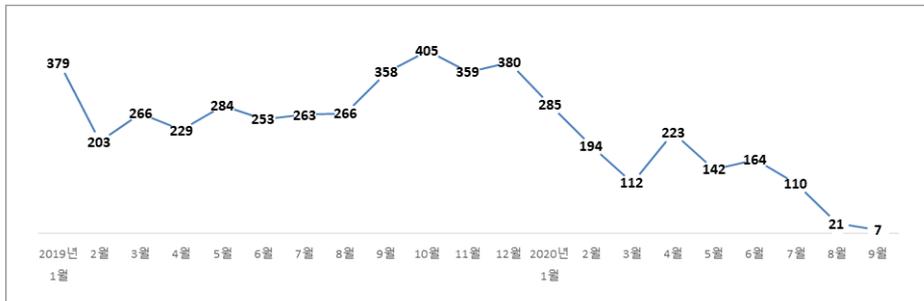


나. 수강명령 집행 현황

수강명령 접수 인원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수강명령 집행의 경우 코로나 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표된 2020년 1월의 경우 2019년 동월대비 24.8% 감소한 이래 점차 감소하여 2020년 8월과 9월에는 각각 21명과 7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수강명령 집행 비율을 보면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집행비율이 85%~90% 정도였다. 그러나 2020년 1월에는 수강명령 집행비율이 61.0%로 감소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과 9월의 수강명령 집행비율은 각각 5.4%와 1.5%이다. 수강명령이 그나마 집행된 곳은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지 않은 지역으로 보인다.

» [그림 2-17] 수강명령 집행 인원



수강명령 접수에서 집행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2020년 1월에는 140일이 소요되어 2019년 동월대비 72일(105.9%)이 더 소요되고 2020년 6월부터는 2019년 동월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집행되지 않은 수강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집행까지의 기간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강명령 집행까지의 기간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이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수강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은 과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2-4〉 수강명령 집행 현황**

구분	접수인원	집행인원	집행비율	접수에서 집행까지 소요 기간(일)
2019년 1월	434	379	87.3	68
2월	231	203	87.9	74
3월	298	266	89.3	72
4월	267	229	85.8	80
5월	324	284	87.7	72
6월	284	253	89.1	71
7월	297	263	88.6	59
8월	315	266	84.4	82
9월	399	358	89.7	85
10월	448	405	90.4	72
11월	416	359	86.3	90
12월	445	380	85.4	93
2020년 1월	467	285	61.0	140
2월	339	194	57.2	151
3월	217	112	51.6	131
4월	453	223	49.2	116
5월	373	142	38.1	91
6월	526	164	31.2	67
7월	514	110	21.4	50
8월	387	21	5.4	45
9월	461	7	1.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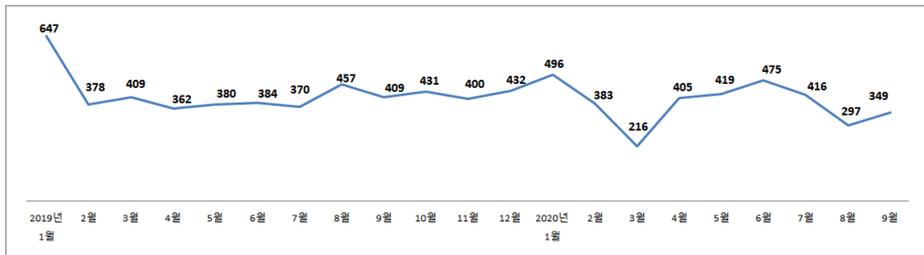
4. 사회봉사명령

가. 사회봉사명령 접수 현황

소년보호처분 중 3호 처분인 사회봉사명령 접수 현황도 수강명령 접수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1월, 3월, 8월, 9월에 접수된 사회봉사명령은 2019년 동월대비 낮은 반면 그 외의 기간에 접수된 사회봉사명령은 2019년 동월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동안 사회봉사명령 접수 건수의 경우도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의 사회봉사명령이 눈에 띄게 감소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기간에 법원이 휴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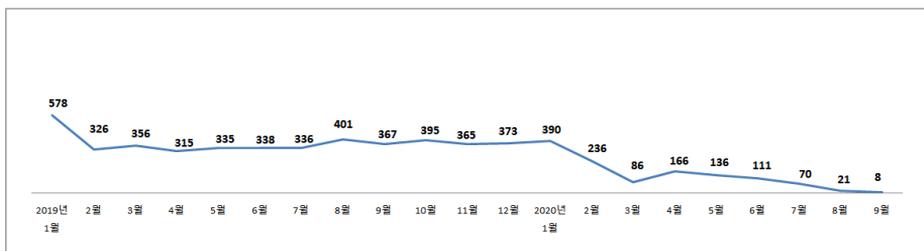
» [그림 2-18] 사회봉사명령 접수 인원



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황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황을 보면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집행된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2019년 동월대비 188명(32.5%) 감소하였고 사회봉사명령이 가장 적게 집행된 시기인 2020년 8월과 9월에는 각각 21건과 8건이 집행되었다.

» [그림 2-19] 사회봉사명령 집행 인원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집행비율은 약 86%~92% 정도인 반면 코로나 19 발생 후 그나마 가장 많이 사회봉사명령이 집행된 2020년 1월의 경우 집행비율은 78.6%이며 2020년 8월과 9월의 사회봉사명령 집행비율은 각각 7.1%와 2.3% 이다.

44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사회봉사명령 접수에서 집행시작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대략 40~45일 정도인 반면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2019년 동월대비 집행시작까지 소요된 기간이 늘어났다가 7월부터는 2019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후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회봉사명령 집행까지의 소요기간은 훨씬 늘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사회봉사명령 집행비율이 감소하고 집행까지의 소요기간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부과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은 과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2-5>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황

구분	접수인원	집행인원	집행비율	접수에서 집행시작까지 소요 기간(일)
2019년 1월	647	578	89.3	44
2월	378	326	86.2	45
3월	409	356	87.0	40
4월	362	315	87.0	43
5월	380	335	88.2	42
6월	384	338	88.0	38
7월	370	336	90.8	42
8월	457	401	87.7	41
9월	409	367	89.7	46
10월	431	395	91.6	42
11월	400	365	91.3	41
12월	432	373	86.3	47
2020년 1월	496	390	78.6	94
2월	383	236	61.6	139
3월	216	86	39.8	128
4월	405	166	41.0	101
5월	419	136	32.5	76
6월	475	111	23.4	70
7월	416	70	16.8	46
8월	297	21	7.1	40
9월	349	8	2.3	30

5. 구인 및 구인 후 석방 현황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구인 건수를 보면 2020년 2월과 5월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에서 2019년 동월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2020년 8월의 구인 건수는 2019년 8월의 구인 건수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법무부에서 구인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구인후 석방을 권고하였다. 이는 구인후 유치할 경우 코로나 19 감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소년이 시설에 있는 소년들에게 코로나 19를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구인후 석방건수를 보면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증가하다가 코로나 19가 누그러지기 시작한 시기인 6월부터는 구인후 석방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6월 이후 구인후 석방이 거의 없는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건적으로 구인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2019년 동월대비 구인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구인후 석방 비율을 보면 2020년 1월 이후 증가하여 2020년 3월에는 구인후 석방 비율이 44.7%까지 증가했다가 6월 이후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구인건수의 감소 및 구인후 석방건수의 증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 **〈표 2-6〉 구인 및 구인 후 석방 현황**

구분	구인 건수	구인후 석방건수	구인후 석방 비율
2019년 1월	55	0	0
2월	47	0	0
3월	66	0	0
4월	72	7	9.7
5월	67	2	3.0
6월	72	1	1.4
7월	80	15	18.8
8월	60	2	3.3
9월	47	0	0.0
10월	51	0	0.0

46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구분	구인 건수	구인후 석방건수	구인후 석방 비율
11월	48	2	4.2
12월	40	1	2.5
2020년 1월	48	2	4.2
2월	54	6	11.1
3월	38	17	44.7
4월	50	9	18.0
5월	80	16	20.0
6월	57	1	1.8
7월	50	0	0.0
8월	33	1	3.0
9월	39	3	7.7

제4절 | 소결

본 장의 목적은 소년보호기관 중 소년원과 소년보호관찰 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법무부에서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소년원 및 소년보호관찰 업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 19 전후 기관의 업무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은 법무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무부는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에 근거해서 업무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이전에 정부와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 및 업무지침을 정리하였다.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방침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약하면 코로나 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만큼 감염병 대응방침을 강화하였다. 그 후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누그러진 5월에서 8월 중순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를 시행할 정도로 감염병 대응방침을 완화시켰으며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이 다시 확산되어 감염병 대응방침을

다시 강화하였다가 10월 중순부터는 감염병 대응방침을 완화시켰다.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따른 대응방침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라 법무부도 소년보호기관에 그에 상응하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1월에는 업무지침의 주된 내용이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된 것으로 코로나 예방 교육 및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방침이 강화되자 법무부에서는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하거나 금지하였고 대면으로 실시되던 업무가 비대면으로 바뀌었다(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가, 종교집회, 면회, 보호자 상담, 타 소년원 이송제한, 8호 처분의 경우 교육 중지 등). 아울러 직원의 경우에도 코로나 19 유증상 발생 시 원격 및 자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권장하였고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였으며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나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집합교육(사회봉사·수강명령)을 개별교육으로 전환하고 대면 지도·감독을 비대면으로 바꾸었으며 외부위원 상담, 멘토링, 불시 약물검사 등을 중지하였고 구인장 발부도 제한하였으며, 유선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외부인 출입 시 지정된 독립된 공간만을 사용하게 하였고 출입문을 일원화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완화된 4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의 경우 보호자 상담을 조건적으로 실시하였고, 폐쇄형 면회실에서의 대면면회 및 교육에 꼭 필요한 외부 강사들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8호 처분의 경우 일반학교 등교 시기에 맞추어 교육을 재개한 반면 외부로 나가는 개방처우는 여전히 금지시켰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소년의 관리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약물검사, 소재추적 및 수강명령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8월 중순 이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업무 방식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10월 12일 이후부터는 수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에서도 다시 제약이 완화된 형태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법무부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방침이 바뀔과 동시에 일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업무지침을 내렸다. 다만,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업무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세부적인 업무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각 기관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럴 경우 기관별 편차가 클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필요이상의 방역을 강화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소년원의 경우에는 처분 현황과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현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소년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입소자, 퇴원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 비율을 분석하였다. 소년원 수용인원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계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입소자의 경우 2020년 1월, 5월, 8월 및 9월에 2019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소년원 퇴원자의 경우 2019년 동월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년원 퇴원자 중 임시퇴원자의 비율 또한 2020년과 2019년에 큰 차이가 없다. 즉, 코로나 19의 소년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년원 재원생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8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1개월 수용생활을 하는 소년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세에 따라 입소자의 수가 유동적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3월에서 5월까지의 8호 처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전면 금지되었다.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 및 10호)을 받은 소년의 경우 대부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되었다가 소년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감염된 소년이 거의 없지만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소년원에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년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코로나 19 대응을 살펴보면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규교육인 교과교육,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은 코로나 19와 상관없이 운영이 되었지만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소년원 사정에 따라 직업훈련을 위해 유급강사를 고용한 소년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확산이 심한 경우 유급강사의 소년원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직업훈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소년원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직원들이 인성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교육방식의 변화는 소년의 소년원 생활 및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교과교육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는 소년이 적다보니 학적이 그대로 유지되어 소년원에서의 2020년 교과교육이 2019년 동월대비 증가하였다. 소년원 교육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거나 소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호자 교육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는 시기인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의 실시되지 않았고 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교육을 실시하다보니 급증한 현상을 보인다. 종교행사의 경우는 대면행사가 전면 금지되다 보니 비대면으로 실시된 것이 전부이며, 면회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폐쇄형 면회가 실시되기도 하고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면 폐쇄형 면회마저도 금지되어 작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대신 소년의 전화사용이 2019년 동월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소년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개방처우와 기능경기대회 참여도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중단되거나 간혹 코로나 19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 혹은 비대면으로 실시되었다. 소년원생에게 외부와의 상호작용은 수용 측면이나 사회정착측면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면회와 같은 경우는 소년의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수상을 하는 경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울러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년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타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부로 나가는 활동의 감소 및 취소는 소년에게 좌절감 및 소외감을 줄 수 있으며 아울러 자존감 및 이타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소년보호관찰기관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결정전조사, 지도·감독,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구인/구인 후 석방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법원에서 의뢰하는 결정전조사 접수 건수의 경우 코로나 19 전후 별 변화가 없었고 결정전조사를 접수해서 회보하기 까지 소요된 기간의 경우도 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소년의 심리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에서 대면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지도·감독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지도·감독의 총 건수 보다는 방식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대면 지도와 감독은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면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대신 비대면 지도와 감독이 급격히 증가했

으며 코로나 19 감염 전파가 누그러진 후에도 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은 2019년과 비교 시 감소하였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접수 인원에 있어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집행에 있어서는 코로나 19 확산 추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비대면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보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인원의 경우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 1월에 2019년 동월대비 각각 26.3%와 10.7% 감소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수강명령 집행 건수가 7건 이었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건수는 8건 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대면으로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개별로 집행하거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 대면으로만 실시되는 명령을 부과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구인 및 구인후 석방의 경우 코로나 19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업무지침을 통해 구인을 제한적으로만 집행하도록 하였고 구인후 석방을 권면하였기 때문에 2019년 동월대비 2020년에는 구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구인후 석방 비율은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진다.

제 3 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심층면접

최 지 선

제3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심층면접

본 장에서는 소년보호기관의 직원과 보호 소년,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년보호기관이 코로나 19 전후 대응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변화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한계점은 없었는지, 미래의 전염병 대응을 위해 소년보호기관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 내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과 사회 내 소년보호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직원과 보호 소년, 보호 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수도권,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권역별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통해 소년원 다섯 기관, 보호관찰소 다섯 기관의 직원과 보호 소년, 보호자를 각각 인터뷰 하였다. 추가로 지난 2월 대구의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여 경상 지역에서는 대구 보호관찰소를 추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형식은 일부 구조화된 질문을 하여 응답을 듣고,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분류심사원 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소년보호기관 전반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1절 |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소년원의 경우 각 권역별 총 다섯 기관의 직원과 원생, 원생의 보호자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등 일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네 기관에서 4명의 직원과 4명의 원생, 3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1. 소년원 직원

소년원 직원 조사대상자는 총 4명으로, 소년원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현재 관리자급 업무를 담당하며 전체 소년원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하여 면담 협조 요청을 하였다. 조사대상자 4명 중 3명이 남성, 1명이 여성 직원이었으며, 계장 및 과장 직급으로 평균 근무경력은 28년이다.

» **〈표 3-1〉 조사대상자 정보(소년원 직원)**

면담 대상자	성별	나이	근무경력	직급
A1	남	50대 중반	30년	과장
A2	여	50대 초반	27년	계장
A3	남	50대 초반	24년	과장
A4	남	50대 초반	31년	과장

가. 소년원의 코로나 19 이후 수용 인원 변화

1) 전체 수용 인원 변화

소년원은 집합수용시설로 수용인원이 시설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전반적인 소년원 환경의 전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용 소년원생의 인원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면담 결과 수용인원은 코로나 19 전후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처분 신규입소 인원이 감소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8호 처분의 신규 입소 인원 중 발열증상 등이 있을 경우 미리 해당 입소 인원에게 대해 미보호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단기간 동안 전체적인 소년원생이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소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급격하게 인원이 줄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2) 교과교육 인원 변화

소년원에서는 입소 소년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교육을 받는

소년원생의 인원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담에 따르면, 대구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1차유행시기인 2월 이후인 3월부터 5월까지의 8호 처분 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실시를 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 8호 처분 소년의 경우 1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입소 시 14일 격리를 준수하면서 교육까지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일반 학교가 등교를 재개한 시점인 6월부터 소년원 내에서도 교육을 실시했다.

특정 소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교과교육 대상 원생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일반 학교에서의 재택 수업 등 학사일정 변화로 인해 원생들 중 다니던 학교에서의 자퇴나 유예 대상자가 없게 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학생으로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는 것이다. 남자 소년원의 경우 이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모두 실시하였으나, 여자 소년원의 경우 고등학교과정이 2019년 3월부터 신설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자 소년의 경우 교육과정 인원이 증가한 반면, 남자 소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수준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3) 8호 처분

소년원 관리에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가 가장 컸던 처분 대상은 8호 처분으로, 해당 처분 대상 소년들은 전국에서 모여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과정 없이 바로 소년원으로 입소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보호대상자이다. 현장에서 느끼 기에도 9호나 10호 처분보다 8호가 비교적 낮은 비율로 판결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8호 처분의 입소는 코로나 19가 심각한 수준인 2-4월에는 지정일을 6월 이후로 지연시켜 입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위해 기관차원에서 법원에 지정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처분대상 소년에 대하여 입소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측에서 수용공간과 업무현황을 고려한 적정 인원을 정하고 이보다 초과하여 입소자가 예상될 시 법원에 처분 변경요청을 개별적으로 수행해 입소인원 조절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8호 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소년원생보다 짧은 7일을 격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4일의 격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8호 처분 대상자에게 14일간 격리조치를 실시할 경우 교과교육 등에 차질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일주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원격수업 방식으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사도 생활실에서 이동 없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배식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이러한 8호 처분 소년원생들의 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양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소 원생들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실을 지정하고, 교육 시에도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또한, 공간적으로 가능한 경우, 원내에서 공간 자체를 분리하여 8호 처분 소년과 9·10호 처분 소년을 분리수용하고 상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4) 임시퇴원과 불위탁

코로나 19 이후 임시퇴원 조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임시퇴원을 받았던 유사사례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안전 문제, 학교의 학사 형태 변화로 인한 학생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소년원에 추가적인 기간 동안 수용되는 사례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불위탁은 분류심사원에 수용되지 않은 채 사회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불구속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회에서 보호처분 중 심리 결정에 따라 바로 소년원에 입소해야하는 9호나 10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원생을 개별실에서 14일 격리시킨 후 타 원생과 합류하여 생활하도록 한다.

나. 소년원의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변화

1) 시설 및 방역

여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소년원도 코로나 19 이후 시설의 기본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계로 원생들의 체온을 수시 점검을 함과 동시에 전체 방역도 빈도를 높여서 실시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역 관련 교육으로는 마스크 의무착용에 대한 안내와 면회의 변화에 대한 안내, 교육프로그램에서 외부강사의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방역 관련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 내부 TV채널인 푸름이 방송을 통해서도 교육 내용을 방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 입소한 원생의 경우 건강진단 시 전반적인 건강 상황을 확인하고 입소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로 들어온 소년원생의 경우 14일 동안 1인실에 격리한 후 전체 원생과 합류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 내에서도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여 만약의 전파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직원 근무

소년원에서 원생들의 경우 집합수용 되어있고 외부와 접촉을 단절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외부에서 코로나 19의 전염원인 확진자의 진입이 없는 경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 이후 외부강사 등의 출입은 제한됐지만, 필수 인력인 직원들의 경우 소년들과 생활할 수밖에 없다. 방역을 위해 직원들은 출근 시 발열체크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직원의 경우 가족의 발열증상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공가로 행정 처리를 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었다.

3) 교과교육·직업훈련

소년원생들의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의 경우 많은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19 이후 외부강사 제한으로 인한 변화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단계가 2단계 이상일 때는 외부강사가 전면 제한되어서 해당 교과를 내부 직원이 수행했고, 단계적으로 단계가 낮아지면서 교사 등 교육과 관련된 외부 인력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2단계 정도 됐었을 때에는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시 들어올 때도 14일간의 그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얼 하셨는지 어디 다니셨는지 동선 다 파악해서 문제없다고 판단이 되었었던 분들들만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인성교육

은 거의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절도 뭐 성폭력 이런 이제 자체 강사 쪽에서 우리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했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 강사로 운영해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A4)

4) 과외 및 외부 행사

기존의 특강이나 봉사활동, 경진대회와 같이 외부로 나가는 행사나, 멘토링이나 종교 활동과 같이 외부인이 소년원으로 들어오는 활동도 일부 혹은 전면 중지됐다. 특강이나 봉사활동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에는 한 달에 2-3회 정도의 행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사회봉사는 제한적으로 공간적인 제약이 덜한 농촌 지역에서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매우 소수의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소년들이 외부로 자동차나 용접과 같은 기능경진대회에 나가는 경우나 헤어디자인, 네일아트와 같은 외부 대회를 나가는 활동,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실시하거나 지역 및 방역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나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시험장 내 격리된 장소에서 소년원생들이 따로 활동을 하도록 해 외부의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에는 경진대회가 온라인으로 다 바뀐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경진대회를 안하려다가 다른 동네에서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렇게 했죠). (A2)

자격증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되고 검정고시 할 때도 당시에 단계가 낮아서 우리는 시험을 다 봤어요. (A4)

멘토와 같은 외부 자원봉사자들도 출입이 제한되면서 멘토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소년들의 활동도 중단된 상태이다. 주말에 외부인이 실시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일시 중단되었다가 종교 활동 시간에 종교단체에서 제공한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의 활동으로 변경되었다. 외부활동이 줄어든 만큼 내부 활동의 빈도는 증가했다. 소년원 내부에서 외부활동이 줄어든 소년들을 위해 간식시간 등을 늘리고, 체육대회, 삼겹살파티 같은 행사들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5) 면회 및 민원

면회는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했던 상황에서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폐쇄형 면회가 가능하도록 각 소년원에서는 칸막이설치 후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시간도 기존 30-40분 진행하던 면회를 10분으로 단축하였다. 코로나 19 이전 면회 시 음식을 함께 먹던 것을 전면 금지했으며, 음식을 내부로 전달하는 것도 차단하고 있다.

면회 형식이 바뀌면서 면회보다 전화의 빈도가 높아졌다. 이전에는 성적에 따라 전화가 보상처럼 주어졌다면, 코로나 19 이후 면회가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원생들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일주일에 1회 정도의 전화 기회를 주고 있다. 또한 화상면회 제도가 생겨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코로나 19 원생과 보호자의 민원의 종류도 변화했다. 모두 면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19 이전 함께 음식을 먹고 접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 면회방식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원생과 보호자의 민원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역에 있어 코로나 19 초기 발생 시 마스크 지급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년원의 코로나 19로 인한 문제점

1) 소년원 입·출인원 자체 조절 불가

소년원의 특성상 처분결정에 따라 소년을 수용하게 되며, 소년원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원과 직원의 방역과 업무 부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수용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인 협의를 통한 관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협의는 단기적으로 8호 처분을 중단함으로써 단기간의 수용인원 조절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 방역을 위한 공간·시설 미비

소년원의 시설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의 경우 신규 입소자에게 개별실을 지정할 수 없는 시설적 한계로 징계실에

수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소년원들이 공간을 구획해 가지고 별도로 장소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 받을 소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입장에서는 소년을 둘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사람들 접근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징계실이니까. 징계실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소년 입장에서는 (징계조). (A3)

○원 같으면 징계실에는 두지 않고 개별실이 따로 있어서 개별실을 지정했어요. 징계실하고 개별실은 분리되어 있어요. (A2)

또한, 소년원의 시설이 다소 열악한 곳에서는 실제 소년원 내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할 시 부분격리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소년원 내 코로나 19 확진자의 발생과 같은 문제 발생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소년원이나 △소년원 이런 시설이 열악한 곳에는 대부분의 소년원이 그런 걸 고려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제가 △소년원에 그 때 한참 (코로나 19 심각)할 때 근무했는데, 우리 소년원에서 코로나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강당에서 애들을 재우고 분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씻는 거, 화장실 문제 이런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분리된 공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소년원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소년원 내에서 시설을 100% 격리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A3)

이러한 공간적인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문제점은 과밀수용이었다. 시설이 열악한 소에서는 제한적인 공간과 수용 적정 인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과밀인데, 또 시설도 개선 안 된 상태에서 방역까지 생각하기가 (힘들죠). 지금 교과목 같은 거 한 방에 14명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직업훈련 하는데도 한 3개 호실 40명 정도가 되니까. 원생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한 때)이송은 못 보내는데, 받는 이송은 또 있었어요. 최소한의 받는 인원이 있는데 보내지 못하니. 그 때는 정말 과밀이었죠. (A1)

3) 사회에서 바로 입소하는 불위탁 관리의 어려움

심사원을 거치지 않고 사회에서 소년원으로 바로 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코로나 19와 시기가 겹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소년원으로 입소할 수 없고 격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격리조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공간 미비의 문제와 더불어 드물게 나타나 한 달에 1-2건이라도 직원도 적어도 한 명 이상 해당 소년을 전담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과교육·직업훈련 외부강사 출입 불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소년원 업무 중 하나가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이다. 외부강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년원의 교육과정상 외부강사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내부 직원으로 충당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 강도도 높아지고, 학생들도 전문적인 외부강사의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교육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원생의 생활 사기저하

보호 대상 소년들이 소년원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주요한 항목이 동기부여이다. 소년원 직원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줄어들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서 소년들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소년들이 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거든요. 목표의식을 못 심어 주잖아요. '야 너 이번에 이거 잘해서 우리 기능경기대회 나가잖아'하면 목표가 되는데, 목표가 없어져서. 단순히 이제 누구나 하는 자격증 취득에 목표를 두다보니까 더 큰 목표가 없어진 거죠. 적극성이나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죠. (A3)

물어봤어요. 온라인 경시대회랑 직접 가서 하는 경시대회랑 차이가 뭐냐 했더니 온라인 가서 상금은 받지만 어떤 체험이 없잖아요.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게 큰 한계인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A2)

또한 다른 사기저하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면회를 꼽았다. 면회의 횟수와 방법이 제한적으로 변하면서 소년들이 평소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직원의 의견도 있었다.

6) 불가피한 외부활동에 대한 대응 모호

면담 시기는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기 전으로, 수능을 봐야하는 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수능이나 가족의 경조사, 의료진료 등 불가피한 외부활동이 있을시, 이에 대한 코로나 19 관련 대응과 지침의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갔다 오는 소년들을 격리시켜야하나. 격리시킬까 싶어. 수능 갔다 오면 14일 격리시킨다고 하면 수능 안 보려고 할 것 같은데. (A2)

소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근데 좀 위험하다. 그래서 보호자를 설득하니까 보호자 분들은 속상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했는데), 문제는 애가 설득이 안 되네. 그래서 좀 애를 먹었죠. (A3)

의무과에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소년 하나 보내는 데 직원 3명이 기본적으로 운전기사 1명, 감호직원 2명 나가야 되는 거죠. 또 관리자가 현장감독도 봐야죠. 총 네 명이 한 명 움직일 때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걱정되고. (A4)

7) 직원 보호 부재

가) 업무과중

소년원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보호 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외부강사의 출입이 제한되고 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내부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업무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외부의 전염병 상황으로 근무자가 모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남아있는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관리직의 경우 개인일정을 포기하고 소년원 업무에 집중해야하는 상황도 생겨났다.

나) 일상생활 제한

코로나 19 이후 직원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한도 이어지고 있다. 직원 스스로 소년원에 코로나 19 확산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에는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수용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 부담을 훨씬 갖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딱 차단됐으니까. 나로 인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피해 될까봐 (걱정되니까). (A2)

다) 업무 스트레스 증가

과중되는 업무스트레스로 직원들 중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생활에 제한이 생기는 소년들이 직원에게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수준도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저희 직원들 중에 정신과에서 진료 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말 한마디 두 마디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소년들이 선생님 붙잡고 1시간에서 2시간 면담을 하고. 어떤 직원은 소년들 간에 문제 생긴다고 그러면 집에도 안가고 이불 깔고 같이 자고. (A4)

8) 문제 사례

다음은 면담 시 발견됐던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위험요소가 있었던 사례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단순 사례로 마무리되었지만, 코로나 19의 확산과 같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사례는 원본 면담에서 재구성 및 요약한 내용이다.

〈사례1〉

위생관념이 없어 보이는 8호 처분 소년이 소년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소 전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확진 관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호자랑 같이 왔으면 보호자에게 맡겨서 돌려보내면 되는데 보호자가 안 왔어요. 이 소년이 정말 확진자인데 그냥 돌려보냈을 때 ‘○소년원에서 그냥 가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직원 2명을 딸려 보내서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을 재울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원생들 있는 생활관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시설 바깥쪽에 있는 가정관에 음식을 넣고 거기 있도록 했어요. 문제는 동행했던 직원 2명이었는데, 만약에 소년이 확진자면 직원들도 위험하잖아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했지만 같은 차로 이동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도 결과 나올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소년이 있는 가정관에서 당직근무를 하게 했어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죠.

〈사례 2〉

금요일에 위탁에 여자 소년이 재판을 받고 들어왔는데, 코로나 밀접 접촉자라고 저희 퇴근시간 쯤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탁이기 때문에 법원 판사님하고 잘 연락이 됐으면 위탁변경을 해서 내보낼 수 있었는데, 마침 퇴근시간이어서 그게 안됐어요. 저희는 난리가 나서 그때라도 위탁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에 연락을 하니가 연락이 안 되고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주말동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자 소년은 사실적으로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코호트 격리가 되어버려서 근무자들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상황실 직원들도 다 퇴근 못하고, 야간근무 왔던 직원들도 대기시키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니까 원생들이 계속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원생들이 동요하면 또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설득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관할 보건소에서 토요일 9시 반에 검체 채취를 했는데 2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긴급하게 해야 한다. 소년원의 시급한 사정을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당일 밤 10시에 결과를 받았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자마자 해제를 했죠. 만약에 양성판정이 나왔으면 직원들이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교대근무로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지침이나 우리 내부 계획에도 보면 발생한 시점부터 코호트 격리를 하고, 의료진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 근무자가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확진이 나왔다고 하면 직원들 퇴근 못하고 교대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뻔했죠.

라.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시사점

1) 소년원생 대상 전염병 즉시 검사 원스탑 시스템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소년원생과 분류심사원과 같이 사회에서 소년이 기관으로 진입할 때 즉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스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마련으로 시설 내 진입할 수 있는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시설 내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같은 게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윈스톱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범죄 피해자도 해바라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년원이나 심사원 불위탁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진단이 나오게끔.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결과를 알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지만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2)

2) 일괄적인 지침의 지역별 특성 고려 필요

코로나 19가 이어지면서 소년원은 본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침을 내려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의 경우 전국 소년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각 지역의 상황이나 방역 단계에 따라 개별 소년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재량을 가지고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역의 방역 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지침이 각 지역에 위치한 소년원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소년들한테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또 수용 안정으로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그런 것(지침)이 일반적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맞춰서. (A4)

3) 비상시 수용관리 대책 마련

현재까지 소년원은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도 관련 확진자 발생 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과 같은 비상시 각 소년원에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조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인원 조절이 본부차원에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협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용인원을 조절해야 한다면 개별(소년원)이 아니고 본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을지훈련 하면 단계에 따라서 수용을 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절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퍼센트 때 내보내고 몇 퍼센트인 때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그거를 심사위원회에 맡기면 다 기준이 다르니까 본부지침에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빨리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A2)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 이에요. 정말로 확진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에 대한 대처를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때 소년들을 긴급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임시퇴원을. 확진자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났을 경우에 그 문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A4)

4) 면회 등 주말활동에 대한 재고찰

현재 면회나 종교 활동 등 주말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관리자인 내부 직원의 경우 이러한 주말활동의 변화로 인해 주말이 안정적이고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 주말의 경우 면회가 있을시 담당 직원이 다수 상주하면서 질서관리를 하고, 면회 전후를 기점으로 소년들의 기분도 살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외부에서 면회를 자주 오는 소년은 면회가 기다려지는 활동이지만, 외부에서 면회를 자주 혹은 전혀 오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면회를 전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성숙하게 소년을 대하지 못하는 등 면회 자체가 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폐쇄형으로 시간 구간별 예약제로 면회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여러 어려움도 완화되고, 직원들의 주말 근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종교 활동과 같은 다른 주말활동도 제한되면서 외부인이 소년들을 접촉하고 자극을 주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어 비교적 생활이 안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면회의 변화가 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면이 제한되면서 편지나 전화로 서로의 의사를 전하는 등의 활동이 늘면서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소년원생 소년 및 보호자

소년원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소년원생과 소년 원생의 보호자를 만나 코로나 19

이후의 소년원에서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소년 총 4명과 보호자 3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대상 소년의 경우 수도권 소재 소년원 2명, 지방 소재 소년원 2명으로 4명 중 3명이 남자 소년이었으며, 16세부터 19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나타냈다. 대상자중 3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으며, 1명은 자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였다. 처분은 모두 10호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입소하였고, 처분 경력이 있는 경우 5호, 8호, 9호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처분 경력이 없는 경우도 2명 있었다.

▶▶ <표 3-2> 조사대상자 정보(소년원생)

면담 대상자	지역	성별	연령	학력	현 처분	처분경력
B1	수도권	남	19	고1 자퇴 고등검정고시 합격	10호 (2019.09.)	5호, 8호
B2	수도권	여	17	고1 재학	10호 (2019.10.)	9호
B3	지방	남	17	고2 재학	10호 (2019.07.)	없음
B4	지방	남	16	고1 재학	10호 (2019.09.)	없음

보호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보호자 면담 대상 2명은 면담 대상 소년의 어머니와 할머니로 보호자였다. 지방 소재 소년원 원생 보호자는 면담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 소년의 어머니였다. 모든 보호자는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 <표 3-3> 조사대상자 정보(소년원생 보호자)

면담 대상자	지역	원생과의 관계	성별	연령
C1	수도권	B1의 모	여	40대 후반
C2	수도권	B2의 조모	여	70대 초반
C3	지방	원생 모	여	40대 초반

가. 수도권 소재 소년원

1) 면담대상자 소년 B1 보호자 C1

보호대상 소년(B1)은 2019년 9월 입소 후 몇 개월 후 코로나 19가 발생한 경우로, 전반적으로 소년은 코로나 19 전후 소년원 생활에 대해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2019년 입소 당시에는 다른 소년원생들이 외부활동 개방처우로 짬질방이나 놀이동산, 수영장을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응답했고, 당시에는 입소 초기라 소년은 나갈 기회가 없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개방처우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았다. 가장 불편한 것으로는 면회와 개방처우가 안 되는 것을 꼽았지만, 선생님들이 발열체크를 하시면서 안부를 묻는 등의 관심이 본인을 더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 19 전후로 달라진 점으로는 면회실에 분리벽이 생기고, 면회 시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마스크를 항상 써야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응답했고, 종교 활동이 이전이 더 재밌었지만 지금은 간식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늘어난 내부 활동 중에서는 삼겹살 파티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으며, 멘토링, 기능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못해서 친구들이 답답해한다고 했고 본인도 아쉬운 듯 보였다. 자원봉사도 내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인성교육시간에는 축구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다 같이 하는 활동이라 불만은 없었다. 재밌게 해주던 외부강사 선생님들이 못 들어오 시지만 내부 선생님들도 괜찮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보호자는 소년(B1)의 어머니(C1)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불편한 것 보다는 면회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었으며, 면회를 위해 소년원을 왕복하는 것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 19 이후 처음에는 면회할 때는 소년과 함께 식사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적응도 돼서 괜찮고, 10분만 보고 가도 얼굴보고 가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소년원에서는 안내를 받았고, 원래 가족이 와서 함께 하는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안내도 받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년이 어떠한 지도를 받고 생활하는지는 소년이 얘기하는 수준에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잘 지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보호자 자신도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불편사항이 없고 소년도 소년원에 있어서 갑갑한 것 말고는 특별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면담대상자 소년 B2 보호자 C2

다음 면담 대상 소년(B2)은 2019년에 입소해 코로나 19 전후 소년원을 경험하였다. 이전 소년(B1)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화들 보다 면회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면회를 일주일에 3회, 최소 2회 정도로 자주 오시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19 이후 일주일에 1회로 빈도가 줄어들었고 면회 시간도 3-40분에서 10분으로 짧아지면서 답답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폐쇄형 면회라 음식을 나눠먹고 포옹하는 등의 접촉이 안 되고 시간이 짧아 이야기가 끊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면회가 없어지면서 친구들도 짜증이 늘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전화의 기회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년의 경우 여러 분야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코로나 19 전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방처우에 대해서도 애초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서 괜찮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면 개방처우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다소 아쉬운 수준으로 보인다.

교과교육도 내부직원 위주로 진행하고 인성교육, 직업훈련, 멘토링, 종교 활동과 같은 기존의 외부인이 기관으로 들어와서 수행하던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면서 단조로워진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과 수업위주의 시간표로 생활하고 급식으로 식사를 하고 주말에도 면회와 종교행사가 없어지면서 생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매일 똑같은 생활이라 답답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소년원에서 내부 활동으로 체육대회, 영화감상, 장기자랑, 운동회, 삼겹살파티 같은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이러한 지루함이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소년의 경우 삼겹살파티에서 다른 소년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소년(B2)의 할머니(C2)로 코로나 19로 인한 면회 형태의 변화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올해 초 중단 시기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희망적이었는데,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재개된 면회도 폐쇄형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으로 보였다. 보호자 스스로가 기저질환자로 면회를 오갈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면회가 어려워지면서 전화 횟수가 증가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짧은 것이 아쉬운 것으로 보였으며, 편지도 늘었는데 소년이 마음 속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평가했다.

소년이 특별히 보호자에게 코로나 19로 인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은 없지만 운동도 자주 못하고 해서 답답하고, 면회로 아버지나 본인이 다녀간 날에는 시간이 잘 가는데 다른 날들은 지겹다는 이야기는 자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19 이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도 있다고 들었는데 못하게 되어서 매우 아쉬워했다. 보호자 교육의 경우 아버지가 받았고, 당시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년원이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려고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소년원에서 소년들에게 철저히 방역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면회장에도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더 배치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지방 소재 소년원

1) 면담대상자 소년 B3

면담 대상 소년(B3)은 면담 당시 출원을 3일 앞둔 시점으로, 2019년 7월에 ○소년원에 입소해서 지난 11월에 본 소년원으로 이송했다. 소년은 전반적으로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며, 약간의 답답함과 아쉬움 이외에 특별히 불만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가장 많이 변화한 활동으로는 면회와 개방처우를 꼽았으나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원생들도 다 같이 상황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라 이에 대해 아쉬워하긴 했지만 큰 불만은 없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1주나 2주에 1회씩 면회를 했다면 현재는 한 달에 1회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소년의 경우 면회 방식이 폐쇄형으로 변화한 후 보호자에게 면회를 오지 않도록 권하고 있었다. 면회하러 장거리를 와야 하는데 폐쇄형으로 10분의 시간만 면회가 가능한 것이 미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전화는 늘어서 1주일에 1회 5분정도씩 하고 있는데, 보호자도 매우 만족해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19 전보다는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다보니 분위기상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 소년원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하는 체육대회, 삼겹살파티 같은 행사 빈도도 많아지고 간식도 늘고 선생님들이 많이 챙겨주고 있어서 스트레스 수준은 아니고 이전에 하던 활동들을 못해서 다소 아쉬운 수준으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는 것 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

2) 면담대상자 소년 B4

소년(B4)은 이전 소년(B3)과 유사하게 다른 소에 2019년 9월 입소 이후 올해 6월 이송되어 현재 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소년에게 코로나 19 변화로 인해 힘들고 불편한 것에 대해 물었을 때 마스크 쓰는 것과 면회가 가장 힘들고 아쉬운 점이라고 답했다. 또한, 가족이 면회를 위해 장거리를 와야 하는데 짧은 시간 폐쇄형 면회를 하게 되어서 소년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부모님과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 없어서 아쉽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같이 올 수 없는 것도 다른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소년의 경우도 전화의 빈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소년은 코로나 19 이전에 입소한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입소 후 외부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응답했다. 봉사활동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내부 활동도 체육대회, 골든벨 등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특별히 늘어난 것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성교육은 내·외부 선생님으로 인한 각별한 차이는 없으나 외부선생님과 하는 것이 좀 더 재밌게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내부 선생님들과 가깝게 지내게 된 부분이 더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소년 입장에서 변화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이 판단하기에 소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 같지만 문제나 변화는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소년은 간식을 많이 주는 변화와 체육대회와 같은 내부행사가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마스크착용 이외에 생활에서의 큰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면담대상자 보호자 C3

면담대상 보호자는 소년원생의 어머니로, 보호 소년이 소년원에 입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코로나 19 이후였기 때문에 보호자는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변화는 파악할 수 없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면회방식과 시간,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면회를 위해 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면회실에 부착되어있는 안내물을 보고 이전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호자는 이전처럼 면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현재는 전화도 일주일에 1회 하고 있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은 상태로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면담 시 개방처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개방처우도 중단되는 것이 더욱 안심된다고 응답했다.

소년이 코로나 19로 인해 호소하는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년이 간혀있어 답답한 것 이외에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내부 활동으로 체육대회, 삼겹살파티 등을 한 것을 대략적으로는 전해들은 것으로 보였다. 보호자는 소년원이 코로나 19가 종료 될 때까지 현재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현재 소년이 크게 불편한 점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 19의 심각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완화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3. 소결

소년보호기관 중에서도 소년원은 대상 소년들이 집합하여 생활하는 시설로 코로나 19의 감염원이 기관 내부로 전파되었을 때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년원 직원과 소년원생, 원생의 보호자를 면담하여 코로나 19로 이후 소년원의 대응과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소년원에서는 수용인원의 변화가 일부 나타났고, 대부분의 업무가 코로나 19로 인해 다각적으로 변화했다. 전체 수용인원의 경우 비교적 장기적으로 소년원에 수용 되는 9호와 10호 처분 소년보다는 1개월의 단기 수용인 8호 처분이 감소하는 변화가 컸으나 코로나 19의 1차 대유행이었던 2월 이후 몇 달 간 만 지속되

어 일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에 있어서는 가림막과 같은 시설적인 설치, 소독과 같은 방역을 추가적으로 실시했으며, 외부활동이 중단됨과 동시에 외부인의 출입 또한 제한되면서 개방처우 뿐만 아니라 교과교육과 직업훈련, 종교 활동과 멘토링 등 거의 모든 소년원의 업무에 영향이 있었다. 특히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은 내부 직원이 모두 감당하게 되면서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이 소년원으로 들어와서 진행했던 봉사활동이나 종교 활동, 멘토링 등은 모두 중단되었으며, 코로나 19의 단계 수준이 낮을 시기에도 교과교육 등 강사 등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한을 완화했으나 이외 과외활동에 대한 외부인은 출입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면회도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음식섭취를 금지했으며, 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는 소년원 직원들의 면담결과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한 의무교육 실시의 한계와 사회에서 바로 소년원으로 불위탁 되는 경우의 대처 문제, 실질적으로 소년원에서 수용인원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년원에 따라 방역과 격리를 위한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 직원의 적절한 보호의 부족, 원생의 생활 사기저하, 수능이나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외부활동에 대한 대응이 모호한 점 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본부의 지침이 지역별의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소년원생 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윈스탐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소년원 내에서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같은 비상시에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생과 보호자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소년원의 철저한 대처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소년들은 생활이 단조롭고 답답한 것과, 전에 했던 활동들을 못했던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것 이상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소년원의 대처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소년과 보호자 모두 공통적으로 면회에 있어서 이전처럼 장시간동안 함께 식사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원 입장에서 면회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면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보호관찰소의 경우 각 권역별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다섯 기관과 특수 사례인 대구 보호관찰소의 직원과 보호 소년, 보호 소년의 보호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여섯 기관에서 6명의 직원과 6명의 보호관찰 대상 소년, 6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1. 보호관찰소 직원

면담 대상자는 총 6명으로 2명이 집행, 3명이 보호관찰, 1명이 보호관찰과 집행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6명 중 1명이 여성이었으며, 연령분포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짧게는 16년부터 길게는 25년까지 평균 약 21년이었고, 직급은 계장 2명과 과장 4명으로 분포했다.

▶▶▶ <표 3-4> 조사대상자 정보(보호관찰소 직원)

면담 대상자	성별	나이	근무년수	직급	담당업무
D1	남	40대 후반	16년	계장	집행
D2	남	50대 초반	24년	과장	보호관찰
D3	남	50대 초반	20년	과장	실무전반
D4	남	50대 중반	24년	과장	보호관찰
D5	여	50대 초반	25년	과장	집행
D6	남	50대 초반	18년	계장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 변화

1) 시설 및 방역

코로나 19 발생 이후 보호관찰소는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에 있어 방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열 체크, 2m 거리두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고 있었다. 방역과 관련된 물품은 일부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보호관찰소에서 외부 기부금으로 관련 물품을 받기도 했다. 수강의 경우 중단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실시할 때마다 장소를 소독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면담에 있어서도 시설적인 변화가 있었다. 면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방역에 노력을 기울였다.

2) 직원 근무

코로나 19 이후 보호관찰소 직원에 대해서도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실시되었지만, 대상자에게 수강과 봉사활동을 집행하거나 보호관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재택근무 형태로 수행되기 어려워,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년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3) 수강·봉사활동 등 집행

2호와 3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수강과 봉사활동을 명령받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보호관찰 업무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분 중 하나가 이러한 수강과 봉사활동의 집행이다. 방역 단계가 높은 시점에 집행 자체가 중단되고 지연되면서 누적된 수강과 봉사활동을 방역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뒤늦게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수강

다수의 인원이 모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수강명령의 경우 코로나 19가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집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방역 단계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 인원을 늘려가며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에는

수강을 집행할 때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수강 대상자나 강사 발생 시 즉시 수강을 중단조치 했던 사례도 있었다.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지금 3개월째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수강 하다가 두 번 중단했거든요. 발열이 나가지고, 한번은 강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D3)

외부 직원들이 수강 못했죠. 민감하니까. 또 여기서 감염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말만 나오면 중간에라도 해산해요. (D2)

또한, 수강을 집행함에 있어 코로나 19 이후 방역과 관련한 준비로 인해 수강 전후 준비하고 정리해야 하는 작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업무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 봉사활동

코로나 19 이전 봉사활동 집행은 대부분 요양기관과 같은 외부 기관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요양시설과 같은 기관들이 모두 외부 출입을 제한하면서 소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봉사활동의 기회도 급격하게 줄었다. 방역 단계가 낮아져 봉사활동이 가능했을 때도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집행할 수 없는 이유로 매우 제한적으로 봉사활동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가 제한적으로 집행되면서 누적되는 미집행 봉사를 직접진행으로 대체해서 수행하면서도 원활하게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특히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 분리해서 집행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함께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집행으로 외부 봉사 업무를 위탁 받아와서 관찰소 내에서 봉사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4) 보호관찰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이다. 보호관찰 업무가 보호관찰과 집행으로 구분될 때 봉사나 수강과 같은 집행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봉사나 수강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상황이 업무적으로 더욱 부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보호관찰의 경우 특성상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처분이 종료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업무가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후 업무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 면담과 지도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과 지도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년의 보호관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면의 횟수를 줄여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는 보호관찰을 수행함에 있어 방법적인 변화이지 실질적으로 보호관찰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변화의 수준이 면담 대상 직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무보고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계에 따라 일부 출장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그래서 직원들과도 같이 얘기하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달라졌다 그러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면횟수를 좀 줄어 들고 출장횟수가 좀 줄어들은 거. (D4)

철저하게 보고하고. 정보 보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발생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1단계 1.5 단계라서 지금 뭐 소재추적이나 이런 거 통상적인 건 하기는 해요. (D6)

5) 결정전 조사

결정전조사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 대면으로 수행했지만, 이후부터는 비대면인 전화 조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면서 재판이 중지되었을 시에는 이러한 조사의 요청도 중단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요청이 없었고,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직원의 입장에서도 결정전조사 업무 자체가 대체로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년 대상 결정조사는 생활기록부와 같은 조사기록 자료가 다양하게 있는 편으로 중요성에 비해 조사 업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화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기관 간 협의 등 기타 업무

법원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는 지역에 따라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협의 없이 보호관찰 업무를 무리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존에 협의되어오고 있던 보호관찰과 관련된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안건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소년들은 대부분 1년 이내 집행이 가능 한데, 코로나 때문에 협의를 이번에 (법원에)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더 이상 길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D3)

우리가 인원수나 재판 일자를 조정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D4)

기타 보호관찰 업무의 변화로는 소년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 원호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비대면 계좌이체를 하는 등 비대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구인되어 보호관찰소로 이송될 경우 발열 등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구인 후 석방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나. 보호관찰의 코로나 19로 인한 문제점

1) 방역을 위한 공간·시설 미비

본 연구의 면담을 위해 찾았던 보호관찰소의 사무공간은 소년과의 면담·지도도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보호관찰소의 경우 면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모든 면담에 활용되기 어려운 제한된 개수였고, 일부 보호관찰소에는 개인 면담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공간은 일부 아크릴판 등 가림막으로 소년과 보호관찰관 사이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긴 했으나, 전체 공간 자체가 협소해 전체적으로 개인 사이 2m의 간격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듯 시설적으로 방역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관찰소는 면담 시 접촉을 최소화 하라는 방침도 준수해야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시설이) 이런 와중에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어제도 오더(order)가 내려왔어요. 저희

복무가 방역 격상이 되긴 했는데. 물리적인 환경 그대로 두고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접촉이 안될 수가 없는데. (D5)

○같은 경우는 임대청사라서 개인 면담실이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아크릴판 이런 걸 (설치)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면담을 중단했습니다. (D3)

수강 집행의 경우도 보호관찰소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상황이 달라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공간, 특히 방역이 용이한 분리된 공간이나 넓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강의실이라든가. 소년들은 무작정 수백 명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10명 미만으로 해서 집단상담, 체험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D2)

우리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강당에서 수강을 해버리면 프로그램실 정말 좁은 공간에 4명, 5명 넣었다가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 소년들이 단독수강을 많이 갖고 오는데 저희는 강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D3)

2) 제한적 집행수행 등으로 인한 집행 지연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던 집행이 다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어려움이 있다. 집행 수행에 있어 기간을 단축하려 해도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년의 처분 일정에 맞춰 무리 없이 집행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보호관찰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봉사의 경우 기존에 집행했던 다수의 기관이 거의 모두 외부 봉사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집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축적된 미집행 건수에 비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집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미집행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막막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는 기존 비율 8:2정도로 협력기관 비율이 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직접 집행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직접집행도 한계가 있고. 주로 가는 데가 농촌 이런 텐데

이건 직원들이 다 인솔해서 가야되잖아요. (D1)

3) 원격 보호관찰의 한계

보호관찰 업무는 실질적인 대면지도가 주요 업무로 코로나 19로 인해 이러한 업무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업무의 특성상 보호 대상 소년과 소년의 보호자,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보호관찰이 거짓말이 충분히 가능한 전화통화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러한 전화 지도도 화상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관련해 통화비지원 등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간 불시감독과 같은 추가적인 지도활동도 제한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가 다각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은 (지도라고 할 게) 마땅한 게 없죠. 그냥 전화지도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체하면 보호관찰이 사실은 망가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단계가 낮아졌을 때는) 찾아가기는 하는데, 집 안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만 열라고 하고 나는 저 쪽에 서 있다가 가고. 한계가 많죠. (D6)

출석지도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소년이 발열증상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일부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들 같은 경우는 열나면 그 핑계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죠. 나와야 하는데 ‘열나요’ 그럼 확인도 안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해야지. (D1)

4) 각종 조사 수행 한계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한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면으로 수행했던 조사들이 비대면 전화로 진행이 되면서 대면 조사 시 취합할 수 있는 비언어적 정보에 대한 제한이 커진 것이 가장 주요한 조사의 한계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주요 요소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직원들이 관련 부분에 있어 충실도가 아쉽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조사는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그 안에 안하면 안 되잖아요. 연장도 안 되고 말 그대로 결정하기 전에 주관을 해야 하니까. 결정해야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재판을 연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한이 있는 업무다보니까. 어떤 형태로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검사들 비대면으로 하기는 했는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D1)

전화상으로 했을 때는 좀 피상적일 수밖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가서 만나는 내용들이 충실은 하죠. 분위기도 있고 그 대상자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D4)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신 대상 소년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면(조사)을 조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기는 했어요. 처음엔 좀 미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보호자 한명 대상자 한명 이렇게 따로 (진행을 했어요). (D3)

5) 지역격차로 인한 대응 한계

본소에 비해 지소의 경우 수강을 위한 인력이 다소 부족한 편으로, 코로나 19 이후 이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강사나 기관의 도움 없이 프로그램을 직원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소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혼자 성인, 소년 다 해야 하는데 솔직히 프로그램 40시간짜리 짚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10시간 미만이고. 성폭력 같은 경우는 전문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보내거든요. 나머지 인성교육을 저희가 위주로 본부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는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죠. (전문프로그램이 있는) ○도 많이 닫고 하니까. (D3)

6) 원호 실시 한계

원호 업무에 있어서도 코로나 19 이후의 한계가 명확했다. 원호의 경우 대상 소년의

상황과 필요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면 지도나 방문 자체가 제한되면서 어떠한 원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저희는 원호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솔직히 원호를 하려고하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소년들이 파악이 돼야하거든요.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하는데). 무턱대고 돈 갖다 주고 문화상품권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파악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당장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년들이 필요한 거 알아야지 직업훈련 하고 싶은지 의사도 알아야하고 상황도 알아야하고,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D3)

7) 보호자 민원

다수의 보호 대상 소년의 보호자가 코로나 19 이후 원격수업 등으로 학사 형태의 변화 이후 소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관찰에 대한 민원은 아니나 보호관찰관에게 다수의 보호자가 관련한 하소연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는 수강의 집행을 원격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보호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 직원 보호 부재

가) 업무 과중과 업무 격차

보호관찰의 두 주요 업무인 집행과 보호관찰에 있어서, 집행의 경우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 반면 보호관찰의 경우 업무가 제한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부담의 수준은 낮아졌지만 제대로 된 보호관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업무의 차이에 따라서 보호관찰 내에서도 업무 특성에 따라 코로나 19 이후 업무변화와 발생하는 문제점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집행] 미리미리 '수강 뭐 오세요.' '봉사 언제 언제 오세요.' 전화를 다 돌렸어요. 다 했는데 일요일 날 밤 7시. 광화문 발표, 격상해서 3단계 되고 전면 중지하라고 토요일에 업무 연락 내려와 있었어요. 일요일 날 다 출근해서 전화 나눠 갖고 다 돌려서 '월요일 날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했어요. 험한 말하는 민원도 다 듣고. 그걸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소년도 마찬가지였죠. (D5)

[보호관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나중에 안한 걸로 문제될까봐 담당자들이 자꾸 이제 키스 안에 ‘코로나 19 대응 2단계에 따라’ 이런 걸 입력해요. 뭐 변경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업무 과중은 오히려 안 돼, 할 게 없는데... 어떻게요. 사실은 답답한 거죠. 바쁜 게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고.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죽어있는 보호관찰을 하는 거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게 다잖아요? 바쁜 거 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답답한.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하지 못하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장점이라 해 봤자 이게 뭐 업무 경감이 아니잖아요? 가시방식이고. 한시적이고. (D6)

나) 재택근무의 비효율성

집행과 보호관찰 업무 모두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있어 한계가 다양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근무 환경에서의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개인적인 취향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택근무가 코로나 19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업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들을 무조건 다 출근. 직원들 중에 이제 좀 나눠서. 일주일에 이렇게 순번 째 짜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업무단절이 되지 말라고 재택 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재택하고, 재택 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취지가 안 맞는 게. 순번 짜서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 돌아보면 직원들끼리 서로 다 마주치고. (D5)

만약에 재택을 하려면요. 업무량이 그만큼 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재택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재택이 의무로 지침이 내려오고. (D6)

다) 업무 스트레스 증가

코로나 19 이후 업무과중과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대상자를 대면할 때 직원 본인의 감염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활동도 제한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도 스트레스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의 경우에는 신천지 확산 이후 직원이 종교인 이거나 문제발생지 근접한 곳에 거주하는 등의 요소가 있으면 이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출장도 부담스럽기는 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옳을 수도 있는 건데 무작위로 대상자 집에 가기도 그렇고. 직원들도 조금 어렵죠. 직원들도 기저질환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코로나 걸릴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안가면 눈치 보이고. (D1)

사실상 피로도가 엄청 높아요, 높은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전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생각해도 되었던 걸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요. (업무 스트레스) 직원들은 이제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이제 레드죠. 분노. 이제 화가 나는 거지. (D5)

라) 직원 처우

업무 중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긴급대처 상황에서 직원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보이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경험하는 처우 수준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직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여기도 확진자 1명 다녀갔었는데 접촉이 있었어요.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직원이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검사를 했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하래요. 대중교통도 타지 말래. 다른 직원 차도 태워주지 말래. ○에 있는 집까지 걸어갔어요. 3시간 4시간 동안. 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저희는 대민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동선 속에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지지해주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D5)

다.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시사점

1) 관련 지침·매뉴얼 마련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업무에 있어서도 지금의 시행착오가 축적되어 법적근거를 가지고 매뉴얼화 되어서 향후 전염병 상황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적용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집행에 있어 중단되는 기간에 대한 일괄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화 하여 업무에 혼선

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게 시행착오다. 우리 처음 해봤으니까. 우리가 화재나면 화재 대피 매뉴얼 나오듯이. 정부에서 이런 대응 방안들이 나와 줘야 되고. 직원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라.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해서는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처리 했죠. 이제 그게 데이터가 모여서 나중에 매뉴얼로 되어져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D1)

2) 방역 갖춘 시설의 대비

코로나 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변종 바이러스나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역이 아닌 기본적으로 방역이 가능한 업무 공간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설이라는 측면이. 이제는 이전 시대로는 못 돌아가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계속 정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뜯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사무, 업무 처리 공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경계들의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대상자와 직원들이 안전하게 대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저희 소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에서 들어오면 담당자 별로 지금 바로 면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도 이제 바뀌어서 은행 창구처럼 앞쪽에서 공간을 막고 직원들은 안쪽에서 근무를 하고. 직원이 자기 대상자가 오면 면담실을 이용하던지. 수강이나 봉사 같이 집행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쪽 안내 데스크처럼 마련이 되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재고들이 다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D5)

3) 일괄적인 지침에 대한 지역별 특성 고려 필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차 대유행 이전에는 지역별, 단체별로 특정되어 코로나 19 전염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만큼,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소위 청정지역의 보호관찰소의 경우 다른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비해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사례는 공간적인 요소도 자체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도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코로나에 청정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대면 접촉하는데 있어서 자유롭다는 특색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지금은 (미집행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따로 건물 있고 하니깐 다 폐쇄하고 여기서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 그게 그때 임기응변이지만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D4)

이렇듯 지역에 따라서는 코로나 19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일 때 보호관찰소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아닌 지역의 현황에 맞추어서 맞춤형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단계별로 지침의 세밀한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19 관련한)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만약에 뭐 ○에 3단계가 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만 적용을 하는 거지, 거기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지. 전체를 적용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게. 조금 보호관찰관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D6)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다른 요소 또한 발견되었다. 대구는 지난 2월 급격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증가 사태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구 시민의 체감은 아직 심각했던 시점의 위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던 기관들도 방역 단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준으로 봉사를 받지 않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집행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도시의 보호관찰소와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성과를 평가할 경우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는 업무 지침과 성과평가의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

대구지역 보호관찰소의 경우 지난 2월의 사태 이후 대구 지자체와의 협력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 보호관찰소에서는 본부의 지원 이전에 마스크 지원 등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 적시에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보호관찰소의 직원은 이러한 협력의 부재가 다소 아쉬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지자체와의 교류로 해소할 수 있는 봉사활동 집행과 같은 처분이 협력을 통해 해소되길 바랐지만 협의는 현재 정체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하고 맺어지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업체에 힘들잖아요. 생산력은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물리적 공간 제공하고. 우리 인력 풀 제공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진도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시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 (시청도) 전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코로나 때문에 난리이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 분들하고도 상반기 때 몇 번을 만나려고 시도해도 (못 만났어요). (대구 보호관찰소 직원)

5) 보호관찰제도와 재범의 관계에 있어 효율성 고찰

보호관찰소의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의 재범률의 변화에 대해서는 재범이 증가했다는 의견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 이전까지와 유형이 다른 범죄가 시차를 두고 증가할 것이라는 세 가지 의견이 있었다.

[증가] 소년 재범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보호자가 개입을 많이 못했으니까. 당연히 재범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D1)

[증가] 저희 소도 재범률이 작년 총 재범자 수를 8월 달에 넘었습니다. (D3)

[증가] 한 3월 중에 재범자가 한 16명으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올해가 그 때가 최고 많이 늘어났어요. (D6)

[변화 없음] 직접 이 접촉을 통해가지고 이 재범이 확 낮아졌다. 이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보호관찰의 실효성의 지표가 재범률로 봤을 때 변동이 없었다라고 보면 그런 집단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까? 다시 한 번 정책적인 방향을 조정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D4)

[향후 증가] 한 6개월 있다가 봐야 되는 거죠. 신고하고 잡히는걸 봐야겠죠? 인터넷 사기 같은 경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봐야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관찰이 지금 올스톱인 상태니까 그건 지켜봐야 된다, 신고가 또 얼마나 될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D5)

6) 원격 전면 전환에 대한 우려

코로나 19 이후 수감이 제한되면서 대상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원격수감에 대한 민원이 일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의 집행'과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 있어 소년 보호관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향후 비상시의 전면 원격으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2. 보호관찰 대상 소년 및 보호자

보호관찰 대상 소년과 보호자 면담에는 소년 6명과 보호자 6명, 총 12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소년의 경우 수도권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2명, 지방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1명은 대구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처분을 받는 소년이다. 연령은 13세부터 19세까지로 학력도 중학교 재학부터 고등학교 재학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중졸 후 고등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상자 중 1명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외 소년들은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이다. 처분 종류로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 수감명령(2호), 사회봉사(3호), 단·장기 보호관찰(4·5호)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6호 처분까지 현재 처분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상 소년 중 이전 처분경력이 있는 경우는 절반인 3명이었고 이들의 경우 1호, 2호, 4호의 처분 경력이 있었으며, 3명 모두 4호 처분인 단기 보호관찰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5> 조사대상자 정보(보호관찰 대상 소년)

면담 대상자	지역	성별	연령	학력	현 처분	처분경력
E1	수도권	남	13	중학교 재학	1호, 4호 (2020.02.)	없음
E2	수도권	남	18	고1 재학 1년 유급	1호, 2호, 4호 (2019.12)	없음
E3	지방	남	19	고3 재학	1호, 4호 (2020.01.)	없음
E4	지방	남	18	고3 재학	3호, 5호 (2020.11.)	2호, 4호 (2020.05)
E5	지방	남	15	중2 재학	2호, 3호, 4호 (2020.02.)	1호, 2호, 4호
E6	대구	여	17	중졸 검정고시 준비 중	5호, 6호 (2019.10.) 2020.04. 시설 퇴소	4호 (2019.01)

보호관찰 소년의 보호자 면담 대상자는 6명 중 5명이 면담대상 소년의 보호자로 참여하였으며, 1명은 보호관찰대상 중인 소년의 보호자로 면담에 참여하였다. 지역은 소년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소재 보호관찰소 2명, 지방 소재 보호관찰소 4명으로 이 중 1명이 대구지역에 해당한다. 보호자 6명 중 5명의 보호자가 소년의 어머니였으며 1명은 할머니로, 연령대는 4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6> 조사대상자 정보(보호관찰 대상 소년 보호자)

면담 대상자	지역	보호 소년과의 관계	성별	연령
F1	수도권	E1의 모	여	30대 후반
F2	수도권	대상 소년의 모	여	40대 초반
F3	지방	E3의 모	여	40대 후반
F4	지방	E4의 모	여	40대 중반
F5	지방	B5의 모	여	40대 초반
F6	대구	B6의 조모	여	60대 중반

가. 수도권 소재 보호관찰소

1) 면담대상자 소년 E1 보호자 F1

소년(E1)은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된 후 몇 달 후인 올해 2월 단기 보호관찰(4호)을 1년 처분 받았다. 보호관찰을 받는데 있어서 한 달에 2회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심각 수준이었을 때는 보호관찰소로 오지 않고 전화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석에서 전화로 바뀌었을 때 어떤 지에 대한 질문에는 출석 안 해도 돼서 기분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횟수가 줄어드는 등 자유시간이 늘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지만 스스로 최대한 사고와 연계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호관찰을 받는 주변 친구들 중에는 출석이 전화로 대체되었을 때 위치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야간전화를 못 받은 것에 대해 핑계를 대는 등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학교 등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돈을 갈취하고 하는 등의 비행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SNS를 이용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변화 해서 사고의 빈도가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의견도 들려왔다.

전반적으로 소년이 느끼는 보호관찰의 변화는 출석지도가 전화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체온 측정계나 QR코드 확인 등 방역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2단계 이상으로 심각할 수준, 특히 관찰소 주변의 전염상황이 심각할 때는 출석지도를 전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호자는 소년(E1)의 어머니(F1)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이 출석지도를 받는 것을 처분 초반인 2월경 1-2회 한 이후, 현재는 상황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관찰소에서 관련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지도 방식에 대해 불만이 없었으며, 꾸준한 전화통화로 소년을 관리해주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이 가정에는 한 달에 1회 방문하는데, 코로나 19의 우려로 현관에서 간단히 대화만 5-10분정도 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소년의 보호관찰 수준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보호관찰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시간도 잘

지키고 보호관찰중이라는 인지를 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줄어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특별한 불편은 없지만, 소년을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못해서 아쉽다는 의견과 자녀가 기저질환이 있어 되도록 원격이나 화상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면담대상자 소년 E2

소년(E2)은 2019년 말 경 1, 2, 4호 처분을 받으면서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다. 면담 당시 소년은 수강을 받는 중에 있었다. 수강이 거의 1년 가까이 미뤄진 이유는 재학 중인 상황이라 방학을 이용해 수강을 하려 했다가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미뤄졌다고 한다. 처분 기간이 1-2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보호관찰소에서 긴급하게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강이 미뤄진 것 자체는 불편하기는 했지만,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전달해 주어서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없었으며, 수강 일정이 잡히면 바로 연락을 줄 것으로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불안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강은 거리두기를 하고 자리를 띄워서 앉고 있으며,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식사는 모두 따로 앉아서 먹는 등 방역 면에서 철저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건물 자체에도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 갖추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보호관찰은 이전 소년(E1)과 마찬가지로 전화지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왕복시간도 절약되고 기분도 좋았다고 한다. 대신 스스로 지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렇게 할 경우 고쳐지지 않을 친구들은 본인의 잘못의 심각성을 모르고 재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최근 주변에 보호관찰을 받을 수준의 건입에도 처분을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코로나 19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저녁시간에 많은 영업장이 닫음으로 인해 렌트카를 빌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수강을 줌 수업처럼 원격으로 해서 코로나 19에 대한 걱정도 덜고, 일정 때문에 못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3) 면담대상자 보호자 F2

소년의 보호자(F2)는 어머니로, 자녀는 17세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남자소년이었다. 소년은 비교적 처분 경력이 많은 편으로, 현재 처분도 다양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나 보호자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면담 당시 가장 최근(약 일주일 전)에 받았던 보호관찰이 2년이고 수강을 40시간, 외출제한 3개월을 처분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소년은 1호, 2호, 4호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면담 대상 보호자는 과거 처분에 있어서는 보호자가 소년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있던 상황이어서 코로나 19 등 보호관찰 제반 관련 연락을 얼마나 받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본인에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등록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관련 안내를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보호자는 오히려 코로나 19 이후에 보호관찰관이 가정 방문도 자주 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챙겨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변경된 점, 소년의 아버지가 보호관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19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호자는 소년이 보호관찰을 통해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보호관찰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전반적으로 소년이 어떠한 보호관찰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소년이 학사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다. 어려움의 종류에 대해서는 소년이 학교에서 원격과 대면수업이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보호관찰 출석하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년이 오히려 학교는 핑계대고 가지 않는 날이 있어도 보호관찰은 가야한다는 인식이 있는지 꼭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외출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데,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안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지방 소재 보호관찰소

1) 면담대상자 소년 E3 보호자 F3

면담 대상 소년(E3)은 현재 처분 받은 보호관찰이 처음이었으며, 2020년 1월부터 시작해 1, 2, 4호를 처분 받았고 면담 당시 출석지도 2회, 출장지도 1회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소년의 경우 2월 대구 사태 이후 3-4월에는 출석지도 없이 전화로 대체됐으나, 이후 해당 보호관찰소의 지역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6-7월경에는 한 달에 1회씩 출석지도를 했고, 8월부터는 2회 모두 대면 출석지도를 했다고 답했다. 8월부터는 출장지도도 재개되는 등 비교적 원활히 보호관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출석지도 시 상담 시간이 기존 20분 정도에서 5분 정도로 간결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쉽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전화가 편하기는 하지만 전화로만 지도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서 출석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수강으로는 1월에 개인상담 10시간을 명령받고 2월에 대면으로 6시간을 수행했지만, 나머지 4시간은 이후에 화상통화로 진행됐다고 한다. 소년은 매체를 통해 정신과 상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이나, 대면 상담의 경우 심리분석 등 프로그램 위주의 상담을 경험한 후 화상통화로 제한적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은 듯 했다. 지역에 확진자가 없어서 3월에 전국적으로 등교를 중지했을 때 이외에는 계속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여유시간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년(E3)의 보호자(F3)은 어머니로, 소년의 보호관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보호관찰의 업무형태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사회전반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보호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의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년이 상담을 할 때 함께 상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 상담이나 지도 내용을 부모에게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 19 이후의 보호관찰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시에 보호관찰이 19세 미만을 무조건 가정에 맡기기보다 가족단위의 상담이나 교육 같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 면담대상자 소년 E4 보호자 F4

소년(E4)은 2019년 4호 처분을 받은 후 위반으로 인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가 5월에 다시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을 받았다. 코로나 19 이전 수강명령 후 1-2달 사이에 교육을 받는데, 소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다소 늦은 8월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보다는 빠른 일정으로 지역 내 코로나 19 상황이 극심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로 보인다. 교육을 받을 때는 10명 정도의 인원이 각자 시간차를 두고 교육을 받았고, 강사도 외부강사가 수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은 개인적으로 수강 당시 마스크 착용이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의 코로나 19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출석지도는 모두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외부 봉사활동을 할 수 없어서 내부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보호관찰에 있어 코로나 19 이후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관찰소 출석 시 건물에서 발열체크하고 문진표 작성하는 것, 자리마다 칸막이가 생기고 손소독제가 구비된 것을 꼽았다. 마스크 관련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듯 했고, 현재 보호관찰의 수준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보호자(F4)는 소년(E4)의 어머니로, 코로나 19로 인해 보호관찰이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었다. 단지 시설 면에서 대화하는 공간 등에 가림막 생기고,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소년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지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일정은 잘 모르고 있었으나, 코로나 19 때문에 대면 출석지도가 아닌 전화 지도를 했던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소년이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의 공유를 보호자와 상세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는 보호자는 직장이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과 친구들이 보호자 없이 집에서 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3) 면담대상자 소년 E5 보호자 F5

소년(E5)은 두 번째 보호관찰로 2020년 2월에 1, 2, 3, 4호 처분을 받았다. 2호 처분으로는 꿈키움센터 수강 40시간을 받았고, 지난 7월경 5일간 수강을 했다. 당시 코로나 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5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띄어 앉기 등의 기본수칙을 지켜서 한 것으로 보인다. 봉사는 8월경에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1회 했고,

11월 중순경 보호관찰소 내에서 단순작업을 해서 물건을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모두 코로나 19로 인해 5-7명 정도씩 소수의 인원이 했다고 응답했다. 출석지도는 보호관찰소로 오기도 하고 전화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시기 등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화지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항상 전화로 했으면 하지만 출석지도가 확실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출석을 거절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외 소년이 코로나 19 전후 보호관찰소의 변화로 인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였고, 개인적으로는 비염이 있어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보호자(F5)는 소년(E5)의 어머니로, 출석지도나 수강·봉사활동이 있을 때 마다 자차로 소년을 왕복시켜 주는 등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전후로 해서 보호자에게 방역수칙이나 안내 등 연락도 자주 왔으나, 보호자가 먼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기도 했다고 한다. 출석 시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우려되어 데려다 주고 있다고 답했다.

보호자교육은 3-4월경 8시간을 받았는데, 코로나 19가 아주 심각해지기 전이어서 지연 없이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년의 수강과 봉사 집행은 계속 지연됐는데, 소년은 순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마쳤으면 하는데 본인은 전혀 의지가 없어서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시국은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렵지만 소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외출이 줄어들어서 다소 수월한 부분이 있다고도 전했다.

다. 대구 소재 보호관찰소

대구 소재 보호관찰소의 면담대상자 소년(E6)은 현재 처분이 두 번째 처분으로, 첫 처분에서는 1, 2, 4호를, 현재 처분인 두 번째 처분에서는 5, 6호를 받아 기관 6개월 위탁과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면담 시 소년은 기관 위탁을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마친 후 당시 한 달에 3-4회의 출석지도를 하고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 소년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으로 2월에 코로나 19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을 당시에 시설 내에 있었던 이유때문인지 본인의 개별

성향인지 부정확하나 방역과 관련해서 경각심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였다. 10대는 감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응답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장을 닫는다고 하면 닫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놀고 있고 이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듯 했다.

전반적으로 소년은 보호관찰 자체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본인을 감시하고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상당한 반감이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보호관찰의 형태나 방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코로나로 인해 자유시간이 많아서 심심하고 아르바이트가 구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센터에서는 소년원과 유사한 변화가 있었으며, 소년은 다른 활동은 거의 못하고 검정고시 준비만 해야 하는 것이 지루하고 불만이었다고 덧붙였다.

보호자(F6)는 소년(E6)의 할머니로, 소년이 부모 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애뜻함이 큰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는 소년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나 처분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는 소년의 입장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는 소년이 코로나 19가 무서워 멀리 놀러 다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소년이 보호자에게 스스로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며 보호자를 안심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못하고 있는 것과 실습을 못해 자격증을 못 따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소년이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않는 편인 것으로 보이나, 야간전화에 대해서는 소년이 밤에 집에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마스크 지급도 해주고, 시설도 방역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방역과 관련한 걱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3. 소결

시설 내에서 소년을 보호하는 소년원과는 다르게 보호관찰소는 사회 내에 있는 소년들의 처분을 집행하고 보호관찰 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 소년들의 활동 범위가 다른 만큼 코로나 19로 인한 대응과 문제점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보호관

찰소 직원과 대상 소년, 소년의 보호자를 면담하였다.

보호관찰관 직원의 경우 담당 업무에 따라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와 대응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시설과 방역 면에 있어서는 타 기관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체온 측정계 등 설비를 갖추었으나, 수강과 봉사활동 등의 집행과 보호관찰 업무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수강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강이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이 중단되고 지연되면서 미집행이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대면지도가 기본인 보호관찰 업무에 있어서는 출석지도와 출장지도 등 대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전화지도에 그치는 한계에 직면했다. 결정전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 원호 등 기존에 대면으로 수행했던 업무들을 모두 비대면화 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등의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이 담당업무인 일부 직원은 업무가 과중되고, 반면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일부 직원은 실질적으로 업무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되면서 업무 강도에서의 격차도 발생하였다.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 및 문제점으로 인해 직원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특성에서 의무적으로 재택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실무의 한계에 있어서 시급하게 대응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본부의 일괄적 지침에 대한 지역별 고려와 상황에 따른 지침과 매뉴얼 마련을 꼽았다. 감염병 비상 상황 시 집행유예 등의 제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설 적으로 방역을 갖출 수 있는 공간적 대비로 상시 방역에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도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 소년과 보호자는 대체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전후의 변화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이 전화지도로 일부 대체된 것에 대해 편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했으나, 소년 본인들도 전화보다는 대면이 보호관찰의 효과가 낫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강이나 봉사활동은 지역의 코로나 19 수준에 따라 집행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기간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는 소년의 보호관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다수의 보호자가 코로나 19로 보호관찰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소년이 보호관찰을 받는데 있어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는 사항은 없었다. 또한, 지난 2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대구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과 보호자 면담에 의하면 일시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호자의 우려는 있었으나, 그 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3절 | 분류심사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코로나 19 전후의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대응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년보호기관 중 분류심사원의 경우에도 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별개의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분류심사원 직원(보호주사보, 경력 15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다음은 면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업무변화

코로나 19로 인한 분류심사원의 주요 업무 변화는 보호관찰소·소년원과 마찬가지로 방역이었다. 시설 전체 소독은 물론이고, 전 직원과 소년이 KF 94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의 위생을 강화하고 위탁소년은 격리수용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탁소년의 경우 입원 시 바로 분리해야하지만 이를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격리가 가능한 공간이 있지만, 매우 소수만 가능하고 격리한다고 해도 호송버스를 함께 타는 등 실질적으로 모두 접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위탁소년들은 신입 반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본 반으로 이동하는데, 사회에 있다가 바로 위탁 온 소년들은 최소 일주일을 개별 방에서 보내면서 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탁받는 소년들의 수가 일부 감소하였지만 극적인 수준은 아니며, 여전히 시설과

공간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들의 심리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보다는 위탁 자체에 대한 어려움의 수준이 더욱 크다.

면회는 소년원과 동일한 형식인 폐쇄형으로 취식 불가하며 제한적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제한되면서 종교 활동과 기타 프로그램들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상담조사는 칸막이 설치 후 접촉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자와는 전화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선제적으로 코로나 19와 관련해 보고하면서 대처하고 있으며, 심사원 직원 역시 스스로가 전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응 한계와 시사점

분류심사원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상황이었다. 일주일 7일 중 6일 동안 매일 호송이 오게 되는데 사회에서 생활하던 소년들이 바로 시설로 들어오게 되면서 방역 자체가 어렵다.

한 소년이 구인이 돼서 저희 직원이 경찰서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열이 있었어요. 소년이 열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결정) 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열이 있는 상태로 어디에 다녀왔는지도 모르고, 소년이 들어갈 방도 없고, 어딜 보낼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생활지도계나 의무과에서 데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들어갔다가 소년이란 접촉했는데 만약에라도 소년이 코로나면 안 되니까 다른 직원들이나 소년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현장에서는 체온측정하고, 그간의 동선을 다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생활실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언제나 혹시 모르는 위험부담이 있고,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소년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선제적으로 분류심사원에 오기 전 코로나 19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해야 실질적으로 안전한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로써는 분류심사원이 선제적인

검증기관인 상태다. 분류심사원을 거쳐 서울·안양소년원에 위탁되는 경우 소년원들은 코로나 19로부터 매우 안전한 환경이 되나, 분류심사원 자체에서는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류심사원에서는 올해 초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소년들에 대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로 요청을 했으나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사원에서는 여러 기관과 마스크 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마스크를 소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시 모두가 시급한 상황이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초기에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마스크를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 본부 등에서도 마스크를 지급받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필수적인 물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이 높았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류심사원에서는 코로나 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구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메르스 때 구비된 방호복 20벌과 올해 초 마스크 대란 이후 6개월 이상의 마스크 분량을 보유하는 등 비상시를 대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상시가 되면 코호트 격리 이외에 방법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 4 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각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박선영·정지혜·김보람

제4장

각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제1절 | 미국

1. 미국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독자적인 소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의 연령 및 처분 등에 대해 통일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 다만, “국가 소년법원과 가정법원 판사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내의 연구기관인 “소년사법을 위한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에서 “소년법원 통계(Juvenile Court Statistics)”를 발행한다. “소년법원 통계”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 발행한 자료로서 2018년 소년법원 통계자료이다.¹²⁾ 소년법원 통계(Juvenile Court Statistics) 보고서를 살펴보면 형사법원으로 이송(juvenile transfer)한 사건 외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원에서 내리는 처분(disposition)의 종류는 시설 내 처분과 사회 내 처분으로 구분된다. 시설 내 처분의 경우 구금시설(residential facility)에 수용되는 것으로 구금센터(detention center), 쉼터(shelter), 입소 및 진단센터(reception/diagnostic center), 그룹홈(group home), 랜치 및 야영훈련소(ranch/widerness), 훈련학교(training school), 주거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 등 7개 유형의 시설이 있다.¹³⁾ 사회 내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probation),

12) Hockenberry, S., and Puzzanchera, C., Juvenile Court Statistics, 2018(<https://ojdp.ojp.gov/library/publications/juvenile-court-statistics-2018>, 최종검색 : 2020.12.28).

13) Hockenberry, S., and Sladky, A., Juvenile Justice Statistics, National Report Series Bulletin: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 2016: Selected Findings(<https://o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pubs/251785.pdf>, 최종검색 : 2020.12.28).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배상(restitution), 벌금(fines), 외부 기관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회부(referral) 등으로 나누어진다.¹⁴⁾

미국은 주마다 다양하게 소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분리된 기관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성인과 소년을 모두 관할하는 기관 내의 한 부서로 소년사법 기관이 있기도 하지만 소년사법만을 전담으로 하는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성인 사범을 다루는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와 별개로 독립적인 소년사법 부(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가 운영되고 있다. 본 소년사법 부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¹⁵⁾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가. 시설 내 처우

1994년 설립된 기관인 “소년사법행정가 협의회(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CJCA)는¹⁶⁾ 50개 주와 대도시 소년 구금시설 장으로 구성되며 소년 구금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 본 기관이 2020년 5월에 개최한 “지역과 국가 코로나 19 청취 세션(regional and national COVID-19 listening sessions)”에는 37개 주가 참여하여 코로나 19에 대한 소년시설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 내용을 이슈 브리프로 발표하였다.¹⁷⁾ 본 브리프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가 소년 구금시설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주된 변화로 제시된 것은 시설 내 소년사범 숫자의 감소, 조기석방 추진, 방문과 교육의 변화, 직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다.¹⁸⁾

14)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Issue Brief COVID-19 Practice, Policy & Emergency Protocols in State Juvenile Facilities(<https://jjs.utah.gov/wp-content/uploads/2020/06/COVID-19-Issue-Brief-.pdf>, 최종검색 : 2020.12.28).

15)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홈페이지(<http://www.djj.state.fl.us/>, 최종검색 : 2020.12.29).

16) Youth.GOV 홈페이지, Council of Juvenile Corrections Administrators(<https://youth.gov/shared-resources/council-juvenile-corrections-administrators>, 최종검색 : 2020.12.29).

17)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첫째, 시설 내 소년사범이 감소하였다.¹⁹⁾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일부 주에서 법의 재정과 구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선별기준으로 인해 구금이 감소했다. 따라서 구금의 감소는 기관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인원을 조절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선별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입소 선별 프로토콜을 수정해서 신규 입소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실시했다. 2020년 3월에는 엄격한 절차로 인해 신규 입소 인원이 크게 감소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신규 유입을 중단하고 다른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4월 초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시적으로 입소를 유예시켰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과 가석방자의 조항 준수 위반자에 대해 구금시설로 보내는 관행을 멈췄으며 경찰도 체포가 아닌 경고와 훈방을 활용하였다.²⁰⁾

둘째, 조기석방을 추진하고 석방계획을 긴급히 수립하였다. ²¹⁾ 많은 단체들 (예를 들어 미 소아과 의사 아카데미, 전직 소년사범 행정가로 구성된 Youth Corrections Leaders, Council of Juvenile Corrections Administrators, 전.현직 검사들인 Fair and Just Prosecution, Physicians for Criminal Justice Reform,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등)은 소년사범들의 조기 석방을 요구하였고 콜로라도나 미시건, 메릴랜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은 주지사가 저위험 군 소년들을 석방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서 저위험군 소년사범들이 조기 석방되었다. 또한 석방 권한이 없는 기관들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원이 석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석방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출소계획이 수립된 비폭력, 저위험군 소년사범들을 석방했다. 석방계획은 출원 후에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메릴랜드 고등법원은 가이드스를 발행하여 지역 판사들이 소년사범 기관들과 협력하여 석방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건강, 대중에 대한 위험, 시설이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지를 진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이 매 14일 마다 심리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²²⁾

18)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19)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0)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1)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2)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셋째, 방문(면회)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²³⁾ 2020년 4월초에 50개 모든 주가 소년 시설에서 임시로 대면 방문을 중지시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면회를 실시했으며, 가족 및 서비스 공급자와의 연락을 위해 무료 전화사용을 확대하였다. 뉴 햄프셔 주에서는 200대의 휴대전화가 가족들에게 지급되어 소년사범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주에서는 변호사나 성직자, 서비스 공급업자와의 대면 만남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비대면 온라인 만남이 권고되었다.²⁴⁾

넷째,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되었다. ²⁵⁾소규모 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교실수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많은 시설에서는 각자 방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과 온라인 자료들이 제공되었다. 기타 프로그램 역시 내부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실시되었지만, 외부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프로그램은 방문이 차단되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²⁶⁾

다섯째, 직원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생겼다. 많은 시설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확진자가 발생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격리되는 등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²⁷⁾

나.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에 비해 사회 내 처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 부서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보호관찰소가 일부만 운영을 하며 보호관찰관은 재택근무를 하고, 대면접촉 방식의 관리감독은 지양되고, 전화·화상통화 등이 주된 방법으로 대체되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²⁸⁾

23)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4)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5)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6)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7)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op., cit.

28)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Working to Keep Children Safe during COVID-19 Pandemic(<https://sfgov.org/juvprobation/article/working-keep-children-safe-during->

코로나 19로 인해 구금을 줄이기 위해 경찰은 체포 대신, 소환과 경고를 더 활용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금시설 신규 유입이 중단되었고, 조기석방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즉, 각 지방은 비행 청소년들의 행동을 구금 없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호관찰소는 재택근무하면서 필수 직원만 출근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방문, 학교 출석, 정신건강 상담 출석, 마약치료와 테스트, 기타 지역사회 지원 등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행되고 있다. 정신건강 상담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심각한 대상자는 대면이 필요하고 비행청소년의 30~60%가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는데 온라인 교육이 이러한 학습장애 청소년에게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²⁹⁾

보호관찰관들은 코로나 19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린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대상자들을 만나는 “가두 체크인(curbside check-ins)” 전략을 펼치고 있다.³⁰⁾ 사실상 뉴욕시 보호관찰국은 이미 “책상 치우기(remove the desk)” 캠페인을 통해 사무실이 아닌 대상자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만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다. 보호관찰관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화통화와 치료사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아동복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의 Hennepin 카운티에서는 사회 내 처우에 대한 벌금과 비용을 유예하여 취약가정이 더 취약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도록 지도하였다.³¹⁾ 아울러 보호관찰 조항 위반자들에 대한 시설 유입을 막기 위해 미시건 주지사는 행정명령으로 보호관찰 조항 위반으로 구금시설에 가는 조치를 유예했으며 뉴욕과 유타 주도 보호관찰 조항 위반에 대한 구금을 제한했다. 또한 준수조항들을 수정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보호관찰관들은 재택 구금을 위반했을 때 조항 위반으로 철회를 하기 보다는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조항 위반으로 구금 시설에 보내기 보다는 조항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³²⁾

covid-19-pandemic, 최종검색 : 2020.12.29).

29) Mooney, E., and Bala, N., Youth Probation in the Time of COVID-19(<https://www.rstreet.org/wp-content/uploads/2020/06/No.-198-Youth-Probation-in-Time-of-Covid.pdf>, 최종검색 : 2020.12.29.).

30) Mooney, E., and Bala, N, op., cit.

31) Mooney, E., and Bala, N, op., cit.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가. 질병통제와 예방센터 교정시설 가이드스

미국 질병통제와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 임시 관리 가이드스(Interim Guidance on Manage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Correctional and Detention Facilities)”를 발행했다.³²⁾ 최초의 가이드스는 2020년 3월 30일에 발행되었으며 이후 7월 14일, 10월 7일을 거쳐 10월 27일에 가장 최근 버전이 제시되었다.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가이드스는 교정시설을 포함하여 작업장, 학교, 대학,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지역 사회기관, 집단생활시설, 은퇴한 지역사회, 홈리스, 부족 지역사회 등이다.³⁴⁾

가이드스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코로나 19를 위한 운영과 소통 준비, 강화된 청소/소독과 위생 관행, 사회적 거리 유지 전략, 방문자로부터의 전염 제한 전략, 개인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구축과 장비부족 시 대안 등을 포함한 감염통제, 수용자, 직원, 방문자를 위한 구두 스크리닝과 체온 점검 프로토콜, SARS-CoV-2을 위한 진단검사 고려, 코로나 19 의심 증상과 확진자에 대한 의료적 격리, 밀접접촉자 격리, 코로나 19 의심자에 대한 건강평가, 코로나 19 의심자와 확진자에 대한 의료 처우, 심각한 병으로 인해 코로나 19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해 상세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³⁵⁾

가이드스는 운영상 준비(Operational Preparedness), 예방(Prevention), 코로나 19 관리(Management) 등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운영상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1) 정보 공유할 것 (지역 공중보건 기관, 수용자/가족/직원/관련자/ 다른 교정시설), (2) 경찰이나 법원과 협의하여 구금인원 줄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고, 구금대안

32) Mooney, E., and Bala, N, op., cit.

33)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Correctional&Detention Facilities(<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 최종검색 : 2020.12.29).

34)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Correctional&Detention Facilities(<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 최종검색 : 2020.12.29).

35)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Correctional&Detention Facilities(<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 최종검색 : 2020.12.29).

전략을 모색할 것, (3)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개인방역물품,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실시, (4) 액체형 비누를 수형자에게 지급, 바 형태만 가능하다면 개별 지급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1)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있으면 격리, (2) 기관 운영과 방문 변화를 공지, (3) 의료적 이유와 공간 확보를 위한 이유 이외에는 기관 간 수용자 이송 제한, (4) 동일한 유닛에 동일한 직원을 배치하고 이동을 최소화, (5) 외부통근 등 시설 안과 밖을 이동하는 프로그램 중단, (6)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합법적 대안 찾기, (7) 직원들이 퇴근 전에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함, (8) 하루에 여러 번 시설 소독과 방역작업 실시, (9) 청소 인력 늘릴 것(수형자 활용), (10) 천 마스크 착용, (11) 개인방역 물품을 지속적으로 비치, (12) 손 소독제 제공, (13) 신규 입소자에 대한 건강 선별 실시, (14)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6피트 간격), (15) 의료 처우실을 생활실 근처에 두어서 이동 최소화, (16) 그룹 활동이 중단되었다면 수형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대안을 찾을 것, (17) 수형자에게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 (18) 직원들은 증상 있으면 재택근무와 보건소 찾아서 테스트 받기, (19) 방문객(자봉사자, 견학) 등 제한, (20) 잠재적 방문자에게 방문하지 말 것을 공지, (21)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스크리닝, 손 소독제 사용, (22) 비대면 방문 권고(임시로 무료 전화사용, 정신건강을 위해 전화사용 확대), (23) 면회는 정신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대면 면회를 중단하면 화상접견 등의 대안을 반드시 제시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리와 관련해서는 (1) 증세가 발현된 사람을 의료적으로 격리하고 진단조사 실시, (2) 지역 건강국과 협력, (3) 시설 간 이송 금지, (4) 가능한 모든 신입자는 14일간 격리, (5) 신입 자에 대한 진단검사 고려, (6) 다른 유닛에 거주자들과의 교류 최소화, (7) 수용자가 소 내 일을 한다면 단일 유닛에서만 일하기, (8) 출소 전 14일 격리를 고려할 것, (9) 출소 전 진단검사 고려할 것, (10) 모든 출소자에 대한 증상 점검 실시, (11) 모든 출소자에게 예방 정보, 마스크, 손소독제 제공할 것, (12) 가능하다면 출소자 주거 지원에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제공, (13) 증세 있는 수형자를 즉시 의료적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 (14) 확진자에 대한 격리와 치료 제공, 필요하다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 (15) 의료적 격리와 징벌적 독방구금(solitary confinement)을 구별할 것, (16) 격리된 자에게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TV, 라디오, 독서, 개인물품을 사용토록 할 것, (17) 전화사용 확대 (18) 격리 목적에

대한 설명 등에 대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³⁶⁾

나.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 가이드런스

소년사법과 비행예방 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5월 29일에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국 코로나 19 가이드런스: 주 구금시설 (OJJDP Covid-19 Guidance: State Juvenile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을 발표하였다.³⁷⁾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판 전 구금시설인 Juvenile Detention Center와 시설 내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들이 코로나 19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각 시설에서는 질병통제와 예방센터(CDC)의 규정과 명령에 따라 대안을 마련했으며, 수용된 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언론에서 요청하는 조기석방에 대한 압력을 의식한 탓인지 집에서 제대로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라면 오히려 구금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런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⁸⁾

36)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Correctional&Detention Facilities(<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 최종검색 : 2020.12.29).

37)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COVID-19 Guidance : State Juvenile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media/document/OJJDP-COVID-19-Guidance-for-States.pdf>, 최종검색 : 2020.12.29).

38)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COVID-19 Guidance : State Juvenile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media/document/OJJDP-COVID-19-Guidance-for-States.pdf>, 최종검색 : 2020.12.29).

▶▶ <표 4-1> 소년사범과 비행예방국 가이드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동안 구금시설에 있는 소년사범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주는 반드시 시설 내에서의 건강위험과 가속화된 석방 스케줄에 의해 제기되는 잠재적인 위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서, 확산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 내에서의 바이러스의 만연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0년 5월 초에 소년 구금시설 내 감염자는 229명의 청소년, 352명의 직원이 확인되었다(Sentencing Project의 통계 인용) • 전국의 주에서 고르게 발견된 것은 아니며, 평균적으로는 각 주마다 5명의 소년사범과 7명의 직원에 해당되는 숫자이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년사범 시스템은 대중과 소년사범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소년 구금시설에서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코로나 발생 사례로 인해 소년사범을 대규모로 지역사회로 석방할 수는 없다. 이미 대부분의 주에서 전략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코로나 19 위기 감소 전략이 그들의 법원시스템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입장이다. • 연방 질병통제와 예방센터의 가이드스, 주와 지방 규정(regulations), 긴급명령(emergency orders) 등이 이미 각 소년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다. 강화된 공중보건에서부터 가족방문/정신과 행동건강 서비스/교육서비스 등을 웹기반으로 실시하는 것까지, 전국의 각 시설들은 코로나 19에 실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과 직원들의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을 잘 설명하고 있다. • 각 주는 코로나 19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소년사범 운영을 잘 대응하고 있다. 주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주길 권고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은 돌봄과 감독이 늘 필요하다.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전형적으로 고 위험군이며 니즈가 많으며, 정신과 행동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감독을 요한다. 보호관찰과 가족방에서 접촉방식을 줄이고 온라인 감독을 하는 주들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수준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 밖에서의 정신과 행동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서비스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고 지역사회에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다. 2) 소년 구금시설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년사범들을 지역의 건강서비스 제공자에게 연결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로 석방시키는 것은 서비스 사용자(비행청소년들)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통수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결국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금시설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보건을 준수하며, 코로나 19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봉쇄조치 동안에 가족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 학교/직장/레저의 붕괴를 고려한다면, 각 주들은 가정 내의 고조된 긴장감과 좌절들을 예상해야 한다. 고위험군, 니즈가 많은 소년사범들을 지역사회 내의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하며 가족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지고 결국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청소년들은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며, 성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잘 정의되고 구조화된 계획이 필요하다. 각 주는 그들이 석방시키고자 선택한 각 개별 소년사범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4) 미 법령 34 USC §§ 11133(a)(11), (12), (13), and (15), 그리고 Title II (지위위반자의 탈시설화, 성인 구치소 수용 금지, 완전한 분리, 인종적/민족적 불평등 금지)등은 Title II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사항들이다. <p>※ 이 문서처럼 가이드스 문서는 만약에 가이드스가 법령에 의해 승인되거나 계약/보조금/협력각서에 통합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은 없다.</p>

다. 매사추세츠 주 청소년서비스 부 가이드스³⁹⁾

매사추세츠 주의 소년사범 기관인 청소년서비스 부(Department of Youth Service)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과 보호관찰 운영에 관한 가이드스를 개발하였다.⁴⁰⁾ 전체적인 사안들을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가이드스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방역 물품, 교통수단, 의료적 격리, 스크리닝 질문, 화상의료 처우 등 세부적인 내용을 각각의 가이드스가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시설운영과 방문, 보호관찰에 관한 가이드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¹⁾

▶▶▶ <표 4-2> 매사추세츠 주 청소년서비스 부 가이드스

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 방문객, 소년에 대한 선별작업 실시: 체온 측정, 증상 진단, 지난 14일간 확진자 접촉 확인 • 방역활동 : 시설 내 모든 곳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방역활동 실시, 교실 사용 후 소독 • 개인방역 : 손 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모임 제한 : 250명 이상 모임 금지 • 활동 취소 : 활동의 지속과 취소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소와 의논 • 직원교육 : 방역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시키기 • 마스크착용 :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의심증상자 : 보건소 연락해서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 직원 의심증상자 : 즉시 현장을 떠나서 보건소에 연락한다. • 응급준비계획(Emergency Preparedness Plan)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 질병통제와 예방 센터 가이드스 참조하기
방문가이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참여하는 활동과 집단 대면 면회는 모두 금지하지만, 소규모 가족 면회와 화상면회를 지속한다. • 시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반응과 자가 격리 중인 소년은 대면면회 금지 - 감독을 위한 방문은 허락 된다 :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야외에서 - 실내에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장소를 지정하고, 환기를 시킨다. - 두 명의 가족만이 한 번에 방문가능하다.

39) Massachusett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홈페이지(<https://www.mass.gov/orgs/department-of-youth-services>, 최종검색 : 2020.12.29).

40) Massachusett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홈페이지(<https://www.mass.gov/orgs/department-of-youth-services>, 최종검색 : 2020.12.29).

41) Massachusett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홈페이지(<https://www.mass.gov/orgs/department-of-youth-services>, 최종검색 : 2020.12.29).

- 청소년이 자녀가 있다면 방문이 허락된다.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면회는 미리 신청되고 적절한 방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 방문객들은 질병통제청의 방역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
 - 방문은 언제든지 정책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 시설은 한 곳으로만 입출입이 가능하다.
 - 방문객은 2세 이상이며 방문 시간 동안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첫 방문에서는 얼굴 가리는 마스크를 준다.
 - 간략한 신체접촉은 허락되지만, 손 소독제 사용하고 지나치게 밀접접촉은 금한다.
 - 방문 후 장소에 대한 방역 실시
- PASS
 - 해당 소년이 PASS가 가능한지 건강을 진단한다.
 - 집으로 가기 전에 보호자와 부모는 집에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집으로 가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손 소독을 한다.
 - PASS가 끝나고 시설로 돌아온 청소년들은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의료 직원을 만나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4일간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을 잘 씻고, 사용한 장소는 소독을 해야 한다.

보호관찰 가이드선스

- 지역사회 방문
 - 대면접촉을 재개한다.
 - 고위험군 청소년, 대면접촉에 대한 필요를 표명한 청소년
 - 전자감독 게시, 감독 게시 등을 위해서는 대면접촉이 필요하다.
 - 공원, 레스토랑, 몰, 사회적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장소
- 가정방문
 - 가정방문을 조심스럽게 게시할 수 있다.
 - 가정방문 전에 보건국에서 요청한 스크린 설문을 완료한다.
 - 방문 전에 청소년과 가족에게 접촉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
 - 개인 보호 장비는 직원들을 위해 제공된다.
 - 사례 관리자가 최초로 가정을 방문했을 때 DYS Covid 19 Care Package를 전달한다.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티슈, 교육자료)
 - 가정방문 동안에 청소년과 가족이 개인방역 장비를 사용할 것을 고지한다.
 - 만약 청소년과 가족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을 거부하면 가정방문을 끝낸다.
 - 최초 가정의 경우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가정방문을 결합한다.
 - 가정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도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집 앞에서 만나기, 뒷마당에서 만나기 등
- PASS
 - 구급시설에서 지역사회 내로 나오는 사례이며 7월 10일부터 재개한다.
 - 집으로 돌아올 때, 코로나 증상이 없으며 돌볼 사람이 있는지 확인
 - 집으로 돌아올 때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철저
 - 인계 작업에서 가족들과 열린 공간에서 만나기
- 시설 방문
 - 출소할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재개한다.

- 교통제공
 - 시설에서 출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감독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차로 청소년들을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주정부 차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한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이동
- 개인 방역 물품
 - 모든 보호관찰관에게 주어진다.
 -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수술용 가운, 손 소독제, 소독 타월, 라이졸스프레이, 얼굴 보호 고글, 시트커버
- 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에서 활동과 대상자를 만날 수는 없다.
 - 중앙 보호관찰소에서만 필요한 경우 대상자들이 올 수 있다.
- 화상 회의
 - 보호관찰관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갖추고 직원회의, 청소년, 가족과 소통한다.

4. 대응 현황

가. 시설 내 처우

1) 플로리다 소년사법 부(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플로리다 주의 경우에는 성인에 대한 기관인 교정과 교정교화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와 별도로 독립된 소년사법 부(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가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모두 관할하고 있다.⁴²⁾ 코로나 19로 인한 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의 "Press Release"란을 통해 대응현황과 발생 현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 관련한 첫 게시물이 올라온 2020년 3월 17일 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 24일까지 3~5일 간격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특히 첫 확진자가 발생한 3월 29일 이후부터는 직원 및 소년의 확진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19 주요 대응은 아래 표와 같다.⁴³⁾

42)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홈페이지(<http://www.djj.state.fl.us/>, 최종검색 : 2020.12.29).

43)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Press Releases, Update from the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Regarding COVID-19(<http://www.djj.state.fl.us/news/press-releases>, 최종 검색 : 2020.12.29).

▶▶ <표 4-3> 플로리다 소년사법부 코로나 19 주요 대응

날짜	내용
2020. 0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 부서 내의 Office of Health Services가 COVID-19 가이드스 개발 했다. 질병본부 기준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진단과 돌봄, 보건위생 등을 포함 • 구금 선별을 위한 선별 프로토콜과 절차를 수정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프로토콜을 포함시켰다. 수정된 프로토콜을 경찰과 공유한다. • 방문객 선별 툴을 개발해서 모든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 부모와 보호자에게 공지를 보내서 새로운 방문 선별 조건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 시설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선별 절차를 제시하였다. • 직원들의 불필요한 외부 이동을 금지시킴 • 자원봉사자, 개인적 방문은 금지되고 운영 관련된 방문만 가능 • 방문금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의료 인력과 변호사는 허락된다.
2020. 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는 긴급명령(emergency order)를 내려서 모든 시설에 대해 4월 15일까지 방문금지 • 시설 수용된 청소년 보호와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 청소년과 가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료인, 변호사, 교육서비스 제공자는 허락된다. • 가족들은 방문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다.
2020. 0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동일한 조치 • 팬데믹 계획(Pandemic plans)이 개발되고 모든 시설에 배포
2020. 0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동일한 조치 • 3월 27일 직원 양성반응. 관리자 테스트 중 • 매일 위생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활동 • 방문금지, 팬데믹 계획, 가이드스 배포 • 각 수용시설 별로 계획 수립. 질병본부 가이드라인 준수
2020. 0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동일한 조치 • 확진자 표로 제시하기 시작 : 대중과 관련자들에게 시설에서의 코로나 발생 현황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겠다. •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테스트 받은 자는 보호자와 부모에게도 통지가 간다. • 카운티 보건국과 각 시설이 지정한 건강관리 부서는 질병통제와 예방 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언제 청소년이 테스트를 받아야 할지 결정한다. • 소년들은 증상에 대해 모니터링 되고 증상이 있으며 격리되고, 각 시설의 계약된 건강관리부서에 연락된다. • 신상보호를 위해 이름과 직위는 공개되지 않는다. • 구금센터 입소 청소년은 증상 관련한 진단 서식 작성 • 구금센터를 떠나기 전에 선별을 한 후에 시설에 도착해서 다시 선별작업 실시 • 직원들은 출근 시 매일 점검 • 모든 시설은 청결과 보건 계획을 매일 이행한다.
2020. 0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동일한 조치 • 4월 30일 까지 방문금지 연장. 대안 방법 제공 • 변호사, 교육, 의료진은 가능
2020. 0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동일한 조치 • 5월 15일 까지 방문금지 : 변호인, 의료인, 교육가 허락
2020. 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의 소년이 발생한 단일기관 최고인 Okeechobee Youth Development Center에 전수 테스트 실시
2020.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763명: 직원 397명, 청소년 366명

2) 텍사스 소년사법 부(Juvenile Justice Department)

플로리다와 동일하게 독립된 소년사법 부로 운영되는 텍사스 소년사법부(Juvenile Justice Department)는 홈페이지 전면에 본 부서가 코로나 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⁴⁴⁾ 우선 소년사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명시하며 텍사스 보건국과 지역 건강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플로리다와 동일하게 시설 내 확진자 숫자와 확진된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숫자와 함께 코로나 19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호조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 <표 4-4> 텍사스 소년사법부 코로나 19 주요 대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구에서 체온측정과 건강 선별을 실시한다. 또한 신규 입소자는 지역 보호관찰 부서에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며 새롭게 도착한 청소년들은 건강에 관한 평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손 씻기 : 시설 전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곳곳에 설치했다. 자주 손을 씻도록 한다. • 마스크 : 시설의 모든 직원들에게 마스크가 주어졌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소규모 그룹 : 시설 내에서는 최대한 소규모여야 하며 사회적인 교제 외에는 가능한 거리를 유지한다. • 자원봉사자와 방문객 :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대면방문이 중지되었다. 화상통화가 제공된다. 성직자와 변호사는 대면방문이 허락되지만 화상으로 만나는 것을 권고한다. • 입소 : 4월 14일 텍사스 소년사법부는 일시적으로 신규 입소를 중단했다. 5월 이후로는 적은 인원만이 입소한다. • 의료적 격리와 코로나 19 진단 : 각 시설은 의료격리 공간을 마련했으며 증상은 격리되고 테스트를 받는다. 또한 코로나 진단검사는 입소 시, 확진자와 밀착접촉 시, 의료팀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받는다. • 방역 : 주기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한다. • 교육 : 기숙사에서 소규모로 교육이 제공된다. 10명 이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IT 기술을 접목한 교육을 개발 중이다. • 레크리에이션 : 활동이 없으면 좌절과 우울감이 생긴다. 가능한 열린 공간에서 신체활동과 구조화된 활동을 제공할 것이다.

44)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https://www.tjjd.texas.gov/>, 검색일: 2020.11.14.).

45)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 COVID-19 Response, TJJJ Response to COVID-19 (<https://www.tjjd.texas.gov/index.php/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나. 사회 내 처우

1) 샌프란시스코 보호관찰소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소년보호관찰 부(Juvenile Probation Department)”는 Juvenile Hall 이라는 재판 전 구금 시설(detention center)과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⁴⁶⁾ 2020년 4월 30일에 발간한 “코로나 19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의 서비스(COVID-19 Services in San Francisco County)”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하의 11개 디스트릭트 보호관찰소에서 어떻게 보호관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를 제시하고 있다.⁴⁷⁾ 거의 모든 주에서 동일한 상황인데, 약물남용 치료와 테라피, 카운셀링, 프로그램 진행, 야간외출금지(curfew) 등 모든 활동들이 대면이 아닌 전화, 화상통화, 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후 2020년 7월 20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소년보호관찰부 코로나 19 대응(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Response)”을 발행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⁴⁸⁾

▶▶▶ <표 4-5> 샌프란시스코 보호관찰부 코로나 19 주요 대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관과 사회복지사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지속한다. • 보호관찰 건물은 필수적인 인원으로 제한된다. 보호관찰관이 순차로 재택근무를 한다. • 보호관찰 건물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중지되었고, 오리엔테이션은 동영상으로 실시한다. • 모든 직원들은 공중보건부가 요구하는 지침을 따른다.
1) 약속과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현장 방문과 보호관찰소 약속은 유예되고, 전화로 청소년과 가족과 소통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감독, 지원, check-ins 등이 전화로 지원된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소 방문은 허용된다(전자발찌 착용 등)
2) 청소년과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니즈를 가진 가족의 요구를 진단하기 위해서 보호관찰국은 보호관찰관과 사회복지사들이

46)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https://sfgov.org/juvprobation/>, 최종검색: 2020. 12.29).

47)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Services in San Francisco County (https://sfgov.org/juvprobation/sites/default/files/10_COVID-19%20Services%20in%20San%20Francisco%20County_May%208%202020.pdf, 최종검색 : 2020.12.29).

48)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Response(https://sfgov.org/juvprobation/sites/default/files/SFJPD_COVID19-Response_July%207%202020.pdf, 최종검색 : 2020.12.29).

내용
<p>그들과 접촉할 때 사용할 질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학교, 정신 및 신체건강, 쉼터, 아동복지, 기타 등. - 보호관찰국 홈페이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제시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예방절차들을 제공한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관한 정보가 모든 가정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p>3) 법원 출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 법원은 화상을 통해 심리를 개시하였다. <p>4) 마스크 착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국에서 제공되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개인적 용도가 아닌 보호관찰 소 내에서만 사용된다. <p>5) 청소와 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모든 표면은 소독제로 청소된다. - 손 소독제를 비치하였다.

2) 텍사스 보호관찰소

텍사스 Denton 카운티의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는 법원 소속으로 사회 내 처우와 재판 전 구금시설 운영을 맡고 있다.⁴⁹⁾ 본 부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사회 내 처우 업무에 대한 “코로나 19 대응계획 (Covid-19 Response Plan)”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⁵⁰⁾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나 화상을 통한 관리감독이 우선시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지침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사전 조율에 의해 대면 접촉이 가능하다. 집단 활동과 대안교육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⁵¹⁾

»» **〈표 4-6〉 텍사스 현장 보호관찰 서비스(Field Probation Services)**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보호관찰 서비스 사무실은 열려있지만 사전에 약속한 사람만 방문 가능하다. • 활동 참여자만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 전화나 기타 방법이 활용되지만, 대면 만남도 가능하다. • 직원과 방문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방문자는 자신의 마스크를 가져와야 한다.

49) Texas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https://www.dentoncounty.gov/504/Juvenile-Probation>, 최종검색: 2020.12.29.)

50) Texas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Response Plan

(<https://www.dentoncounty.gov/DocumentCenter/View/3014/COVID-19-Response-Plan-for-Juvenile-Probation---updated-July-2-2020-PDF?bidId=>, 최종검색 : 2020.12.29).

51) Texas, Denton County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Juvenile Probation

(<https://www.dentoncounty.gov/504/Juvenile-Probation>, 최종검색 : 2020.12.29).

내용

- 대면 만남 전에 보호관찰관은 전화, 화상통화 등의 온라인 방법을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결정한다.
- 이러한 조건들은 지역사회, 구금시설 등에서의 청소년과의 만남에서도 적용된다.
- 대면 만남 이전에 모든 참석자들이 코로나 19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인증 받아야 한다 : 체온과 증상에 대한 자가진단, 보호관찰소 출입 시 증상 검사
- 대면 만남 14일 이전에 여항을 갔는지의 여부도 반드시 고지하여서, 대면 만남 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던 집단 활동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 중단된다.
- 대안교육 :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5. 소결

코로나 19는 미국의 소년사범 기관 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가장 큰 타격과 우려는 시설 내 처우의 경우 가족 및 외부 프로그램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의 대면방문이 금지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면교육과 프로그램들의 제공이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일반 청소년에 비해 트라우마가 많고 정신적 문제, 학업 능력이 부족한 소년사범에게 비대면 온라인은 그들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소년사범들이 거의 징벌적 독방구금(solitary confinement)과 같은 상태로 장시간 방(셀)에 혼자 있어야 했다. 조기석방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자, 조기석방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청소년의 경우 돌아갈 집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면 조기석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되었다. 구금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신규 유입을 막는 전략이 추진되어 구금의 감소는 환영할 만하지만, 직원들의 확진과 재택구금으로 인해 소년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 내 처우는 시설 내 처우보다 덜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조기석방과 시설 신규유입 방지 전략은 보호관찰을 통한 관리감독 업무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거의 모든 보호관찰소가 문을 닫았고, 집단 프로그램들은 중단되고, 청소년들은 보호관찰관의 전화, 화상통화 등을 통해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 내 소년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정신문제와 학습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대면접촉이 필요한 치료적 프로그램과 학습지원은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표준화 되고 즉각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국의 소년사법을 관할하는 연방 기관인 소년사법과 범죄 예방 부(OJJDP)는 소극적 대응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향후 코로나 19에 대해 소년사법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민간단체, 언론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소년사법 체계가 코로나 19에 대응한 상황과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려해볼 만한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통제와 예방센터는 교정시설 가이드스를 개발하였다. 2020년 3월 11일 팬데믹이 선포된 후 3월 30일 센터는 성인 및 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 가이드스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대다수의 시설들은 별도의 가이드스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본 가이드스를 활용하고 있다. 가이드스는 구금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면방문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수용자들의 정신적인 타격을 고려할 것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소년사법 기관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주는 아니지만 플로리다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주 등은 기관 홈페이지에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전략, 발생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는 코로나 19에 대해 본 기관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치권과 민간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가족은 물론 대중의 불안감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구금감소 전략이 실행되었다. 법원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미국사회에서는 2000년대부터 비행청소년이 감소하고 구금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수인이 생활하는 폐쇄형 시설이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통해 소년사법의 시설 내 구금이 더욱 축소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주지사들의 행정명령과 법원의 결단, 민간단체의 소송을 통해 시설 내 신규 유입자가 감소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의 재판 전 구금도 감소하였다. 또한 비폭력 사범, 보호관찰 위반자 등에 대한 조기석방이 이루어졌으며, 법원과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조항 위반자에 대한 시설구금이라는 조치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작된 조치들이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방식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 영국

1. 영국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립적인 소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법, 형사사법법,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⁵²⁾ 소년사범의 연령은 10세~17세이다.⁵³⁾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구금을 최소화 하고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하며, 다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조기 개입과 정신질환 개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대중을 보호하고자 한다.⁵⁴⁾

영국 정부의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sentence)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⁵⁵⁾ 소년법원에서는 사회 내 처분(community sentences)과 구금 및 훈련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s)을 내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년사범의 사회 내 처분은 성인의 사회 내 처분과 다르며 3가지 주된 유형의 사회 내 처분이 있다. 회부명령(referral orders)의 경우 지방정부 패널과 소년범죄 대응팀의 협의에 의해 소년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배상명령(reparation orders)은 비행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다. 사회복귀명령(Youth Rehabilitation Order)⁵⁶⁾은 최장 3년까지 소년

52)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소년보호연구 18, 157-194면, 2012.

53) U.K., Youth Custody Servic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https://www.gov.uk/age-of-criminal-responsibility>, 최종검색 : 2020.12.29).

54) 박선영, 영국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지원, 교정담론, 14(1), 1-23면, 2020.

55) U.K.,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Courts(<https://www.gov.uk/courts/youth-courts>, 최종검색 : 2020.12.29).

56) U.K., Legislation,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4/contents>, 최종검색 : 2020.12.29).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활동명령, 감독명령, 무보수 노동명령, 프로그램 참가명령, 출석명령, 특정활동 금지명령, 외출제한 명령, 전자감독 명령, 출입금지명령, 거주명령, 지방정부 숙고 거주 명령, 정신치료 명령, 약물치료 명령, 약물검사 명령,

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을 명령하며, 방면(discharge)의 경우 경찰체포와 소년법정에 출두한 경험이 충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고려될 때 내리는 선고이다. 시설 내 처분으로는 구금 및 훈련명령(Detention and Training Orders)⁵⁷⁾이 있다. 12세~17세의 소년사범에게 구금 및 훈련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기간은 4개월~2년이다. 선고받은 형기의 첫 절반의 기간은 시설에 구금되며, 나머지 절반은 지역사회 내에서 감독을 받는다.⁵⁸⁾

소년보호기관 중 “소년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Board)”의 감독 하에 활동하는 소년범죄 대응팀⁵⁹⁾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소년사범을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영국 전역 164개 지역에 소년범죄 대응팀이 있으며 소년사법 서비스(Youth Justice Service)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년범죄 대응팀이 아동복지국(Children's Services)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부(Community Safety Department)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⁶⁰⁾ 소년범죄 대응팀은 경찰, 학교, 보호자로부터 회부된 청소년을 진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입을 시작한다. 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개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시행과 완료를 관리·감독한다.⁶¹⁾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정보호청(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HMPPS) 산하 소년구금국(Youth Custody Service)이 관할한다. 교정보호청은 2004년 교정과 보호가 통합된 “국가범죄자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NOMS)”을 2017년 현재의 교정보호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발족 당시는 내무부(Home Office) 소속이었지만 2007년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로 조직이 이관되었다. 현재 영국에서 소년사범의 구금 시설은 3가지 형태인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6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안아

유해물질 치료명령, 교육명령, 집중감독감시 명령, 집중 위탁명령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법무부, 2011).

57) U.K., Ministry of Justice, Types of Prison Sentences(<https://www.gov.uk/types-of-prison-sentence/sentences-for-young-people>, 최종검색 : 2020.12.29).

58) U.K., Ministry of Justice, Types of Prison Sentences(<https://www.gov.uk/types-of-prison-sentence/sentences-for-young-people>, 최종검색 : 2020.12.29).

59)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최종검색 : 2020.12.29).

60)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61)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등의 집(secure children's homes)을 제외한 소년수용시설(young offender institutions)과 보호훈련소(secure training centres)의 운영을 교정보호청이 관할한다. 소년수용시설은 교정국과 사기업이 운영하며, 15~21세의 소년사범을 수용하고 18세 이상은 다른 건물에 수용한다. 60~4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보호훈련소는 소년사범위원회(Youth Justice Board)와 계약을 맺은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12~17세 수용, 총 50명~80명 정원이며, 5~7명 단위로 다른 유닛을 사용한다.⁶²⁾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2020년 3월 23일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조치로 봉쇄(lockdown)를 발표함에 따라 교정보호청과 소년사범위원회는 이에 따른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에서는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⁶³⁾

가. 시설 내 처우

교정보호청은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대응조치를 발표하였다⁶⁴⁾. 대응조치는 성인과 소년사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면회 중지, 대면 프로그램 중지, 조기 석방 확대 등이다. 면회를 대신하여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확대하고, 수용자를 독방에 수용하며, 소년사범의 경우 교육의 의무로 인해 방(cell) 안에서 소년사범이 제공된 교육을 혼자 수행하는 방식이었다.⁶⁵⁾

코로나 19로 인해 구금시설 운영상의 변화와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교도소조사국(HM Inspectorate of Prisons)이 2020년 4월 21에 발표한 소년수용시설

62)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63)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prison-visits-in-england>, 최종검색 : 2020.12.29).

64)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prison-visits-in-england>, 최종검색 : 2020.12.29). 아래 운영지침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드스(Coronavirus and prisons guidance)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65)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prison-visits-in-england>, 최종검색 : 2020.12.29).

(young offender institutions) 조사 결과이다.⁶⁶⁾ Cookham Wood는 148명의 소년사범이 수용되어있는데, 40분만 셀 밖에서의 시간을 주었으며, 고립감을 막기 위해 소규모 집단 식사를 실시하고, 28일의 의료 조건부 석방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Wetherby는 223명의 소년사범을 수용하고 있으며 40분만 셀 밖에서의 시간을 허용하였으며, 소년사범의 전화사용을 점검한 후에 사용을 안 하는 학생을 면담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Parc는 34명의 소년사범을 수용하고 있으며, 셀 밖에서의 시간을 3시간으로 허용하고, 스카이프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을 실시하였다. 식사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3명씩 함께 소그룹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시간 셀 밖 활동에서는 2시간의 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목공, 요리, 체육 등 3개의 수업이 제공되었다.⁶⁷⁾

교도소조사국은 안전(safety), 돌봄(care), 목적이 있는 활동(purposeful activities), 재정착(resettlement) 등 4대 영역에 대한 업무를 조사하였다. 1 영역인 안전(safety)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시설 구조 상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14일의 신입기간 동안에 신규 입소한 소년사범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외부활동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았으며, 신입자들은 기존 아이들과 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날 도착한 아이들끼리만 대화하는 방식이므로 같은 날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대화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방역지침을 지키되 의미 있는 인간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을 위해 세 군데 시설 모두 외부 지원 단체와 전화를 통한 소통은 지속되었다. 민영시설인 Parc는 매일 간호사와 매니저가 아이들을 만났지만, 다른 두 기관은 1주일에 한번 아동청소년 웰빙을 점검하고 있었다.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이 엄청나게 감소하여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적되었다.⁶⁸⁾

2 영역인 돌봄(care) 영역의 경우 모든 셀이 깨끗하며 셀 안의 샤워 혹은 공동샤워가

66)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Report on Short Scrutiny Visits to Young Offender Institutions Holding Children by HM Chief Inspector of Prisons (<https://www.justiceinspectorates.gov.uk/hmiprison/wp-content/uploads/sites/4/2020/05/YOIs-SSV-Web-2020-1.pdf>, 최종검색 : 2020.12.29).

67)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op., cit.

68)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op., cit.

가능하였으며,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을 만큼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개인 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와 관련해서는 건강관리 직원과 접촉이 가능하며, 외부 진료와 치과 진료는 한계가 있지만, 긴급 시에는 외부진료가 제공된다. 이 분야에서도 역시 소년사범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감소되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다.⁶⁹⁾

3 영역인 목적이 있는 활동(Purposeful activity)의 경우가 가장 변화가 큰 영역이었는데, 1:1 대면교육의 중단이었다. 교정보호청이 운영하는 Cookham과 Wetherby는 셀 안에 청소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제출된 자료를 직원들이 봐주는 형태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민영 Parc는 1주간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이후, 매일 2시간씩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여 목공, 요리 수업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셀 안에서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도 제공하였다. 세 기관 모두 셀 밖에서의 체육활동을 제공했는데 Cookham과 Wetherby는 하루 40분, Parc는 하루 1시간의 체육활동이었다. 법에서 명시한 도서관 서비스의 경우, 세 군데 모두 요청한 책을 셀로 배달하는 형태였다.⁷⁰⁾

4 영역 재정착(Resettlement)의 경우도 우려가 표명된 영역이었는데, 대면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전화를 통해 출소 준비가 장려되었다. 현재 모든 시설의 셀 안에는 전화기가 배치되어있는데 전화사용을 확대하였으며, 전화를 통한 부모와의 통화, 외부 단체의 출소지원을 받고 있었다. 출소 후 숙소와 건강지원은 변함없지만,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출소하는 청소년들이 출소 하는 날 거주지가 정해진 상태였다. 교도소조사국은 셀 밖에서의 외부활동 시간을 확대할 것,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할 것,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교육제공의 의무와 재정착 지원의 의무를 강화할 것, 시설마다 처우가 다른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⁷¹⁾

69)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op., cit.

70)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op., cit.

71)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op., cit.

나. 사회 내 처우

소년사범 전체를 관할하는 소년사범 위원회는 6월 발행한 리플릿을 통해 지역 소년 범죄 대응팀 사무실은 폐쇄하고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비대면 접촉을 우선적으로 하되, 고위험군 청소년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린 공간에서 대면접촉을 할 것이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이고, 배상 프로그램은 중단되며, 프로그램 참여도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밝혀서 그간 수행되어 오던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⁷²⁾

사회 내 처분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소년범죄 대응팀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받는 소년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덜하다. 보호관찰조사국은 성인 보호관찰 서비스는 물론 소년범죄 대응팀의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0년 10월에 발표된 Birmingham 소년범죄 대응팀 조사도 2019년 업무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보고할 뿐 코로나 19로 인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국회 사범상임위원회 보고 역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에 대한 보고는 간략하였으며, 자선단체의 보고서나 언론⁷³⁾에서도 사회 내 처우 대상자에 대한 우려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소개된 구금시설에 대한 국회 사범상임위원회 보고와 마찬가지로 6월 2일 소년사범(소년법정, 소년 구금시설, 소년범죄 대응팀의 소년사범 감독)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루어졌다⁷⁴⁾. 대다수의 질문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를 받는 소년사범과 소년범죄 대응팀에 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중이 낮았다. 상임위원회는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게도 서비스 공급 면에서 상당히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72) U.K., Youth Custody Service, Coronavirus and Youth Offending Teams: Advice for Childre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and-youth-offending-teams-advice-for-children>, 최종검색 : 2020.12.29).

73) The Guardian, Covid Stopped Family Visits for Children in Youth Prisons in England and Wales(<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sep/23/children-in-england-youth-prisons-denied-family-visits-due-to-covid-restrictions>, 최종검색 : 2020.12.29.). 2020년 9월 23일 가디언은 소년 구금시설의 면회금지과 대면 교육 중단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사회 내 처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74) U.K., Justice Committee Oral Evidence: Coronavirus (Covid-19): The Impact on Prison, Probation and Court Systems(<https://committees.parliament.uk/oralevidence/565/pdf/>, 최종검색 : 2020.12.29).

코로나 19로 인해 더 고립되고 소외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소년사법 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년범죄 대응팀이 근무하는 소년사법서비스 사무실은 폐쇄조치 되었지만,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며 전화통화를 확대하고 일부 직원들은 소년사범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문 앞에서 전달하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사례들도 있다고 보고하였다.⁷⁵⁾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가. 시설 내 처우

법무부와 교정보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구금시설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던스 (Coronavirus and prisons guidance)”를 발표하였다⁷⁶⁾. 가이던스는 소년시설과 성인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2020년 11월 6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최종 가이던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⁷⁾

▶▶ <표 4-7>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던스

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교도소와 소년 구금시설 방문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명시한다. • 사전에 협의된 특별배려(compassionate) 면회는 예외일 수 있다. • 법률자문 방문은 필요에 따라 지속되지만 가능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될 것이다. • 방문은 금지되지만 다른 방법인 화상통화, 음성메시지 남기기, 이메일 보내기 등을 통한 접촉은 계속된다.
화상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해 교도소 수용자와 화상전화를 할 수 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화상통화가 무료이다. • 화상통화는 30분까지 가능하고 한 달에 한번 허용된다. • 전화를 걸 수 있는 외부인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수용자의 친구와 가족명단에 있어야 한다.

75) U.K., Justice Committee Oral Evidence: Coronavirus (Covid-19): The Impact on Prison, Probation and Court Systems(<https://committees.parliament.uk/oralevidence/565/pdf/>, 최종검색 : 2020.12.29).

76)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op., cit.

77)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op., c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에 있는 3명의 외부인이 함께 통화할 수 있다. 화상통화 시스템이 있는 교도소만 가능하다. • 외부인은 앱을 설치하여 하루의 승인기간을 필요로 한다. 교도소에 요청하면 교정직원이 스케줄을 잡아서 이메일로 확정을 해준다. • 모든 화상 통화는 녹화되며 직원은 화상통화를 하는 동안 이를 지켜볼 수 있다. • 현재 화상전화는 가족, 수용자 모두에게 무료이다.
전화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형자는 교도소 내 전화로 친구와 가족 명단에 있는 외부인에게 전화할 수 있다. • 명단은 도착 첫 날 보안팀에 의해 작성되고 점검되며 며칠이 소요된다. 교정직원은 대부분 유형의 전화를 기록하고 들을 수 있지만, 변호인과의 통화는 모니터링 되지 않는다. • 셀 안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교도소에 추가적인 임시 보안전화(temporary secure phone)가 지급되었다. • 많은 교도소와 소년원은 보안 화상전화(secure video calling)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교도소와 소년원이 수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도소 내 수용자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직원,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공중보건국과 협력할 것이다. • 모든 교도소는 코로나 업무 지시를 이행한다. • 전염병 발발과 예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직원 결혼에 대한 대응을 수립하고 있다. • 손을 씻을 설비들이 모든 수형자, 직원, 방문객에게 이용가능하며, 비누 및 위생용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교도소 내 질병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 현재 체재를 유지하면서 임시적인 조치들을 할 것이다.
가석방 위원회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의 가석방 심리가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은 대면 심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코로나로 인한 접근과 교도소 운영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이를 정부 홈페이지나 교정보호청 트위터, 법무부 트위터에 게시할 것이며 국가 교도소 라디오(National Prison Radio)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으로 고지할 것이다. • 교도소에 있는 자에 관한 긴급한 우려가 있다면 교도소에 직접 접촉하거나 수형자 가족 도움의 전화(Prisoners' Families Helpline), 기타 관련 민간단체로 연락한다.

교정보호청이 발표한 가이드נס에 대해서 교도소조사국(HM Inspectorate of Prisons) 국장은 국회 사법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⁷⁸⁾에서 본 가이드נס는 소년시설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소년 시설을 성인 교도소의 부속품 내지 각주(footnote)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교도소조사국 국장의 비판에 동의하며

78) U.K.,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Coronavirus (Covid-19): The Impact on Prisons(<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2154/documents/20016/default/>, 최종검색 : 2020.12.29).

교정보호청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마다 대응방식이 다른 것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⁷⁹⁾

나. 사회 내 처우

소년사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경우는 각 지역의 소년범죄 대응팀이 업무를 관할한다.⁸⁰⁾ 성인 보호관찰의 경우 교정보호청은 “회복을 위한 보호관찰 로드맵(Probation Roadmap to Recovery)”을 발표하고 3단계 회복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과 업무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⁸¹⁾ 그러나 소년사범위원회(Youth Justice Board)는 별도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소년범죄 대응팀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지하는 형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⁸²⁾

1) 소년범죄 대응팀 홈페이지

소년사범 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소년범죄 대응팀은 각 지방정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⁸³⁾ 경찰, 법원, 교정 등 소년사범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 내 처분을 이행한다. 코로나 19의 상황 하에서 전국의 소년범죄 대응팀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년범죄 대응팀이 실행하는 업무상의 변화를 공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Sheffiled의 소년범죄 대응팀인 소년사범 서비스국(Youth Justice Service)은⁸⁴⁾ 소년사범 서비스를 실행하는 각 사무소를 3월 23일 부터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공지하였으며 다른 방식으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⁸⁵⁾

79) U.K.,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Coronavirus (Covid-19): The Impact on Prisons(<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2154/documents/20016/default/>, 최종검색 : 2020.12.29).

80) U.K.,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Guidan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81)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Probation Roadmap to Recover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92498/probation-roadmap-to-recovery.pdf, 최종검색 : 2020.12.29).

82) U.K.,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op., cit.

83) U.K.,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op., cit.

84) U.K., Youth Justice Service: Youth Justice Service Update-Covid-19 (<http://www.sheffield-yos.org.uk/>, 최종검색 : 2020.12.29).

2) 소년사법 위원회의 리플릿

소년사법 위원회는 2020년 6월 25일 소년범죄 대응팀의 지원에 대해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플릿을 만들어서 공지하였다⁸⁶⁾. 리플릿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⁷⁾

▶▶ <표 4-8> 소년사법 위원회의 리플릿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대다수의 소년범죄 대응팀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일부 사무소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 소년범죄 대응팀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소년사법들과의 만남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 필요한 경우 소년사법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 접촉이 가능하며, 소년범죄대응팀 직원은 소년사법을 공원이나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 •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소년범죄 대응팀은 소년사법을 관리하고 있다. • 프로그램 참여(interventions)의 경우 소그룹 대면활동과 모임이 금지되고 필요한 자료를 대상 소년사법에게 보내주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배상(reparation)의 경우에도 배상활동은 잠정적으로 연기된다. • 소년범죄 대응팀이 소년사법의 주거지를 확보하는 지원이나 청소년이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는 지속된다.

4. 대응 현황과 향후 방향

가. 시설 내 처우 대응현황과 계획

성인 및 소년사법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교정보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금시설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2020년 3월 초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드스(Coronavirus and prisons guidance)”를 발표하며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대응조치를 발표하였다.⁸⁸⁾ 대응조치는 성인과 소년사법

85) U.K., Youth Justice Service: Youth Justice Service Update-Covid-19 (<http://www.sheffield-yos.org.uk/>, 최종검색 : 2020.12.29).

86) U.K., Youth Custody Service, Coronavirus and Youth Offending Teams: Advice for Childre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and-youth-offending-teams-advice-for-children>, 최종검색 : 2020.12.29).

87) U.K., Youth Custody Service, Coronavirus and Youth Offending Teams: Advice for Childre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and-youth-offending-teams-advice-for-children>, 최종검색 : 2020.12.29).

88) U.K., Youth Custody Servi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된 골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면회 중지, 대면 프로그램 중지, 조기 석방 확대 등 이었다.⁸⁹⁾

» **〈표 4-9〉**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도소 가이던스

구분	내용
교도소 면회 금지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19 동안에도 다른 수단을 통해 가족과의 연결을 지속해야 한다. · 현재 50개의 교도소가 셀 내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규정에 따라 수형자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 ·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시설에 전화기 900개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 모든 전화는 모니터링 되고 가족에게 연락과 민간단체 지원을 요청 용도로 제한된다. · 6개 교도소에서 가족과의 화상 전화를 시범 운영 중이다. · 가족들은 전화 외에도 기존에 실시하던 방식인 음성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수형자와 계속 연락을 취할 수 있다. · 전화사용 시간 확대하고 전화사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법무부는 건강과 보건 관련 국가 기관인 Public Health Engl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to manage 와 협력한다.
조기 석방과 이용 가능한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법 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국가 계획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마친, 출소 2개월을 앞둔 수형자를 임시 석방할 것이다. · 저 위험 군 수형자를 전자감독 장치를 부과하여 조건부 석방을 시킬 것이다. 만약 우려를 자아내는 행동을 한번만 해도 교도소로 재 소환된다. · 폭력범죄자와 성범죄자, 교도소 형량의 반을 복역하지 않은 자는 안전상의 우려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범죄 (예를 들어 통제 직원에게 기침을 하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훔친 자 등)도 조기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는 수형자 혹은 주거가 없는 자, 출소 후에서 건강유지를 지원받을 수 없는 자도 조기 석방에서 제외된다. · 조기 석방자는 전자발찌를 포함한 밀접한 관리를 받을 것이며 엄격한 준수조항이 부과될 것이다. · 공중보건국의 권고에 따라 대중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임산부 수형자를 임시 석방할 것이다. · 교도소의 단독 셀 추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장소들을 물색해서 임시 교도소 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취약한 수형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수용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법원에서의 형 결정을 위한 재판과 심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한다. · 본부에서 적절한 일선으로 운영지원을 위해 직원들을 파견할 것이다. · 4월 6일 소년범죄 대응팀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소년사법위원회도 소년범죄대응팀에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검색일: 2020.12.29.).

89) U.K., Youth Custody Servi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 검색일: 2020.12.29.).

구분	내용
	<p>게 코로나 19로 인해 시설에 수용된 저 위험 청소년의 조기 석방의 가능성을 고지하였다⁹⁰⁾. 이에 소년범죄 대응팀과 법무부는 가능성 있는 대상 소년사범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이들이 출원 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감독 받을 수 있는 지를 진단할 것이다.</p>
<p>모든 수용자에게 독방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개의 임시, 단독 셀을 만드는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팬데믹 동안에 대중과 국민보건을 위한 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 임시 숙소가 기존의 교도소 내에 마련이 되고 평상 시처럼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저 위험 교도소인 C와 D 등급 교도소 수형자만이 임시 유닛에 수용될 것이다. • 오래된 시설 7곳이 우선적으로 뽑혔는데, 공유하는 셀이 많고 셀 안의 위생이 부족하며, 취약한 수형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추가적인 숙소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교도소가 더 선정될 것이다.
<p>교육과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보호청이 운영하는 Cookham과 Wetherby는 셀 안에 청소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제출된 자료를 직원들이 봐주는 형태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다. • 반면에 민영 Parc는 1주간의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이후, 매일 2시간씩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여 목공, 요리 수업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셀 안에서 할 수 있는 학습자료도 제공하였다. • 세 기관 모두 셀 밖에서의 체육활동을 제공했는데 Cookham과 Wetherby는 하루 40분, Parc는 하루 한 시간의 체육활동이었다. • 법에서 명시한 도서관 서비스의 경우, 세 곳 모두 요청한 책을 셀로 배달하는 형태였다.
<p>재정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면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지역의 소년범죄 대응팀 직원 및 자선단체 직원들과 전화를 통해 출소 준비를 하고 있었다. • 현재 모든 시설의 셀 안에는 전화기가 배치되어있는데 전화사용이 확대되었다. • 출소 후 숙소와 건강에 대한 지원은 변함없지만,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 다행히 모든 출소하는 청소년들이 출소 하는 날 거주지가 정해진 상태였다.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구별되는 구금시설 대응 방안을 개발할 것 • 소년 시설마다 제공되는 교육과 셀 밖 활동이 다른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낼 것 • 셀 밖에서의 시간을 확대 할 것 • 교육 제공을 강화할 것 • 재판 중 구금을 감소시킬 것 • 화상통화 지속적 확대 •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조기 석방 확대 • 공간 확보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90) U.K., Association of Youth Offending Team Managers: Children Included in Numbers to be Released from Custody Due to Covid19(<https://aym.org.uk/2020/04/06/children-included-in-numbers-to-be-released-from-custody-due-to-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나. 사회 내 처우 대응현황과 계획

1) 소년사법 위원회의 대응

소년사법 전체를 관할하는 소년사법 위원회는 2020년 3월 18일 홈페이지⁹¹⁾를 통해 코로나 19에 따른 소년사법 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된 골자이다.⁹²⁾

» **〈표 4-10〉 소년사법 위원회의 입장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위원회 직원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며 업무관련 출장은 없을 것이다. • 전화와 비디오 회의를 통해 소통할 것이다. • 화상이 아닌 이벤트 들은 연기한다. • 지속적으로 우리 활동을 검토한다. • 협력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후 2020년 4월 23일에 "Youth Justice Partner COVID-19 Update"⁹³⁾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소년사법 위원회와 파트너 기관들이 소년사법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정부와 기타 관련 기관 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 소년사법으로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숫자를 최소화하기 • 소년 구급시설에서의 조기 석방 • 재판 중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인된 보석을 최대화 • 파트너 기간간의 정보 공유와 빠른 의사소통 • 소년사법서비스 국장의 화상 회의와 추가적인 포럼을 통한 정보 공유 • 소년사법들을 위한 우려와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 • 법무부 소년사법정책유닛>Youth Justice Policy Unit)에서 소년사법 액션 플랜 개발하는 것 지원 • 코로나를 고려하여 법적인무인 연례 소년사법계획>Youth Justice Plan) 제출 대신 비상대응계획과 회복계획을 제출도록 함 • 소년범죄 대응팀이 재정착(Resettlement)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년사법위원회 리소스 허브를 활용하여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자료와 사례 공유 •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테스트 확대

91) U.K., Youth Custody Service, Youth Justice Board update on COVID-19(<https://www.gov.uk/government/news/youth-justice-board-update-on-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92) U.K., Youth Custody Service, Youth Justice Board update on COVID-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youth-justice-board-update-on-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93) U.K., Youth Justice Resource Hub, Practice Professional Development Research and Evidence(<https://yjresourcehub.uk/>, 최종검색 : 2020.12.29).

2020년 6월 25일에는 앞서 소개된 리플릿을 발행하여 소년범죄 대응팀의 관리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 관리감독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상과 프로그램 참여(intervention)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거와 재정적 지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⁹⁴⁾

2) 소년범죄 대응팀의 사회 내 처우 실행 현황

사회 내 처분을 받는 소년사범의 경우 배상활동, 보호관찰, 프로그램 참여(interventions)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관리감독은 각 지역의 소년범죄 대응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⁹⁵⁾ 각 지역은 소년범죄 대응팀 혹은 소년사범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무실 폐쇄와 관리감독과 프로그램 제공의 변화를 공지하였다.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정보, 소년사법위원회의 발표, 국회 사법위원회 보고를 통해 그간 소년범죄 대응팀의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 진행은 다음과 같다.⁹⁶⁾

▶▶▶ <표 4-11> 소년범죄 대응팀의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소년들과의 접촉은 비대면 온라인 접촉이 기본이다. 전화, 화상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관리감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 특별한 경우에 사전 예약을 통해 대상 청소년들은 일부 문을 연 지역 사무실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와서 직원과 대면 접촉을 할 수 있다. • 소년범죄 대응팀 직원들은 감독하는 청소년들을 필요한 경우 대면접촉 할 수 있다. 공원이나 외부 열린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며 청소년들 만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자료들이 전달되고 이를 집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소년범죄 대응팀에서 청소년들의 집을 방문하여 집 앞에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두고 오는 방식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활동을 장려하였다. • 배상(reparation) 활동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다.

94) U.K., Youth Custody Service, Youth Justice Board update on COVID-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youth-justice-board-update-on-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95) U.K.,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op., cit.

96) U.K.,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op., cit.

3) 소년범죄 대응팀의 “회복계획(Recovery Plan)” 수립과 제출

소년사법 위원회는 각 지역의 소년범죄 대응팀에게 2020년 9월까지 “회복계획(Recovery Plan)”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⁹⁷⁾ 이는 앞서 소개된 2020년 4월 23일 “파트너 기관과 소년사법 위원회의 활동보고”에서 언급된 사안으로서 본 계획서 작성을 돕고자 2020년 7월 10일에는 “코로나-19 회복 계획: 소년범죄 대응팀을 위한 가이드스”를 제시하고 있다.⁹⁸⁾

소년범죄 대응팀이 법무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내년도 연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가 큰 상황에서 기존의 연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소년사법 위원회는 각 소년범죄 대응팀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대응하고 서비스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계획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것이다.⁹⁹⁾

소년사법위원회가 밝힌 본 계획서의 목적은 소년사법 대응팀의 서비스 제공, 개입, 파트너십이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소년사법 체계 전체의 회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아 공유하고자 함이다. ¹⁰⁰⁾ 제출해야 할 계획서가 포함하는 내용은 (1) 코로나가 관리와 서비스 이행에 준 영향에 대한 개관, 지속되는 난관과 성공은 무엇인지, (2) 지역 소년사법 파트너십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3) 지역의 우선순위에 준 영향과,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은 무엇인지, (4) 자원 할당에 관한 명세내역을 포함한 자원에 대한 영향,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범죄와 무질서법 1998에서 설정한 최소 인력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준수를 못했다면 이 조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5) 코로나 19가 특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97) U.K., Youth Custody Service, Youth Justice Board update on COVID-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youth-justice-board-update-on-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98)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99)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100)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지역 파트너 간의 운영적인 관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러한 관계성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6)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7) 파트너 십이 어떻게 코로나 19의 지속되는 위기와 새롭게 등장하는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지 등이다.¹⁰¹⁾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필요, 직원의 필요, 전략적 파트너 십 등 3가지의 우선순위 영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¹⁰²⁾

가) 아동청소년의 필요(needs)

아동의 필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성공적인 결과가 성취되었는지가 첫 번째 우선순위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개입을 이행시키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 이슈들에 대한 고려들도 제시되어야 한다. 봉쇄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과 학대의 위험이 커지고, 가족의 사망도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대응도 회복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흑인, 아시안, 소수민족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안과 소년사법 내에서 흑인 아동청소년들이 불균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코로나로 인해 관행들의 변화가 초래한 영향도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상 재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필요가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지역의 대응은 어떠한 지 등이다.¹⁰³⁾

나) 직원의 필요(needs)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직원을 위한 회복계획은 소년범죄 대응팀 사무실과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101)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102)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103)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것이다. 경찰서, 법원, 가정방문, 청소년의 가족방문에 대한 절차와 관련한 사항들이 다. 건강상의 문제나 직원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 19 전략은 생명을 살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⁴⁾

다) 전략적 파트너십 (Strategic Partnerships)

위원회는 소년범죄 대응팀과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 파트너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다. 포럼을 통해 대중을 위험과 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실종되고 착취되는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가족지원, 시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등이 협력관계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정부와 소년사법 파트너십의 자원에 코로나 19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예방과 법원의 업무에서의 적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배분과 조율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아동복지국은 회부 업무가 밀려들어오고 있으며, 교육부는 심각한 이슈들을 감당하고 있다.¹⁰⁵⁾

다. 향후 계획

2020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소년사법 위원회 연례보고서 2019/2020 (Youth Justice Annual Report)”¹⁰⁶⁾에서 소년사법 위원회는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방안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¹⁰⁷⁾

첫째, 각 지역 소년범죄 대응팀에 요청한 “회복계획”을 분석하여 코로나 19에 대한 3단계 회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⁰⁸⁾

둘째, “COVID-19 Working Group”을 만들었으며, 이 그룹은 회복계획을 포함하여

104)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105)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106)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107)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108)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소년사법위원회의 코로나 19 대응을 검토하고 조율할 것이다.¹⁰⁹⁾

셋째,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출원하는 청소년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정착 가이드스를 2021년 초까지 개발하여 발표할 것이다.¹¹⁰⁾

5. 소결

본 절에서는 영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소년사법 기관의 대응현황을 검토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시설 내 처우나 사회 내 처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소년 구금시설은 성인 시설과 동일하게 대면 면회, 대면 교육 등이 금지되고 각자의 방(셀)에서 교육 자료를 제공받으며 전화를 통한 가족과 자선단체와 접촉을 하고 있었다. 사회 내 처우의 경우 지역 사무소는 대부분 폐쇄되었고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대상 소년사범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이나 외부 공간에서의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배상활동은 중단되었고, 프로그램 참여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년범죄 대응팀이 필요한 물품을 소년사범의 집 앞에 두고 오는 방식도 시도되었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교정보호청은 정부 지침에 부응하는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지만, 사회 내 처우를 관할하는 소년범죄 대응팀은 별도의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소년사법 전체를 관할하는 소년사법 위원회가 사회 내 처분 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리플릿을 발행하여 사회 내 처분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교정보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면회 금지에 따른 전화사용 확대와 화상통화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각자 방(셀) 배정, 셀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확보, 조기석방 확대 등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발표하였다. 교도소조사국의 권고와 국회 사법상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 구금시설 용 운영지침 개발, 대면 교육 금지에 대한 방안 강구, 시설 마다 다른 대응에 대한 조사, 조기석방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109)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110) U.K., Youth Justice Board, op., cit.

사회 내 처분과 관련하여 소년사법 위원회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상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리플릿을 발간하며, 소년범죄 대응팀에게는 내년도 계획 대신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회복계획(Recovery Plan)”을 9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스를 제공하였다. 소년사법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년사법 대응팀이 대상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한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소년사법 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는 “회복계획”을 분석하여 코로나 19에 대한 회복모델을 제시, “COVID-19 Working Group”을 구성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코로나 19 시대에 출원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재정착 가이드스를 개발하는 것 등의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대응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아쉬운 점은 성인 시설을 포함하여 소년시설을 관할하는 교정보호청의 대응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평가가 이루어진 반면에 사회 내 처분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평가가 적은 점이었다¹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사법 관련 기관의 대응에 대한 조사, 평가, 비판을 통해 관련 기관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산하 독립 기관인 교도소조사국과 보호관찰조사국은 각각 교정시설, 소년범죄 대응팀 업무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하며 이를 공표한다. 특히 교도소조사국은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3군데의 소년시설을 조사하여 대응 상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회 사법상임위원회는 7월까지 4차례의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성인 교도소는 물론 소년 구금시설과 소년범죄 대응팀이 코로나 19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책임자들에게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둘째, 소년사법 관련 기관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조치를 홈페이지, 트위터, 리플

111) 교도소조사국은 3개의 소년시설에 대해 코로나 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한 반면, 소년범죄 대응팀의 업무를 평가하는 보호관찰조사국은 코로나 19 대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자선단체와 언론은 시설에 구금된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만 비판을 했을 뿐 사회 내 처분을 받는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와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사법상임위원회에서도 소년범죄 대응팀의 사회 내 처우 이행에 관해서는 질의응답이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릿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은 물론 관리감독과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 그들의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홈페이지에 공표함은 물론, 기관 별로 트위터를 활용해 공지할 것을 독려했으며 소년사법 위원회는 사회 내 처우를 받는 청소년을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셋째, 대면 면회 금지로 인한 전화사용을 확대하였다. 현재 영국의 모든 교도소와 소년 시설의 방(셀) 안에는 전화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족과 외부 자선단체에 전화를 할 수 있다. 전화기가 없는 교도소를 위해 900대의 전화기가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전화 사용을 위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사법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소년사법 위원회는 소년범죄 대응팀에게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업무 수행에 관한 “회복계획(Recover Plan)”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소년사법 위원회가 그 목적을 밝힌 바와 같이 전국 소년범죄 대응팀이 제출하는 본 계획서는 각 기관이 처한 어려움과 대응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을 알 수 있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 독일

1. 독일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독일의 소년보호정책은 범죄행위 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Jugendlicher)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준소년(Heranzwachsende)에 대한¹¹²⁾ 특별 형사사법인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JGG)과 청년(junger Mensch) 및 아동(Kind)과 소년(Jugendlicher)의 부모, 양육권자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위한¹¹³⁾ 사회법 제8편의 아동

112) 소년법 제1조. 준소년의 개념에 대하여는 소년법원법 제105조 참조. 국내 문헌에서는 Heranzwachsende를 준소년, 장소년, 청년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아동 및 소년지원법상의 여러 개념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소년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13) 아동 및 소년지원법 제7조에 따라 아동은 14세 미만인 자, 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성년인 소년(junger Volljähriger)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청년은 27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과 소년지원(Sozialgesetzbuch(SGB) VIII Kinder-und Jugendhilfe)으로(이하 ‘아동 및 소년지원법’) 대별된다. 소년법원법은 제9조에서 제18조에 따른 소년범에 대한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과 시설 내 처우인 소년교도소를 구분한다. 그리고 아동 및 소년지원법 제34조는 소년법원법 제12조와 연계하여 중간처우¹¹⁴⁾로 비행소년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소년주거시설/소년하임을 규정하고 있다.¹¹⁵⁾

보호관찰 없는 소년자유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은 소년법원법 제114조에 따라 행형시설(Justizvollzugsanstalt/JVA), 소년형사시설 (Jugendanstalt/Jugendstrafanstalt)이라는 명칭의 거주식 시설에 수용된다.¹¹⁶⁾ 이러한 소년교도소는 개별 주범인 소년행형법(Jugendstrafvollzugsgesetz) 하에서 폐쇄형, 개방형과 자유형¹¹⁷⁾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라 때 2018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독일 전역에 179개의 소년형사시설(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다.¹¹⁸⁾ 소년교도소와는 별개로 소년법원법 제16조상의 징계처분의 한 종류인 소년구금(Jugendarrest)¹¹⁹⁾를 집행하기 위한 거주식 시설로 자유시간구금시설(Freizeitarraestraum) 또는 소년구금시설(Jugendarrestanstalt)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2개의 소녀 전용시설을 포함한 총 35개의 시설에서 약 1,166명의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브레멘을 제외한 독일 전역에 소재해 있다.¹²⁰⁾ 소년법원법 제12조, 아동 및 소년지원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소년주거시설(Jugend(wohn)heim)은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가정형태로¹²¹⁾ 운영되고 있

114) 중간처우는 종래의 구금과 사회내 처우 만으로는 범죄의 복합적인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새로운 교정처우의 형태로 등장하였고,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나 그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중간처우의 개념에 대하여는 유영재, 보호주의에 기반한 소년친화적 시설 내 처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5쪽 이하 참조.

115) 유영재, 보호주의에 기반한 소년친화적 시설 내 처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65쪽 이하 참조.

116) 행형시설에서는 자유형이나 소년자유형뿐만 아니라 심리구속, 보호감호, 대체자유형이 집행된다. 행형시설은 대규모 시설 내에 소년범을 따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소년법원법에 따라 24세 미만의 소년범을 수용하는 소년형사시설과 구분된다.

117) Seehaus Leonberg, Seehaus Leipzig, Projekt Chance in Creglingen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18) Statista, Anzahl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Deutschland und in den einzelnen Bundesländern im Jahr 2018(<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93902/umfrage/anzahl-der-JVAen-in-deutschland/>), 최종검색 : 2020.12.29.).

119) 소년구금의 유형에는 1-2일의 휴일구금, 4일 이내의 단기구금, 1주 이상 4주 미만의 장기구금이 있다.

120) Deutsches Jugendinstitut, Jugendarrest in Deutschland(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jugendkriminalitaet/Jugendarrest_in_Deutschland__2017.pdf, 최종검색 : 2020.12.29.).

121) 유영재, 위 논문, 90쪽.

다. 소년주거시설은 비행소년에게 가정이 되어주는 한편 비행행동 치료 및 회복지원, 체험교육활동, 약물 및 정신건강,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및 연계를 통해서 소년범의 사회통합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한다.¹²²⁾ 보호관찰(Bewährung)은 소년법원법에 따라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인 준수사항(Weisung)의 부과(제10조),¹²³⁾ 징계처분(Zuchtmittel)인 부담(Auflage)명령의 부과(제15조)¹²⁴⁾와 연계하여 이행된다. 또한 보호관찰은 소년자유형(Jugendstrafe)¹²⁵⁾의 만기 출소 시 임의적으로, 가석방 시 필요적으로(제88조), 소년자유형의 집행유예 시 필요적으로(제24조) 부과된다. 소년자유형의 집행유예 시에는 필요적 준수사항의 부과(제23조)나 임의적 부담명령의 부과(제23조)와 연계하여서도 이행되며 소년자유형의 선고유예 시(제27조)에도 부과된다. 그 외에 개선보안처분(제7조, 형법 제61조) 중 보안관찰(Führungsaufsicht)에 보호관찰 형태로 행해진다. 보호관찰은 각 주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베를린 주와 함부르크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사법부 관할 하에 주로 지방법원(Landgericht)에 속해 있다.¹²⁶⁾ 독일 전역에서 약 2500명의 보호관찰관이 약 17만 명의 보호관찰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약 20%가 소년범에 해당한다.¹²⁷⁾

2. 코로나 19가 독일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가 독일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 현황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에서 취한 대응조치에 관하여 일람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월 18일 연방 보건부를 중심으로 하여 홍보와 정보 안내는 연방 보건교육센터(BZgA), 관련 연구자료 지원은 로베르트-코흐 연구소(RKI)가 담당하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구

122) 김용수, 독일의 소년보호 정책과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2), 81-102면, 2018.

123) 거주지 제한, 직업교육/직업알선, 노동급부, 보호감독, 사회훈련, 가해자-피해자-조정, 일정한 사람과의 교류, 숙박업소나 유흥업소에의 출입금지, 교통안전교육 등.

124) 범죄손해원상회복,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동급부, 공공시설에의 금전기탁 등.

125) 소년법원법 제18조는 소년자유형의 기간을 단기 6개월, 장기 5년으로 그리고 일반 형법에 따라 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의 경우 그 최고형을 10년으로 규정한다.

126) 진수명·김혜정, 각국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독일)(법무부 용역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2면, 2001.

127) ADB e.V.-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Bewährungshelferinnen und Bewährungshelfer - (https://www.bewaehrungshilfe.de/?page_id=109, 최종검색 : 2020.12.29.).

축하였다. 3월 17일 연방정부의 공공시설 대부분의 폐쇄 결정과 18일 유로연합의 유로존 국경 봉쇄 결정에 이어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제한과 더불어 22일 이후 연방과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야외 모임 제한, 외출제한, 봉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후 증가하던 감염자 수가 5월 중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주에 따라 봉쇄 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가 행해졌으나 10월 중순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¹²⁸⁾ 소년보호기관은 RKI의 정보와 지침을 기반으로 한 개별 주의 대응정책에 따라 소년의 보호와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 시설 내 처우인 소년교도소

신입 수감자는 최소 14일간 별도로 설치된 격리구역에 머무른 후 코로나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 시설에 수용된다.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는 이 격리기간 동안 수용실 비개방(kien Aufschluss)을 명시하고 있다.¹²⁹⁾ 시설 내에서 수감자나 교도관이 감염자라는 확진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각 주의 보건청(Gesundheitsamt)이 제시한 조치에 따르는데 시설 내에 별도의 지정된 격리구역을 두고, 교도관과 수감자에게 확진자 내지 의심사례의 발생과 이들에 대한 격리를 포함한 조치 및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에서의 기타 제한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¹³⁰⁾하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 외에 시설에 따라 상이한 추가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아텔스하임 행형시설은 소년교도소의 수감자 중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자의 격리구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감자 수감동 하나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수감자를 위험그룹으로 분류하여 다른 수감자의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있다.¹³¹⁾ 베를린 주의 경우 수감자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때

128)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html>, 최종검색 : 2021.1.12.);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https://www.bzga.de>, 최종검색 : 2021.1.12.); Robert Koch Institut(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nCoV.html, 최종검색 : 2021.1.12.). 본 보고서에 제시된 코로나 감염자 수에 대한 통계는 모두 RKI 자료에서 인용한 것임.

129) Schleswig-holstein Der echte Norden, Coronavirus Informationen für Schleswig-Holstein(<https://www.schleswig-holstein.de/DE/Schwerpunkte/Coronavirus/FAQ/Dossier/Justiz.html>, 최종검색 : 2020.12.29.).

130) 행형시설에서의 코로나 현황 관련 정보 또한 주정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행형시설에 설치된 격리시설에 수용되는데¹³²⁾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수감자를 적당한 위험(그룹 1), 높은 위험(그룹 2), 매우 높은 위험(그룹 3)의 3그룹으로 분류하고¹³³⁾ 그룹 3에 속하는 수감자를 위하여 복귀(Umkehr)-격리구역이 설치되었다.¹³⁴⁾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면회의 금지 내지 제한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년교도소가 변경된 운영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교도관과 수감자는 가능한 한 접촉을 줄여야 하고 가능하다면 1.5미터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 접촉금지 원칙도 모든 시설에서 통용되고 있다. 한 예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아델스하임 행형시설(JVA Adelsheim)은 4월 이후 소년의 가족과 친지의 면회를 임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¹³⁵⁾ 하지만 면회금지를 대신하여 종래 한 달에 한번 허용되던 가족 및 친지와의 전화통화 기회를 더 자주 제공하였고 수감자에게 더 자주 편지를 주고받도록 허용하였으며 스카이프 통화로 면회를 대체하였다. 이후 6월 29일부터 다시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월별 면회시간은 주말이나 휴일 최대 2시간을 포함하여 이전과 같이 매일 4시간 허용되고 면회당 소요 시간은 현재로서는 1시간만 가능하다.¹³⁶⁾ 면회는 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친지와 면회가 허용된 매우 밀접한 사람 1인에게만 허용된다. 면회공간은 판으로 분리된 5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교도관이 감염조치 위반을 방지하고자 눈으로 면회를

131) Rhein-Neckar-Zeitung, Wie Häftlinge mit der strengerer Situation und Besuchsverbot umgehen(https://www.rnz.de/nachrichten/buchen_artikel,-jva-adelsheim-in-corona-zeiten-wie-haeflinge-mit-der-strengerer-situation-und-besuchsverbot-umgehen-_arid,510542.html, 최종검색 : 2020.12.29.).

132) 행형시설에 신입 수감자의 격리와 코로나 감염자 내지 의심사례의 격리조치를 위하여 총 375개의 수용실이 마련되어 있다.

133) 나이가 50세에서 60세/65세 사이면서 흡연하는 자는 그룹 1에, 65세 이상이면서 이미 뚜렷한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자는 그룹 2에, 65세 이상이면서 현재 뚜렷한 중앙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자 기타 나이와 관계없이 급성 면역체계약화를 보이는 자는 그룹 3에 속한다.

134) Berliner Justizvollzug, Parlamentarische Anfragen(<https://www.berlin.de/justizvollzug/service/parlamentarische-anfragen/> (2020년 5월 자료 참조), 최종검색 : 2021.1.12.).

135) Rhein-Neckar-Zeitung, Wie Häftlinge mit der strengerer Situation und Besuchsverbot umgehen(https://www.rnz.de/nachrichten/buchen_artikel,-jva-adelsheim-in-corona-zeiten-wie-haeflinge-mit-der-strengerer-situation-und-besuchsverbot-umgehen-_arid,510542.html, 최종검색 : 2020.12.29.).

136) 이하 아델스하임 행형시설의 면회 관련 내용은 Justizvollzugsanstalt Adelsheim, Besuchsverkehr(<https://jva-adelsheim.justiz-bw.de/pb/,Lde/Startseite/Service/Besucherinfo>, 최종검색 : 2021.1.12.) 참조.

감독하며 신체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면회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간에 시설 당직자에게 가 면회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고 준수사항에 대해 고지를 받아야 한다. 전체 면회시간 동안 화장실로의 출입과 지정된 장소의 이탈은 허용되지 않으며 준수사항의 위반 시 면회가 중단된다. 그 외에 면회를 할 수 없는 수감자에게는 계속해서 매일 2시간의 스카이프 면회가 허용되는데 6월 29일 이후 평일 2번과 주말/휴일 4번의 정해진 시간대에만 가능하다. 베를린 주의 베를린 소년형사시설(Jugendstrafanstalt Berlin)은 3월 17일 이후 면회를 제한, 3월 25일 이후 금지하다가 5월 25일부터 재개하였는데 면회를 위하여 8가지의 예방조치와 규정의 준수가 요구된다.¹³⁷⁾ 여기에는 (1) 시설에 들어서기 전 질병징후 및 감염자와의 접촉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 (2) 수감자의 친지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용 마스크를 수령하고 면회 동안 착용할 것(번호인, 외부 조력자는 마스크를 소지할 것) (3) 면회객을 위한 대기실의 폐쇄 (4) 면회용 책상에는 유리나 플렉시글라스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일부 면회는 분리판이 있는 개별 면회실에서 가능 (5) 기본규정, 위생규정과 간격유지규정을 준수할 것(꼼꼼한 손 씻기나 손 소독, 팔오금 부분에 기침과 재채기하기 및 최소 1.5미터의 간격유지) (6) 신체접촉의 엄격한 금지 (7) 면회는 성인에게 허용되지만 성인이 양육권자로부터 소년형사시설의 면회에 동의를 구한 6살 이상의 아동을 동반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따로 아버지와의 시간이 제공될 것. 또한 16세-18세 소년에 대하여 양육권자의 서면 동의와 증명서 사본의 제출 시 면회를 허용할 것.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면회는 예외적으로만 분리판이 있는 개별 면회실에서 가능 (8) 동일 수용시설에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하여 간격유지규정의 준수를 담보할 것이 해당된다.¹³⁸⁾

모든 교도관과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갖는다. 시설을 방문하여 면회를 하려는 자에게도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시설에 들어서면서(시설에 체류하는 내내) 또는 면회 동안 마스크 착용의무가 부과된다. 바렘-뷔르템베르크 주의 헤어포드 형형시설(JVA Herford)은 면회객이 스스로 마스크를 챙겨오도록 공^지¹³⁹⁾하고 있으나 베를린소년형사시설(Jugendstrafanstalt Berlin)은 면회객에게 의료

137) Berliner Justizvollzug, Jugendstrafanstalt Berlin(<https://www.berlin.de/justizvollzug/anstalten/jugendstrafanstalt-berlin/>, 최종검색 : 2020.12.29.).

138) Berliner Justizvollzug, Jugendstrafanstalt Berlin(<https://www.berlin.de/justizvollzug/anstalten/jugendstrafanstalt-berlin/>, 최종검색 : 2020.12.29.).

139) Justiz-Online, Besucher-Infos, Informationen zur Besuchsregelung der JVA Herford

용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다.¹⁴⁰⁾

시설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수감자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나 시설 내 공간의 이용이 금지 내지 제한되는 조치가 다수의 시설에서 취해졌지만 코로나의 확산이 감소하면서 다수의 시설에서 이러한 제한조치들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튀링엔 주의 운터마스펠드 행형시설(JVA Untermaßfeld)에서는 4월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엌, 수용실(감옥)과 빨래방과 같은 공동공간의 사용을 제외하고 작업장 운영과 직업훈련, 외부 공간에서의 체류와 개방 등과 같은 모든 행형조치가 전체 수감자들에게 중단되었다.¹⁴¹⁾ 또한 시설 내부영역에서 모든 교도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가지며 보호복이 추가로 주문되었다. 9월에는 토나 행형시설(JVA Tonna)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여 수감자의 작업장 운영과 직업훈련이 중단되었다.¹⁴²⁾ 쉘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경우 수감자에게 교도관이 동행하는 외출을 허용하고 단독외출도 원칙적으로 다시 가능하다.¹⁴³⁾ 수감자는 사전에 지켜야 할 간격유지명령과 위생예방조치에 대해 교육을 받고 복귀하면 격리요건에 따라 출입구역(격리구역)에 수용된다. 5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던 학교와 직업 관련 교육 공간과 실습공간은 코로나 위생규칙의 준수를 위해 수용인원의 제한을 두고 7월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능한 많은 수감자의 시설이용을 위하여 일부 시간제 실습(실습의 제한)이 제공된다. 또한 스포츠 활동과 기타 자유 시간 활동이 수감자에게 허용되고 설문에 따라 TV와 라디오 이용이 가능하다. 중독 상담, 채무상담 등을 위한 조치와 같은 처우방안이 다시 정규적으로 행해진다.¹⁴⁴⁾

(<https://www.jva-herford.nrw.de/infos/index.php>, 최종검색 : 2020.12.29.).

140) Berliner Justizvollzug, Jugendstrafanstalt Berlin(<https://www.berlin.de/justizvollzug/anstalten/jugendstrafanstalt-berlin/>, 최종검색 : 2020.12.29.).

141) Freistaat Thüringen, MInisterium für Migration,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Bestätigte Corona-Infektionen in JVA Untermaßfeld(<https://justiz.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rmationen/detailseite/bestaetigte-corona-infektionen-in-jva-untermassfeld> (최종검색 : 2021.1.12.).

142) Freistaat Thüringen, MInisterium für Migration,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Positiver Corona-Test bei zwei Bediensteten der JVA Tonna und bei einem weiteren Bediensteten der JSA Arnstadt(<https://justiz.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rmationen/detailseite/positiver-corona-test-bei-zwei-bediensetzten-der-jva-tonna-und-bei-einem-weiteren-bediensetzten-der-jsa-arnstadt> (최종검색 : 2021.1.12.).

143) Schleswig-holstein Der echte Norden, Coronavirus Informationen für Schleswig-Holstein (<https://www.schleswig-holstein.de/DE/Schwerpunkte/Coronavirus/FAQ/Dossier/Justiz.html>, 최종검색 : 2020.12.29.).

144) Schleswig-holstein Der echte Norden, Coronavirus Informationen für Schleswig-Holstein

나. 시설 내 처우인 소년구금시설

코로나의 확산으로 슐레스비히-홀스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작센-안할트 주는 소년구금의 집행을 연기하였다.¹⁴⁵⁾ 이후 코로나 감염자 수의 추이가 안정화되면서 소년구금시설이 다시 운영되고 있다. 베를린 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소년구금시설(Jugendarrestanstalt Berlin-Brandenburg)은 3월 17일 이후 브란덴부르크 사법부와의 합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소년구금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3월 22일 소년구금시설에 있던 소년 19명과 소녀 1명을 석방하였다.¹⁴⁶⁾ 현재 청결한 손 위생(규칙적인 꼼꼼한 손 씻기) 유지하기, 팔오금 부분에 기침과 재채기하기 및 최소 1.5미터의 간격유지를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이행중이다.¹⁴⁷⁾ 시설에 들어서는 모든 자는 시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를 갖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회가 거부될 수 있다. 피구금자는 시설에 체류하는 동안 해당 위생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입소 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바이에른 주 행형시설에서는 코로나가 발현한 초반에 신입 수감자의 축소와 행형시설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소년구금과 6개월 미만의 자유형 또는 대체자유형을 이행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시설수용이 집행되지 않았다.¹⁴⁸⁾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수감자 수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0,087명이었는데 36개의 바이에른 행형시설의 전체수용 규모가 동일 기준일 당시 11,982명인 점에 비추어 약 16%의 여유 공간이 있었다. 6월 중순 이후 소년구금과 6개월 미만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이 다시 행해졌고 8월 중순에 대체자유형의 집행도 개시되었다.¹⁴⁹⁾

(<https://www.schleswig-holstein.de/DE/Schwerpunkte/Coronavirus/FAQ/Dossier/Justiz.html>, 최종검색 : 2020.12.29.).

145) Zdf heute, Wie Corona das Leben im Gefängnis verändert(<https://www.zdf.de/nachrichten/panorama/coronavirus-gefaengnis-kontakt-einschraenkung-100.html>, 최종검색 : 2020.12.29.).

146) Senatsverwaltung für Verbraucherschutz und Antidiskriminierung, Corona: Justizvollzug entlastet Mitarbeitende und schafft Personalreserven(<https://www.berlin.de/sen/justva/presse/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908021.php>, 최종검색 : 2020.12.29.).

147) Berliner Justizvollzug, Jugendarrestanstalt Berlin-Brandenburg(<https://www.berlin.de/justizvollzug/anstalten/jugendarrestanstalt-berlin-brandenburg/>, 최종검색 : 2020.12.29.).

148)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Corona-Informationen(<https://www.justiz.bayern.de/justizvollzug/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149)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Corona-Informationen(<https://www.justiz.bayern.de/justizvollzug/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다. 중간처우인 소년주거시설/소년하임

1995년 3월 이후 브란덴부르크 주 사법부와 연방 가족, 노인, 여성과 소년부의 재정으로 사법처우과정 비행소년에게 대안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인 프로스텐발데 소년 지원기관(Jugendhilfeeinrichtung Frostenwalde des Evangelischen Jugend- und Fürsorgewerkes)은¹⁵⁰⁾ 현재 계획되었던 세미나 중 일부를 안전을 위하여 연말까지 취소하면서 온라인 세미나 기타 소수만이 참여하는 발표행사를 제공한다.¹⁵¹⁾ 행사가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현행 규정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참가자들 간의 최소 1.5미터 간격유지나 명확한 자리배치의 제공, 참여자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강연자는 규칙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감기증상이 있는 자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그룹 활동 중 이상이 있는 자는 강연자에게 문의한다. 1980년 이후 쾰른시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재정으로 소년법원법에 의하여 특히 폭력성향이 높은 비행소년을 위한 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부르케 쾰른(Brücke Köln e.V.)은¹⁵²⁾ 현재 다시 종전대로 운영 중이다.¹⁵³⁾ 하지만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의무, 소년 혼자만 출입, 동반인의 외부 대기, 동시에 최대 4인까지 대기실 이용 가능이라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8년 이후 튀링엔 주에서 사법처우과정에 있는 비행소년의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동물매개치료, 마약예방, 분노조절 프로젝트, 연극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인 Wendepunkt e.V.)은¹⁵⁴⁾ 4월 중순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보호학교 프로젝트, 그룹활동이나 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취소하였으나 긴급상황에 처한 자의 상담은 유지하였다.¹⁵⁵⁾ 7월 중순 이후에는 봉쇄 상황에서 비디오-팟캐스트,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¹⁵⁶⁾

150) 유명재, 위 논문, 87쪽.

151) Jugendhilfeeinrichtung Frostenwalde des Evangelischen Jugend- und Fürsorgewerkes (EJF), Über Uns(<https://www.ejf.de/ueber-uns/unternehmensverbund-ejf/ejf-ev.html>, 최종검색 : 2020.12.29.).

152) 유명재, 위 논문, 88쪽.

153) Brücke Köln e.V., Aufgaben(<http://www.bruecke-koeln.de/index.php?menuid=14>, 최종검색 : 2020.12.29.).

154) 유명재, 위 논문, 89쪽.

155) Wendepunkt e.V., Geschichte, 25 Jahre Wendepunkt e.V. - Wurzeln und Entwicklungen (<https://www.wendepunkt-ev.de/ueber-uns/>, 최종검색 : 2020.12.29.).

156) Wendepunkt e.V., Weiterhin erreichbar für Menschen in Not(<https://www.wendepunkt-ev.de>).

라.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하여 준수사항이나 부담 등의 이행과 연계한 보호관찰의 운영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회복지, 형사법, 형사정책 전문연합회(DBH-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⁵⁷⁾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보호관찰/사법보조/가해자-피해자-조정인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접촉은 전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판사의 준수사항의 이행과 같이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때에만 개인 간 접촉이 허용된다. 업무사무소를 폐쇄하고 계획된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접촉만 허용된다. 베를린 주의 보호관찰/사법보조/가해자-피해자-조정인에서는 시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 간 대면접촉은 사전예약을 하고 위생규칙을 준수하면서 행해진다. 모든 사법부 사회복지 업무의 현재 상황(알림)에 추가로 통상 업무시간 동안 개인이 사법보조와 보호관찰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대표 전화번호와 대표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는 관할관청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접촉과 지시/명령 기관과의 접촉은 현재 보통 전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이루어진다. 자란트 주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와 네트워크 파트너와의 접촉은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업무사무소 외부에서 개인 간 접촉이 허용된다. 보호관찰관은 서면보고가 충분하지 않은 때 심리 기일을 지켜야 하고 모든 업무사무소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한다.¹⁵⁸⁾

de/aktuelles/wendepunkt-e-v-weiterhin-erreichbar-fuer-menschen-in-not/, 최종검색 : 2020.12.29).

157) DBH-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Auswirkungen des Coronavirus in der Justiz(<https://www.dbh-online.de/aktuelles/auswirkungen-des-coronavirus-der-justiz>, 최종검색 : 2020.12.29).

158) DBH-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Auswirkungen des Coronavirus in der Justiz(<https://www.dbh-online.de/aktuelles/auswirkungen-des-coronavirus-der-justiz>, 최종검색 : 2020.12.29).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가. 감염예방법(Infektionsschutzgesetz)상의 예방조치(Schutzmaßnahmen)

독일의 코로나 19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는 감염예방법(Infektionsschutzgesetz)에서 출발하는데 동법은 인간 사이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이러한 감염병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며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법이다. 각 주는 감염예방법 제16조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한에서 법규명령으로 전염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일반 조치와 특별조치를 정할 수 있고, 각 주의 보건청(Gesundheitsamt)은 감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주체(동법 제2조 제14호)가 된다.¹⁵⁹⁾ 동법 제28조 제1항은 관할관청이 예방조치로서 다수인의 집회 및 기타 모임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고 수영장 시설이나 제33조에 열거된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관할관청은 예방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특정지역을 이탈하거나 특정지역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 주정부는 동법 제28조에서 제31조에 따른 요건 하에서 법규명령으로 전염성 질병의 방지를 위한 명령과 금지조치를 발령할 수 있고, 법규명령으로 다른 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양도할 수 있다(동법 제32조).¹⁶⁰⁾

나. 행형시설에 적용되는 위생계획(Hygieneplan)

특정 시설, 계획, 사람의 감염예방에 관한 감염예방법 제36조 제1항은 행형시설(제6호)에 대하여 위생계획과 감염위생에 대한 내부절차체계를 확정하고 보건청을 통하여 감염위생의 감독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형시설은 보건청과 RKI의 원칙에 따르는 고유한 유행병계획(Pandemieplan)을 갖고, 보건청의 동의를 요하는

159) 윤진아,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18(4), 255-288면, 2018.

160)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BGBl. I S. 1045). 2000년 7월 20일에 공포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으로 2020년 11월 18일 제3차 국가적 감염병 상황에서의 국민보호를 위한 법률(Drittes Gesetz zum Schutz der Bevölkerung bei einer epidemischen Lage von nationaler Tragweite Vom 18. November 2020)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BGBl. I S. 2397, 2405).

필요한 조치를 위해 그때그때 관할 보건청에 문의한다.¹⁶¹⁾

독일의 모든 16개 주는 고유한 인플루엔자-유행병계획을 정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는 2020년 2월 15일 자 인플루엔자-유행병 기본계획(Bayerischer Influenzapandemieplan, Stand: 15.02.2020)을 통해 코로나 유행병에 대처하고 있다. 2005년 당시 바이에른 주 환경, 건강, 소비자보호부는 인플루엔자 전염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인플루엔자유행병-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조치는 모든 감염병, 즉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감염에도 적용된다. 당시 모든 바이에른의 행정시설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권고사항에 유념하고 감염예방물질의 조달이나 감염자와 의심사례의 분리수용을 위한 건물의 개조조치 등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⁶²⁾¹⁶³⁾

동 계획상 감염위생조치에 대한 절은¹⁶⁴⁾ 크게 국가 유행병계획(Nationaler Pandemieplan)의 내용과 감염위생조치의 역학적, 바이러스학상 토대로 나뉘며 후자는 조직적, 법적 관점에서 감염위생조치 관련 기관의 역할과 근거법규에 대한 내용과 감염위생조치와 그 적합한 투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감염위생조치와 그 투입에 관한 내용은 일반 감염위생조치¹⁶⁵⁾, 개인 공간, 공공장소, 업무 공간, 의료와 간호 분야, 공동체시설, 여행교통에서의 감염위생조치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공동체시설 하에서 행정시설에서의 위생계획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생계획에는 인플루엔자

161) 이외에도 (청소년) 방학 야영지와 같은 공동체시설(제2호), 제23조 제5항 제1문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 장애우나 간호를 요하는 자를 위한 전부외래시설 내지 부분외래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제3호), 노숙자피난처, 망명자, 강제출국 의무자, 도주자와 이주민시설(제4호), 기타 집단피난처 시설(제5호),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업무를 제공하고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준하는 업무가 아닌 사회법 제8편 제45a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일상지원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는 제23조 제5항 제1문에 해당하지 않는 이동 간호업무와 계획도 적용된다.

162) Robert Koch Institut, Pandemiepläne der Bundesländer(https://www.rki.de/DE/Content/InfAZ/1/Influenza/Pandemieplanung/Pandemieplaene_Bundeslaender.html, 최종검색 : 2020.12.29.). 주별 인플루엔자유행병-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는 RKI 참조.

163) 바이에른 주, 2020년 2월 15일 자 인플루엔자-유행병 기본계획(Bayerischer Influenzapandemieplan(<https://www.stmgp.bayern.de/wp-content/uploads/2020/02/influenza-bayern.pdf>, 최종검색 : 2020.12.29.).

164) 동 계획은 1. 목적과 기본요건 2. 질병발생의 관찰 3. 인플루엔자 진단 4. 감염위생조치 5. 의료제공 6. 백신 7. 항바이러스성 의약품 8. 기업, 행정 및 비의료 분야에서의 유행병계획 9. 소통, 언론업무와 공개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165) 일반 감염위생조치로 접촉제한 조치, 일반 위생계획의 준수와 꼼꼼한 손씻기 및 규칙적인 환기를 포함하는 행동조치, 방호복(개인의 보호장비), 손소독과 공간소독을 포함하는 소독과 세정조치, 기타 위생감염조치(신고체계, 진단, 정보와 소통, 백신과 항바이러스성 의약품)을 제시하고 있다.

유행병의 시나리오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과 기본위생계획 및 설명서에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적용된다.¹⁶⁶⁾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바이에른 주의 모든 36개 행정시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전 개별 유행병계획을 업데이트 하였다.¹⁶⁷⁾ 그리고 예방조치와 위생조치를 취하고, 보호 장비와 소독제를 비축한 외에 모든 행정시설 공무원에게 재사용가능한 마스크를 배포하였다. 교도관과 수감자는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고, 최소 1.5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안전 관련한 상황에서 수감자는 수색을 받아야 한다. 각 시설의 건물구조(복도의 폭, 수용실 크기)의 측면에서 최소간격을 철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건물구조를 가시적인 시간 내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도관과 수감자는 현재 시설의 모든 통행공간과 만남의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갖는다. 그 외에 모든 신입 수감자는 코로나 감염이 퇴치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2주간 다른 수감자와 분리 수용된다.¹⁶⁸⁾

다. 소년하임에 적용되는 감염예방법 제36조에 따른 기본위생계획

감염예방법 제36조 제1항은 유치원,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하임(거주시설)(제1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 기관별로 위생계획을 정립하였다. 일례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2004년 감염예방법 제36조에 따른 아동,소년지원시설(아동, 소년하임, 돌봄 주거그룹 등) 기본위생계획(Rahmen-Hygieneplan gemäß § 36 Infektionsschutzgesetz für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Kinder- und Jugendheime, betreute Wohngruppen u. ä.)¹⁶⁹⁾은 위생관리, 기본위생, 감염예방법상의 요구사항, 생물원료 법규명령(Biostoffverordnung)에 따른 요구사항, 선택된 질병

166) 위 각주 163에서 인용된 문서의 48쪽 참조.

167)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Corona-Informationen(<https://www.justiz.bayern.de/justizvollzug/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168)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Corona-Informationen(<https://www.justiz.bayern.de/justizvollzug/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169)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2004년 감염예방법 제36조에 따른 아동,소년지원시설(아동, 소년하임, 돌봄 주거그룹 등) 기본위생계획, Rahmen-Hygieneplan gemäß § 36 Infektionsschutzgesetz für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Jugendheime, betreute Wohngruppen u. ä.)(http://service.mvnet.de/_php/download.php?datei_id=46558, 최종검색 : 2020.12.29.).

의 발생 시 기타 조치와 언론과의 소통으로 구성된다. 동 위생계획에 따른 위생관리 책임은 시설 운영자에게 있으며 위생계획은 매년 업그레이드, 검사, 변경되어야 한다. 기본위생 절은 사상균 감염의 즉시 제거 등을 포함하는 현 위치, 건물, 공간, 설비에 대한 위생요건을, 규칙적인 세정, 소아나 젓먹이 양육 공간, 공동체 탕비실 등의 일상적인 소독, 피나 대소변 등으로 인한 오염 시의 계획적인 소독, 소독물품 및 세정과 소독계획의 구비 등의 세정과 소독을 포함한다. 또한 생활용품의 사용수칙, 쓰레기처리나 동물사육, 수돗물, 놀이용 모래, 독성식물로 인한 위험방지 등의 기타 위생 요구 사항, 응급처치도 기본위생 절에서 제시된다.¹⁷⁰⁾

라. 보호관찰에 적용되는 독일 보호관찰관 노동조합의 업무지침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보호관찰 운영지침으로 독일 보호관찰협회(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Bewährungshelferinnen und Bewährungshelfer)가 보호관찰관의 업무상황과 관련하여 3월 17일 발표한 대응조치를 들 수 있다.¹⁷¹⁾ 이에 따르면 아동을 담당했던 보호관찰관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보호관찰관도 업무에서 면제되고, (허용된다면) 면담시간과 법정기일에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본업무시간은 전화연결이 보장된 홈 오피스에서도 가능하다. 인력의 비축과 탄력적인 업무시간에 대해 업무영역에서 협의결정 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장(대표)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접촉과 면담시간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화로만 이루어지는데 전화접촉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행해져야 한다. 집의 방문은 가능한 피해야 하고, 노동급부의 제공은 유예되며, 가해자-피해자-조정사의 사전 대화와 조정대화는 가능하다면 부활절 이후까지 연기된다. 네트워크 파트너와의 상담은 최소한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법원과 검사는 이러한 조치에

17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2004년 감염예방법 제36조에 따른 아동, 소년지원시설(아동, 소년 하임, 돌봄 주거그룹 등) 기본위생계획, Rahmen-Hygieneplan gemäß § 36 Infektionsschutzgesetz für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Jugendheime, betreute Wohngruppen u. ä.)(http://service.mvnet.de/_php/download.php?date_id=46558, 최종검색 : 2020.12.29.).

171) Justiz-online, Fachbereich Bewährungshilfe(https://www.justiz.nrw.de/Gerichte_Behoerden/ordentliche_gerichte/Strafgericht/dienste/Bewaehrungshilfe_1/index.php, 최종검색 : 2020.12.29.).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이후 독일 보호관찰관 노동조합을 통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각 주는 감염예방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의 위생계획 외에 감염예방법 제32조를 근거로 코로나 예방조치를 주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다. 각 주의 법규명령은 코로나 확산현황의 차이와¹⁷²⁾ 지역적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다. 코로나 확산 초기 독일 전역에서 봉쇄조치가 취해졌던 것과는 달리 그간 연방과 주는 예방조치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대응해 왔지만¹⁷³⁾ 연방과 주정부 부는 10월 중순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코로나 현황에 따라 11월 2일부터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19일 이후부터 준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 조치의 강화는 11월 18일 자 감염예방법 개정을 통하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각 주는 최근 한시적으로 유효한 준 봉쇄조치를 포함하는 법규명령을 개정하고 있다.¹⁷⁴⁾ 11월 27일

172)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주별 코로나 감염자 현황을 보면 상위 3개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50,884명, 바이에른 197,988명, 바덴-뷔르템베르크 142, 878명이고, 하위 3개주는 작센-안할트 11,293명, 브레멘 9,758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5,697명이다.

173) Zeit Online, Wo man in Deutschland jetzt übernachten darf(<https://www.zeit.de/gesellschaft/2020-10/corona-regeln-deutschland-maskenpflicht-veranstaltungen-buero-bundeslaender-uebersicht>, 최종검색 : 2020.12.29.). 예를 들어 물품 구매 시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등과 같은 조치는 연방 전체에서 통용되지만 숙박금지,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의 벌금,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 등과 같은 다수의 규정은 주마다 상이하다.

174)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 von Berlin - Senatskanzlei, SARS-CoV-2-Infektionsschutzmaßnahmenverordnung Inhaltsverzeichnis(<https://www.berlin.de/corona/massnahmen/verordnung/>, 최종검색 : 2020.12.29.). 예를 들어 베를린 주 제12차 코로나-감염예방법규명령 개정 법규명령(Zwölf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SARS-CoV-2-Infektionsschutzverordnung vom 17. November 2020)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Achte Verordnung über Maßnahmen zur Eindämmung der Ausbreitung des neuartigen Coronavirus SARS-CoV-2 in Sachsen-Anhalt(https://coronavirus.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Geteilte_Ordner/Corona_Verordnungen/Dokumente/3_AEVO_Achte_SARS-CoV-2-EindV-Lesefassung_27112020_nachKabinett.pdf, 최종검색 : 2020.12.29.). 작센-안할트 주 제8차 신형 코비드 19의 확산방지조치 법규명령(Achte Verordnung über Maßnahmen zur Eindämmung der Ausbreitung des neuartigen Coronavirus SARS-CoV2 in Sachsen-Anhalt Vom Oktober 2020)은 11월 27일에 최종 개정되어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Thüringer Verordnung zur Fortschreibung und Verschärfung außerordentlicher Sondermaßnahmen zur Eindämmung einer sprunghaften Ausbreitung des Coronavirus SARS-CoV-2 sowie zur Ergänzung der allgemeinen Infektionsschutzregeln Vom 14. Dezember 2020(<https://corona.thueringen.de/verordnungen>, 최종검색 : 2020.12.29.). 튀링엔 주의 11월 29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한 확산의 저지를 위한 비상 특별조치의 추가와 조정 법규명령(Thüringer Verordnung zur Fortschreibung und Anpassung außerordentlicher Sondermaßnahmen

현재 타인과의 접촉의 절대적 최소화, 해외여행 자제, 재택근무 권고, 12월 20일까지 음식점, 문화·체육시설 등의 운영금지의 연장, 제한조치와 함께 도/소매상 등 식료품점과 일반상점의 경우 영업 가능, 가능한 주중에 크리스마스 쇼핑 권고,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접촉제한조치의 완화 혹은 강화 가능(기준: 10만 명당 50명/200명)을 포함하는 접촉제한 조치, 12월 1일부터 다소 강화되는 조치, 크리스마스 기간(2020.12.23~2021.1.1) 한시적 접촉제한 완화 및 관련 조치, 학교와 유치원 개방 유지 등의 조치가 통용되고 있다.¹⁷⁵⁾

11월 30일 현재 본 보고서에서 인용된 자료를 비롯하여 기타 각 주정부와 개별 시설에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코로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년보호기관의 운영상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았다. 우선 작센 주의 드레스덴 행형시설은 11월 10일 이후 시설에의 출입과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¹⁷⁶⁾ 베를린 주에서는 11월 3일에서 2021년 1월 4일까지 예를 들어 불법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대체자유형의 집행이 2개월간 유예된다.¹⁷⁷⁾ 니더작센 주 사법부도 수용시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11월 5일 이후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수감자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¹⁷⁸⁾ 그 외에 튀링엔 주 이민, 사법, 소비자보호부는 11월 26일 행형시설에서의 잠재적인 감염위험 때문에 교도관에 대한 우선적인 백신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⁷⁹⁾ 이러한 행형시설의 운영상 변경사항 외에

zur Eindämmung einer sprunghaften Ausbreitung des Coronavirus SARS-CoV-2)은 12월 20일까지 유효하다.

175) Der Beschluss von Bund und Ländern zur Bekämpfung der Corona-Pandemi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uerokratieabbau/bund-laender-beschluss-1805264>, 최종검색 : 2020.12.29.).

176) Justizvollzugsanstalt Dresden, Aktuelle Informationen zum Zutritt zur Justizvollzugsanstalt Dresden(<https://www.justiz.sachsen.de/jvadd/>, 최종검색 : 2020.12.29.).

177)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Verbraucherschutz und Antidiskriminierung, Coronavirus Covid-19 Aktuelle Informationen(<https://www.berlin.de/sen/justva/presse/informationen-zu-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178) Niedersächsisches Justizministerium, Informationen zum Umgang mit dem Corona-Virus in der Justiz(https://www.mj.niedersachsen.de/startseite/aktuelles/corona_virus/fragen_und_antworten/informationen-zum-umgang-mit-dem-corona-virus-in-der-justiz-186310.html, 최종검색 : 2020.12.29.).

179) Freistaat Thüringen, MInisterium für Migration,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Impfungen für Vollzugsbedienstete mit Priorität <https://justiz.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rmationen/detailseite/impfungen-fuer-vollzugsbedienstete-mit-prioritaet>(최종검색: 2021.1.12.).

소년구금시설, 보호관찰, 소년하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과 주의 준 봉쇄조치가 코로나 감염자수의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독일 내 총 코로나 감염자수는 11월 27일을 기준으로 1백만 명을 넘었고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46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였다.¹⁸⁰⁾ 이에 비하여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코로나 감염자수는 그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시설의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시설 내 처우든, 중간처우든, 사회 내 처우든 개별 위생계획에 따른 위생조치 및 감염예방조치가 준수되어 현행대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개인 간 접촉 금지 내지 제한의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특히 시설 내 처우의 경우 현재 제한된 면회시간에 분리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해지는 면회가 향후 코로나 감염자의 증가를 이유로 금지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예상될 수 있다. 또한 수용시설 내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동 활동에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이상에서 코로나 19가 독일의 소년보호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설 내 처우인 소년교도소나 소년구금시설이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이든, 중간처우인 소년하임이든 모든 개별 시설은 감염예방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감염예방조치와 내부절차체계를 포함하는 위생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상으로 볼 때 이러한 위생계획은 주차원에서 유행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립한 큰 틀인 유행병(기본)계획의 일부이다. 개별 시설이 고유한 위생계획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코로나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리유지, 접촉의 제한 내지 금지, 규칙적인 세정과 소독 등의

180)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유럽 질병예방과 통제센터(ECDC)는 독일의 준 봉쇄조치가 성탄절 전까지 감염 정책을 진정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Frankfurter, EU-Behörde zweifelt an Deutschlands Corona-Maßnahmen: „Es gibt neun Länder, in denen wir vorhersagen, dass ...“(<https://www.fnp.de/deutschland/coronavirus-deutschland-lockdown-prognose-analyse-ecdc-eu-zweifel-infektionen-trend-kritik-zr-90110622.html>, 최종검색 : 2020.12.29.).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Updated projections of COVID-19 in the EU/EEA and the UK(<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covid-19-updated-projections-november-2020>, 최종검색 : 2020.12.29.).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서는 개별 주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접촉은 전화접촉만을 허용할 것인지, 개인 간 접촉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업무사무소의 운영은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상이하다. 소년교도소와 소년구급시설의 운영은 특히 면회의 제한 내지 금지조치나 시설 내에서의 공동생활이나 집행완화조치에 있어서 시설 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가 급증하던 3, 4월 면회나 집행완화조치 등이 금지 내지 제한되었다가 코로나 확산이 감소하던 시기인 5월 중순 이후 다시 면회가 제한조치와 함께 허용되고 집행완화조치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변화는 시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설마다 해당 조치의 투입 내지 변화시기에서 뿐만 아니라 면회 방식, 면회 외에 전화통화 허용 시간 내지 횟수, 집행완화조치의 허용범위 등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소년하임은 시설에 따라 일부 제한조치를 수반하여 종전대로 운영하기도 하는 반면 코로나 확산 이후 운영 프로그램을 크게 줄이고 온라인이나 비디오 등의 다른 매체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공동체시설로, 특히 시설 내 처우를 집행하는 시설은 폐쇄된 공동체시설로 코로나로 인한 집단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의 시설의 출입, 시설 내에서의 개인 간 접촉, 마스크 착용, 개인의 손과 시설 공간의 소독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 하는 상황에서 더욱 경계가 요구된다. 또한 연방보건부가 연내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구체화¹⁸¹⁾하는 데 있어 특히 소년교도소 교도관을 의료분야 종사자에 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81) Bundesgesundheitsministerium, Spahn: "Bin zuversichtlich, dass die Pandemie in einigen Monaten ihren Schrecken verliert."(<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presse/interviews/interviews/rnd-231120.html>, 최종검색 : 2020.12.29.).

제4절 | 일본

1. 일본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일본의 경우 시설 내 처우에 관한 연구 및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선행연구가 각각 독자적으로는 잘 정리되고 집적되어 있으나, '시설로부터 사회로'라는 연속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적 관할 및 담당기관의 차이 등의 현실적인 요건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가운데 소년에 대하여 소년의 미래, 장애성을 이유로 '시설로부터 사회로'의 중요성 인식 및 실현을 위해 소년보호와 관련한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해왔다. 간략한 경과로는 2014년 「소년원법」개정 및 2015년 「소년감별소법」의 제정, 2016년 「재범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정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근거 하에 다기관의 협력가운데 소년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용을 계속해서 시도해오고 있다.¹⁸²⁾

일본의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는 시설 내 처우와 보호관찰인 사회 내 처우로 구분된다. 소년원은 가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는 법무성 소관 시설로, 재원자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정교육 및 그 외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처우를 실시하여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12세-20세¹⁸³⁾ 까지(가정재판소의 결정 등에 따라 계속 수용 가능) 수용하며, 16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년원에는 범죄적 경향 및 심신 장애의 유무 등에 의해 제1종부터 제4종까지 분류되어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⁸⁴⁾ 제1종은 보호처분의 집행을 받는 자로서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12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고, 제2종은 보호처분의 집행을 받는 자로서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없는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사람이며, 제3종은 보호처분의 집행을 받는 자로서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12세 이상 26세 미만의 사람이고, 제4종은 소년원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 자이

182) 본 절에서의 법률명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일본의 법률명을 의미한다.

183) 한국과 달리 일본 소년법은 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보고 있다(소년원법 제2조 제1항).

184) 少年院のしおり, 法務省矯正局 1면([http://www.moj.go.jp/content/00122169 .pdf](http://www.moj.go.jp/content/00122169.pdf), 최종검색 : 2020.12.29).

다.¹⁸⁵⁾

사회 내 처우인 소년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비행이 있는 소년이 실제 사회 속에서 건전한 일원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통상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관 및 보호사가 '지도감독' 및 '보호원호'를 실시한다.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보호관찰이 부과된 소년(보호관찰처분 소년), 소년원으로부터의 가(假)퇴원이 허가되어 보호관찰이 부과된 소년(소년원 가퇴원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¹⁸⁶⁾ 보호 관찰중의 소년에게는, 「준수 사항」을 지킬 의무가 부과되며, 준수사항은 건전한 생활태도를 유지할 것,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사의 호출·방문에 응할 것,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는 것 등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일반 준수사항'과 그 사람의 문제성에 따라 정해지는 「특별 준수 사항」이 있다. 위반 시에는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¹⁸⁷⁾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 처분 소년에 대해서는 20세까지 또는 2년간으로 긴 편이며, 소년원 가퇴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세에 달할 때까지이다. 단, 보호관찰을 계속하지 않아도 확실히 갱생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호관찰 처분 소년은 보호관찰소장의 판단에 의한 '해제', 소년원 가퇴원자는 지방갱생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퇴원'이라는 조기 종료 조치가 취해지고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일본 소년보호관찰의 특색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된 역할은 보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사는 대다수가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자이다. 보호관찰관과 보호사 양자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갖는 전문성과 보호사가 갖는 지역성·민간성을 결합시켜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¹⁸⁸⁾

185) 保護觀察・少年院送致となった生徒の復学・進学に向けた支援について, 法務省矯正局・保護局, 13면(http://www.moj.go.jp/kyousei1/kyousei_kyouse04.html, 최종검색 : 2020.12.29).

186) 法務総合研究所, 令和2年版 犯罪白書, 110면, 2020.

187) 保護觀察・少年院送致となった生徒の復学・進学に向けた支援について, 法務省矯正局・保護局, 8면(http://www.moj.go.jp/hogo1/soumu/hogo_hogo01.html#01, 최종검색 : 2020.12.29).

188)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hisho/seisakuhyouka/hisho04_00040.html, 최종검색 : 2020.12.29).

▶▶ <표 4-12> 보호관찰관과 보호사의 역할

보호관찰관의 역할	보호사 ¹⁸⁹⁾ 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의 실시계획 책정 •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재범, 기타 위기 상황에 서의 조치 • 담당보호사에 대한 조언이나 방침의 협의 •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의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와의 일상적인 면접에 의한 조언, 지도 • 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상담에 대한 조언 • 지역의 활동이나 취업처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동행 등

2. 코로나 19가 일본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일본 교정국의 대응은 주로 전문가 지견을 정리하여 완성한 법무성의 ‘교정시설의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방지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의 책정 및 ‘정부 방침에 따른 교정시설 운영의 검토’ 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오사카구치소를 비롯하여 도쿄, 교토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과 오사카 보호관찰소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대처현황 및 가상 감염방지 훈련 실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 각 교정시설의 코로나 19 대처 현황

1) 오사카구치소의 대처 현황

오사카구치소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결과와 대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⁹⁰⁾

189) 일본 보호사의 정원은 전국 52,500명이며, 실제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 이후 4만 8천 명을 밑돌고 있다. 日本更生保護協會(<https://www.kouseihogo-net.jp/hogoshi/condition.html>, 최종검색 : 2020.12.29).

190) 細川隆夫, 西岡慎介, 앞의 논문, 26-28면.

▶▶ <표 4-13> 오사카구치소의 대처 현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04.05. - 오사카 구치소에서 교도관 1명 감염 판명 • 2020.04.06. - 법무대신이 '법무성 위기관리 전문가회의'를 설치 및 개최하고 오사카구치소의 현황 및 향후 감염확대방지책,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코로나 19 대책 논의 • 2020.04.06. - 교정국 총무과장, 성인교정과장, 소년교정과장 연명통지(이하 '3과장 통지') 「신형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선언이 발효된 경우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하여」를 통지 • 2020.04.07. - 7개 도도부현에 긴급사태선언이 통지되고, 16일 전국 도도부현으로 확대됨 대상지역인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카나가와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에 있는 교정시설 및 교정연수소에서는 3과장통지에 근거하여 출근직원의 시차출퇴근, 무도훈련 등 중지, 이송 중지, 형무작업 중지 및 청사관리권에 근거한 면회소 입회규제 등 실시 • 2020.04.06. - 오사카 구치소에서 2,3번째 교도관 코로나 19 확진 판정 • 2020.04.11. - 오사카 구치소에서 4번째로 교도관이 감염됨과 동시에 도쿄 구치소에서 처음으로 피수용자 1인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¹⁹¹⁾됨 • 2020.04.13. - '교정시설 감염방지 TF¹⁹²⁾'(이하 TF)는 법무대신 결정으로 전문가회의 산하에 설치 • 2020.04.14. - 오사카구치소 : 5번째, 15일 6번째 및 7번째, 16일 8번째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 2020.04.14. - 제1회 TF : 오사카구치소 직원 감염사안 및 도쿄구치소 피수용자 감염사안에 대한 개요보고 • 2020.04.15. - 츠키가타 형무소 직원 1명 감염 • 2020.04.16. - 이후 교정국에서는 1/2인원이 재택 근무하는 등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의 업무계속을 위한 위기관리 출퇴근 체제 운영 • 2020.04.20. - 법무부 부대신과 현장시설(요코하마형무소, 도쿄구치소, 요코하마소년감별소)간의 의견 교환회 • 2020.04.22. - 제2회 TF : 교정국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인식조사, zoning(ゾーニング)¹⁹³⁾ 방법 연구, 가이드라인 최종안 작성 • 2020.04.27. - 제3회 TF :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감염증 감염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28일 제1호 교정국장 통지로서 통지 • 2020.06.03. - 법무성 제2호 교정국장 통지-가이드라인 개정 제2판¹⁹⁴⁾ 발행

191) 이 피수용자는 4월 8일 입소 시에 같은 달 1일 경부터 발열 등 증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간 해열제 등을 복용해왔던 것을 알렸기에 단독실(감염증병실)에 수용하고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11일에 양성인 것이 판명되었다.

192) '교정시설 감염방지 TF'는 법무대신 결정으로 전문가회의 산하에 설치(주된 취지는 감염사안이 발생한 교정시설의 위기관리 상 대응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교정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코로

피수용자 처우를 소관 하는 형사시설 입장에서의 최대 우려사항은, 감염의심 있는 직원 및 피수용자 발생 시 자택대기조건 및 경과관찰을 하는 직원 및 피수용자의 범위와 복귀 조건이 애매하여 그 결과 적절한 시설운영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시설 현장에서의 요청이 가이드라인에 기재되도록 요청하여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가이드라인 책정 후, 각 시설 현장에서는 피수용자 가운데 감염자 발생시, 시설 내 어느 구역에 수용할지, 근무 직원이 방호복을 입는 페이스는 어떻게 할지, 다른 직원과의 동선 및 휴식장소의 구분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였다. 감염자 또는 감염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어느 직원 및 피수용자를 자택대기, 건강 관찰할 것인지의 스크린 문제가 가장 난점이었다. 오사카구치소의 경우 8월 중순, 실제로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에서는 합계 315명의 직원과 177명의 피수용자가 건강관찰 대상이 되었고, 감염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검사대상자의 음성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직원 및 피수용자가 스크린 대상으로 자택대기 및 단독실 처우를 받았다. 8월 하순에는 전국 각 시설에서 매일같이 스크린 작업 및 PCR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감염 우려 증상이 있을 경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스크린 안을 작성하고 이를 교정국성인교정과 경비대책실에서 확인하는 체제를 취하며 소년원시설의 경우, 소년교정과가 사실상 상담 대응하였다.¹⁹⁵⁾

4월5일 첫 번째 양성판정 직원 발생 후 해당 직원과 접촉가능성 있는 직원 도합

나 19감염증 대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며, TF는 법무부대신이 좌장, 전문가회의의 전문가 중 3명, 관방심의관(교정담당)이하, 교정국의 과장상당직, 형사국공안과장, 보호국관찰과장, 출입국재류관리청 경비과장으로 구성됨.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이후 4월 10일 법무대신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정시설에서의 효과적인 감염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13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교정국에서는 4월부터 갯생지원관리관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긴급사태선언하에서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재범방지의 각종대처를 평상시처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한편 인재의 활용과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로 임할 필요성에서부터 TF사무국이 갯생지원관리실에 설치되게 된 것임.

193) zoning(ゾーニング)란 확진자의 입원병동에서 입원체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지역(오염지역)과 오염되지 않은 지역(청결지역)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194) 상담방법, 새로운 생활방식, 퇴원 및 취업제한 변경, 확진자 접촉자 전원 PCR검사 실시 등의 기준변경이 주요 개정 내용이며, 제1판이 단기간에 책정된 만큼 현장의 의견청취 등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여 제2판은 일정기간의 운영실적을 반영한 의견, 교정기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되었다.

195) 細川隆夫, 西岡慎介, 앞의 논문, 37-38면.

19명에 대해 자택 대기 명령하였으며, 자택대기 범위는 오사카교정관구 및 교정국과의 조정으로 결정되었고, 최대 150명(4월 14일)까지 확대되었다. 직원 정원이 509명이며 30%가까운 직원이 자택 대기하였다.¹⁹⁶⁾ 첫 번째 양성판정자가 나온 4월 5일부터 전직원에 대해 휴일 포함 매일 아침 건강 상태 확인 실시, 비상소집 메일시스템 등록 직원에 대해서는 동 시스템응답기능을 이용한 건강상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집계를 함과 동시에 매일 조석으로 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감염방지 의식을 제고하는 메일을 송신하였다(비상소집메일 등록되어있지 않은 직원은 건강상태에 이상 있는 경우에 전화로 보고하도록 함). 이후의 새로운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9종류의 대상자별, 장소별 포스터 게시, 직원뿐 아니라 그 가족과 피수용자, 방문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 철저를 환기시켰다. 5월 20일에는 ‘코로나 19 감염 확대방지를 위한 직원행동지침’을 제정하여 매일아침 건강상태확인, 통근, 근중, 각종훈련, 가족 및 휴일의 양태, 감염위험 적극 배제한 ‘새로운 생활양식’에 의한 생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각하여 행동하도록 환기시켰고, 감염예방대책을 전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오사카구치소 감염예방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예방체제를 강화하였다.¹⁹⁷⁾

또한 근무 직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근린 시설부터 응원직원을 파견 받았으며, 교정국 특별기동 경비대 대원이 4월 10일에 13명, 11일부터 20일까지 15명 파견되어 피수용자 처우 업무를 담당하였다. 양성판정을 받은 직원 담당 업무관련 접촉 위험 있는 피수용자는 단독실에 수용하였고,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피수용자 역시 분리 처우하였다. 분리처우 대상자는 모두 단독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단독실 확장 개조 공사 중인 이유로 실질적인 단독실 수용률은 약 86%였다.¹⁹⁸⁾

2) 도쿄구치소의 대처 현황

2020년 4월 11일 도쿄구치소에서 전국 최초로 피수용자 감염이 확인되었다. 피수

196) 清水政明(大阪拘置所調査官), 職員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た際の対応(大阪拘置所), 45-49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 1541号)

197) 清水政明(大阪拘置所調査官), 職員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た際の対応(大阪拘置所), 48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 1541号)

198) 清水政明, 앞의 논문 45-49면.

용자 확진 판정 이후 도쿄구치소의 대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⁹⁹⁾

▶▶ <표 4-14> 도쿄구치소의 대처 현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당일 대처 (판결수용으로 검찰청에서 4월 8일 바로 입소한 피수용자는 도착당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기침을 계속하여 담당자가 바로 마스크를 착용시켰고 체온을 측정하니 36도의 정상 온도 범위 내였으나 입소 1주전부터 지속적인 발열증상이 있었음을 듣고 곧바로 감염의심 피수용자 수용을 위해 마련된 단독실에 수용됨) • 2020.0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째 이후의 대응(열, 혈액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있는 발열로 의심되어 PCR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수용동의 zoning을 실시하고 담당직원 10명을 지정하여 전담반을 편성함. 전속반직원의 감염방지를 위해 전담반 직원의 숙박 장소, 출퇴근 경로, 대기실 및 휴게실 지정사용 및 관내 통행 에리어의 zoning을 실시하고 개인 방호구 및 소독액등을 정비하여 방호복 탈착요령 등에 대해서도 교육 실시함. 또한 감염피수용자가 입소한 이후 직접 접촉한 직원 5명은 전원 PCR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음) • 2020.0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판정 • 2020.0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성위기관리 전문가회의구성원에 의한 조언 지도(양성판명 2일후인 4월 13일 무성위기관리 전문가회의 구성원인 교수의 파견으로 관계직원에 대한 방호복 탈착시의 유의사항 등 직접 지도가 있었다. 또한 양성판명 피수용자가 수용되었던 거실등 및 연행경로 등 zoning등에 대하여 기존 대응을 검증받고 한층 더 감염방지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 이후 동일본 성인교정의료센터로 이송.

직원 교차출퇴근을 실시하였고 공공교통기관 사용자의 자가용 출퇴근을 독려하였으며 출퇴근실 체온검사, 대기실 등의 환기, 소독, 마스크 및 장갑 착용을 철저히 하였다. 소장이하 간부직원에 의한 직원 계도방송을 실시하였고, 관내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입소관련 사무종사 직원의 경우 전원 방호복 착용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입소 시 마스크 없이 기침하는 피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감염의심 증상을 묻고 미리 준비된 단독실에 수용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확대방지에 기여하였고, 입소 시 즉시 마스크 착용시킨 것 및 감염의심 증상 관련 문진이 확대방지의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⁰⁰⁾

199) 菊池康司(東京拘置所首席矯正処遇官), 東京拘置所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被収容者への対応について, 51-57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巻 1541号)

200) 菊池康司(東京拘置所首席矯正処遇官), 東京拘置所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被収容者への対応について, 51-57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巻 1541号)

3) 교토구치소의 대처 현황(코로나 19 감염을 상정한 가상 훈련을 중심으로)

교토구치소에서는 평일 출근시간 대 코로나 19 감염 직원이 발생한 상황을 상정한 감염대비 가상훈련을 실시(가상역할 담당인 참가 직원은 50명)하였으며, 각 장면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¹⁾

《표 4-15》 교토구치소의 코로나 19 감염대비 상황 시나리오 및 장면별 훈련 현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 오전 7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우 담당 직원이 출근 전 발열 등 감염의심증상이 있다는 전화를 하는 것에서 시작. 자택근처 병원에 상담하여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감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자택대기 지시 • 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한 직원이 담당하는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수형자도 주말부터 증상을 호소하여 현재 발열 및 미장장애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임. (보고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들의 공장작업 정지, 의무부와 연계한 피수용자 건강 상태파악 등을 지시. 이후 감염 및 확진자 접촉자로 의심되는 수형자를 분리하기 위해 분리 동으로 연행, 이에 필요한 방호복 착용, 분리 동 소독, 훈련시간으로 1시간, 훈련장면 등 5개 장면으로 나누어 설정함) • 장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동 (강당 내 대책 본부) : 훈련은 출근 전 직원이 증상호소 전화연락이 있는 장면부터 시작. 코로나 19 감염 등 긴급사태발생시 무엇보다 초동 체제가 중요함을 고려함. 교도소 특유의 폐쇄된 공간에서 폭발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을 자택 대기시키고, 한정된 통로를 이용하여 피수용자를 이동시킴. 공장작업등을 중지하고 수용실에 있도록 이동 제한함 • 장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복 착용(강당 내 착용 훈련 장소) : 훈련은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피수용자가 수용되어있던 수용실 등 소독을 위해 직원 4명과 지휘자1명에 의한 방호복 착용 훈련을 실시함.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방호복 점검부터 착용까지 사전에 작성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순서대로 확인함. 신 2 진행 중에도 신 1 대책본부에서의 훈련을 계속하고 확진자 접촉자의 특정 및 상관관청과 직원에 연락하는 등 리얼하게 훈련을 실시함 • 장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수용자 연행(제5동 주변) : 가운형태의 방호복을 착용한 직원이 감염이 의심되는 자 및 확진자 접촉이 의심되는 자를 분리하기 위해 출근함. 먼저 첫 연행은 확진자 접촉이 의심되는 자 2명. 감염 의심증상이 현저하다는 가정 하에 자력보행으로 연행하고 수용실은 사전에 zoning완료한 분리병동 2층의 건강 관찰 에리어가 됨. 감염 의심 증상이 큰 자의 연행의 경우 발열 등 의심증상이 확연히 드러나므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분리병동 1층 감염분리 에리어에 이동시킴. 이곳에서는 의무부 의사가 피수용자가 도착하면 체온, 혈압, 혈중산소농도 등 의식 레벨의 바이탈 체크를 실시함. 또한 시설 내 피수용자를 이동시키는 통로를 한정하고 2차 감염방지를 위해 확진자 접촉자는 동쪽 통로를, 감염 의심자는 서쪽 통로를 각각 사용하여 이동시에 미증상자를 선두에 두는 등 위치와 시차를 결정하여 이동시킴

201) 秋田和也(京都刑務所次席矯正処遇官),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想定訓練-京都刑務所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想定訓練について-, 60-64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1541号)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면 4 - 오염장소 소독(제2동1층제101호실): 장면 2에서 방호복 착용한 직원은 감염 의심 증상이 큰 피수용자가 수용되어있던 수용실에 도착하여 소독작업을 실시함. 사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준수하며 소독 실시 • 장면 5 - 방호복 탈의(강당 내 탈의훈련 에리어): 훈련 마지막 장면은 소독을 실시한 직원이 착용하던 방호복의 탈의 훈련임 • 기타 - 훈련 전일 홍보활동: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전문가입회하의 코로나 19 감염 가정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시설 방역대책 및 국가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용 가운 제작상황을 알리기 위해 훈련 전일부터 각 신문사를 초대하여 공장 및 직원 사무실, 시설 방호대책 등을 설명하고 홍보함 • 검토 - 가상훈련은 평일 출근시간대였으니 야간 및 휴일 등 대처준비가 미흡할 수 있는 시간, 요일별 신속한 초동조치 태세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이 실제 상황 대처에 중요함을 본 훈련을 통해 인지함 	

4) 오사카보호관찰소의 대처현황

보호관찰업무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사의 협력 하에 실시되고 있어 고령자도 많은 보호사에게 감염위험을 지우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면접 실시, 적절한 접촉 및 거리 유지,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 실시 및 참가를 의무화하였다. 긴급사태 선언 하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사람과 보호관찰관, 보호사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보호사 및 보호관찰관에 의한 면접을 중지하고 전화에 의한 생활상황 등 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처우 프로그램의 경우 집단적으로 실시해왔기에 이를 일단 중단하고, 프로그램 실시 전 손 소독 및 체온검사 등 감염방지 책을 강구한 후 6월부터 재개하였다. 그 외 면접에 대해서도 각 보호사에게 감염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보호관찰소 내에서의 면회실에 아크릴판 등을 설치하고, 사용전후 소독실시 등 감염방지에 유의하며 면접 실시하였다.²⁰²⁾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시설에서의 운영 지침

일본 법무성은 4월 6일 ‘법무성 위기관리 전문가회의’, 4월 14일 ‘교정시설 감염방

202) 大阪府, 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本部会議,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情報(<http://www.pref.osaka.lg.jp/attach/29536/00369312/0301covid19.pdf>, 최종검색 : 2020.12.29).

지TF'를 개최하고, '법무성 코로나 19 감염증 대책 기본 대처 방침', '교정시설의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방지대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소년보호기관 별도의 운영 지침이 책정되지는 않았으며, 시설내처우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책정 즉, 교정시설에서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각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감염방지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²⁰³⁾

▶▶ <표 4-16> 교정시설의 코로나 19 감염증 감염방지대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개요(상세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특유의 감염 위험(도주방지의 관점에서 창 과 문 등의 개방 곤란 구조, 집단처우를 전제로 한 것 등으로 인한 '3密'²⁰⁴⁾문제), 교정시설의 감염방지대책의 조직화에 관한 사항 • 감염방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및 피수용자 각자가 실시하는 감염방지, 직무 및 처우환경의 감염방지, 직원 및 피수용자의 건강관리, 방문자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 감염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가이드라인의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초기대응, 외부관계기관과의 조정, 직원이 감염된 경우의 대응, 피수용자가 감염된 경우의 대응, 건물설비 감염대책, 감염피수용자 대응(개인방호구 등), 확진자 접촉자 등의 특성과 대응, 감염확대방지책, 업무계속방책(직원 근무대응 등)에 관한 사항 • 감염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비품, 소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 의료용 가운, 방호복, 헤어캡, 고글, 페이스 쉴드, N95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등 물품과 관련한 사항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각 교정시설의 대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지시등에 의한 공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직원연수 실시, 대기실 등 누구든지 확인되는 장소에 가이드라인 게시 등으로 감염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촉진함 - 대책위원회 및 프로젝트팀 설치, 청 내 방송, 감염방지에 관한 안내지 발행, 홍보용 영상, 감염예방 핸드북 배포 등에 의한 원 포인트 학습, 직원 가족 등에 대한 주의환기의 안내지 송부 등을 실시하는 시설도 있음 •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수용구역 내 감염방지 조치 내용으로는 직원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손 씻기, 상황에 따른 개인 방호구 착용 등의 철저 - 직원 외출 및 회식등과 관련하여 불요불급의 사적모임 자숙 및 '3개의 창'을 회피하는 행동 실시 등에 대한 주의환기 - 교통수단 관련하여 자가용통근 등 공공교통수단 이용 제한 -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대책으로 다수의 피수용자가 모여 '3개의 창'상태가 되는 행사 중지 또는 연기함과 동시에 운동 시 피수용자간 거리 확보 등 실시 - 소년원 재원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감염예방 지도 실시

203) 加来浩器(防衛医科大学学校防衛医学研究センター広域感染症疫学,制御研究部門教授), 特集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 Withコロナ時代を乗り越えるために必要な知識, 12면, 『刑政』2020/10 第131卷第10号(通卷1541号)

- 피수용자 건강관리로 입소 시 건강상태 파악, 2주간 단독실에서의 체온 측정, 건강관찰 등 실시
- 감염자 등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 시설 내, 상급관청에 보고체제,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 직원 근무요령, 피수용자 처우 요령, zoning 등을 규정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매뉴얼 등을 책정 않은 시설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함
- 전문가 회의는 감염 의심 증상 있는 직원 및 피수용자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 및 방호복, N95마스크, 장갑 착용, 소독, zoning, 등의 실제 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각 교정시설에서 실제 각종 훈련이 실시됨
- 감염방지를 위해 확보해야할 비품 및 소모품
- 마스크 및 소독제 등의 감염방지를 위해 확보해야할 물품의 보유상황이 파악되도록 각 시설에서는 필요물품의 조달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외에, 교정시설 또는 근린 교정관구 시설이 물품부족이 없도록 상호 교환 및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적절히 대처되고 있음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일본의 교정시설은 교정시설이 가지는 밀폐성, 밀집성 등의 감염확산에 취약한 특성에 일찍부터 주의하였고, 법무성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 교정시설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 지침 작성 및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상황별 코로나 감염자 발생 시 대처를 실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하는 도쿄구치소의 감염자 입소 및 이에 따른 감염 대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²⁰⁵⁾

204) 「三つの密」,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的対処方針 (2020년 3월 28일)』(2020년 4월 7일 개정) 코로나 19 감염증 대책 본부 결정- 발췌. 집단감염 발생 장소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① 밀폐공간(환기가 어려운 밀폐공간), ② 밀집장소(다수인이 밀집), ③ 밀접장소(손을 뺀면 닿는 거리에서의 대화 등)의 3가지 조건(이하 '3密'이라 한다)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며 감염 확대의 우려가 큰 장소 말한다. 3つの「密」(3개의 밀, 미츠노 미츠)란 2020년 코로나 19(COVID-19) 확대기에 총리대신관저 및 후생노동성이 사용하기 시작한 표어이다.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피해야 할 밀폐(密閉)·밀집(密集)·밀접(密接)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3密'로 생략하여 사용된다. 영미권에서는 Three Cs·3Cs로 사용된다.

205) 菊池康司(東京拘置所首席矯正処遇官), 『東京拘置所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被収容者への対応について』, 51-57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 (通巻 1541号)

▶▶ <표 4-17> 도교구치소의 코로나 19 감염 환자에 대한 대처 예(2020.04)

감염자의 입소	감염 대책
<p>· 입소 당시의 대처</p> <p><2020.04.08. 형사피고인 입소></p> <p>① 입소 시 신체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 빈번 및 1주일 전부터 발열 - 코로나 19감염 우려 있음으로 판단 - 즉시 감염확대 방지책 전개 <p>② 감염자에게 즉시 마스크 착용</p> <p>감염 우려 있는 자를 수용하는 수용동에 수용</p> <p>· 입소 익일 이후의 대처</p> <p>① 2020.04.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감염증 전속반 편성(방호복, 페이스 쉴드, N95마스크, 의료용 장갑장착) - zoning(안전, 중간, 위험)실시(지정수용동/ 전용 엘리베이터/ 대기소 등) - 지정 직원 이외 출입금지 - 보건소에 PCR검사 의뢰 <p>② 2020.04.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로부터 PCR검사 양성 연락 - 감염확대방지에 대해 전 직원에 주지 철저 - 처우에 관한 개별 지시 발령(연행시의 방호복 착용 등) - 신속·원활한 감염대책 실시 - 이후 적절한 의료조치에 의한 경과 관찰 	<p>·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던 포인트</p> <p>① 입소 시 면밀한 행동 감시</p> <p>② 철저한 입소 시 체온측정 등 실시</p> <p>③ 보건소와의 연계에 의한 신속한 PCR검사 실시</p> <p>· 대책 개요</p> <p>① 직원 관계(포함한 그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근 시 체온 등 건강 체크 - 외출 자숙 등의 주의 환기(메일 및 관내방송) - 소 내 각층에서의 알콜 소독, 마스크착용 철저 - 필요한 개소에서의 방호구 등 착용 - 시차출퇴근, 자가용차 통근 장려 - 집무실 및 탈의실 내 환기 및 식당 좌석 분산 <p>② 피수용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8일부터 일반 면회 등 정지 - 면회실의 환기 - 알콜 등으로 수용동 내 소독

5. 소결

형사교정시설은 '치안의 마지막 요새'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용시설로 기능한다. 특히 교정시설은 시설 구조 및 운영상의 특징상 집단 확산의 우려를 상시 안고 있는 만큼 일본의 각 교정시설은 직원 및 피수용자의 감염 없는 생활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 생활에서의 방역체제 철저 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다.

일본의 교정시설은 교정시설이 가지는 밀폐성, 밀집성 등의 감염확산에 취약한 특성에 일찍부터 주의하였고, 법무성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

교정시설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 지침 작성 및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감염방지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상황별 코로나 감염자 발생 시 대처를 실제적으로 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징적인 것은 직원 및 피수용자 대상자별, 업무조건별, 교정시설에서의 생활 및 작업체제 별 가상 감염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의 작성 및 이에 따른 훈련을 통해 대처 능력을 기르고자 한 노력이다. 이와 같은 스크린 작업을 통해 교정시설의 기본 특성 및 각 교정시설 고유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예상 가능하다. 일본의 교정시설의 경우, 철저한 매뉴얼 중심의 운영이 특징인 만큼 미처 가정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의 긴급대처가 어려운 점 역시 가상훈련이 실시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감염병의 특징상 신속한 초동 대처조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이 실제 상황 대처에 중요함을 인지하고 실시한 것은 일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예방체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며, 교정시설의 '보안', '수용기능' 및 '코로나 대책'을 모두 완수하기 위한 감염방지책 강구노력은 시사를 얻을 만하다.

제 5 장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결론 및 제언

조영오·최지선

본 연구의 목적은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과 법무부의 코로나 19 관련 소년보호기관에 보낸 업무지침에 대해 정리하였다. 아울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에 대하여 양적 분석을 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직원, 소년 및 보호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양적·질적 분석 및 문헌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년보호기관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및 감염병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감염병 확산의 방지와 관련된 부분이며, 두 번째 측면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소년보호기관의 기존 업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다.

제1절 | 소년보호기관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

1. 격리·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재배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때 소년보호기관의 우선 업무는 소년보호기관에 접촉하는 소년들을 감염병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감염병 감염자나 혹은 유증상자의 격리, 거주시설에 새로 입소하는 소년들의 일정 기간(예 : 2주) 격리 및 소년보호기관의 최소한의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공간의 확보이다. 사회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기관을 일정 기간 폐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이 심하지 않은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최소한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집행해야 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교육을 위한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고, 아울러 직원과 외부인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법무부에서 업무지침을 통해 보호관찰소에 출입하는 외부인들이 미리 정한 장소만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관찰소에서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소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업무공간의 재배치 및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인 공간의 확보는 보호관찰소보다는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과 같은 수용시설에서 더 중요하다. 수용시설의 경우 직원이나 소년 중 한 명이 감염되면 집단으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감염병 감염자 및 유증상자 뿐만 아니라 시설에 신규로 입소하는 소년들을 격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10호)을 받은 소년들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가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 감염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 소년원으로 바로 보내지는 소년이 있고 직원들에 의해 감염병이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시 격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년원 시설이 예전부터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⁰⁶⁾ 이처럼 과밀인 상태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전파될 경우 이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년보호기관 소속 직원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노력으로 소년원에서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과밀수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울동부구치소처럼 소년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를

206) 박준용, 과밀수용 소년원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 한겨레 2020년 1월 24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651.html, 최종검색 : 2020.12.29).

위해 수용시설에서는 평상시와 달리 감염병 확산 시 준수해야 할 지침(개인 간 2m 간격 유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용인원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시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용자가 독방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500개의 임시 독방을 기존 교도소 내에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 있는 소년교도소의 경우에는 감염자를 격리하기 위해 수감동 하나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의 한 행형시설은 신입 수감자, 코로나 19 감염자 및 유증상자를 격리하기 위해 총 375개의 수용실을 마련하였다.

소년수용시설 중에서도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관은 분류심사원과 8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분류심사원과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장·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는 소년과 달리 대부분 사회 내에서 생활하다가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특히, 분류심사원의 경우 거의 매일 새로운 소년이 시설에 들어오게 되고, 보호관찰위반 등으로 구인되어 오게 되는 소년 중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시설들에서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따르고 분류심사원의 경우 새로 입소한 소년을 2주 정도 개인실에 수용하며, 8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교육 첫 1주일만 개인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소년이 이미 시설에 들어온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류심사원의 경우 법원에서 위탁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염병 검사 등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거나 혹은 분류심사원에 새로 입소하는 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고 이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동선을 다른 직원들과 최소로 겹치게 한다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소년원은 분류심사원과 같은 장소에 위치해있다. 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시설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류심사원 직원과 소년원 직원의 업무 공간 및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수도권처럼²⁰⁷⁾ 감염병 위험에 노출이 심한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을 각각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207) 수도권의 경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원 및 안양소년원이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해 있음

2. 소년사법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조

소년보호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공간 확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 확보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단기 계획으로는 유관 기관인 경찰, 법원 및 보호관찰소 등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의 경우 신규 처분을 줄이거나 임시퇴원을 늘려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신규 처분은 법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법원과 협의가 필요하며, 임시퇴원의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소년사법기관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설내의 소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보호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원 재원생 수, 법원에서 신규로 소년원 처분을 받은 수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의 임시퇴원 수에 있어서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 수용시설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소년구금시설 처분에 대한 집행을 연기하였고, 소년수용시설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상당수 발생한 미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시설 신규 입소인원을 감소시켰으며 보호관찰위반자를 시설로 보내지 않았고, 비폭력 및 저위험군 소년의 경우 조기석방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시설에 보내야 할 소년을 보내지 않고 시설에 있는 소년을 조기 석방시키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대체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소년의 경우 생활환경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사회 내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로인해 감염병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설에 있는 소년을 사회로 보낼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소년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설에 있는 소년을 사회로 보낼 때에는 조기 석방을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사회로 보내지는 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및 과중되는 보호관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예를 들어 보호관찰의 경우도

보호관찰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년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관찰의 경우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원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보호관찰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에도 법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부과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업무나 조사의 경우 비대면으로라도 실시가 가능했지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대면으로만 집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 결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담당자는 심한 업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법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일정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된 처분의 경우 감염병 확산이 누그러질 때까지 유예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기관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 등의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의 업무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인 올해 초 마스크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다보니 소년거주시설에서조차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 소년거주시설의 특성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소년거주시설을 마스크 우선 제공 시설로 지정하지 않아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 19 검사가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만을 우선적으로 실시되던 때 소년원 직원이 약간의 유증상으로 인해 검사받는 것을 의뢰했을 때 몇 번의 논의가 있는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과 같은 소년범 거주 시설은 집단 감염이라는 위험이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병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방역물품 조달 및 관련 조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소년범 거주시설 직원과 소년의 경우에는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수용시설 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3. 감염병 대응 상세 매뉴얼 개발 및 가상훈련 실시

소년보호기관 내에서의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은 아무리 철저히 예방한다고 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 개발과 가상훈련이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및 유증상자를 가려 격리시키는 등의 일련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세한 매뉴얼과 충분한 가상훈련이 필요하다. 매뉴얼 개발과 관련하여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상세히 매뉴얼화하고 가상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숙지하고 매뉴얼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년원생 중에 감염자 발생 시 시설 내 어느 구역에 격리시킬지, 근무 직원 중 누가 방호복을 입고 감염자를 격리시킬지 이동시킬지, 격리시킬지 동선은 어떻게 설정할지, 방호복을 입었던 직원은 다른 직원과의 동선을 어떻게 구분할지, 감염우려가 있는 직원 및 소년에 대해 어느 직원 및 소년을 격리시키고 건강 관찰은 언제까지 할지, 격리된 직원들을 언제 복귀시킬지, 직원들의 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일본 오사카구치소의 경우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정원의 30%에 가까운 직원이 자택대기를 하였다. 일본 교토구치소의 경우 코로나 19 감염을 상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훈련은 초동 대응, 방호복 착용, 피수용자 연행, 오염장소 소독 및 방호복 탈의 등 5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년원에서 수용사고방지 훈련을 코로나 19 대응 훈련으로 대체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매뉴얼과 가상훈련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제작되고 그에 따른 가상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절 | 소년보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제언

1. 직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은 소년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는 기존에 본인들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 감염병 대응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업무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소년원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원들 각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은 직원의 하루 일정과 업무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평상시 인성교육의 경우 상당부분이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강사들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되다보니 이러한 교육을 모두 직원들이 떠맡아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 지침에 의해 직원 중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원 출근을 자제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직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코로나 19로 인해 소년원 직원들은 기존에 담당했던 교육 및 감호 업무 외에 감염병 예방 업무, 인성교육 및 타직원 부재 시 업무까지 담당을 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물리적인 업무만 가중시킨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가중시켰다. 소년원 직원의 경우 자신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소년원에 전파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컸다. 특히, 코로나 19 전염 예방을 위해 소년들을 외부와 차단하고 외부인들의 소년원 출입을 금지한 상황에서 직원에 의한 코로나 19 전염에 대한 비난은 직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직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직원들이 코로나 19 단계별 방역지침보다 훨씬 엄격하게 자신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소년원생들의 경우 외부 활동 및 외부인과의 상호작용(가족회복 프로그램, 봉사활동, 경진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종교행사 등)이 금지되다 보니 이로 인한 불만이나 좌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언제든지 행동으로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에 대한 부담은 보호관찰관도 마찬가지이다. 2장에서 통계가

보여주듯 법원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결정전조사를 의뢰하거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다. 한편 이 일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역방침 및 법무부의 업무지침을 준수하면서 기존의 업무량을 처리해야 했다. 물론 결정전조사와 지도·감독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었지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비대면으로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보호기관 종사자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시설 내 소년들의 조기석방, 구금 집행 연기, 신규 입소자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설 내 수용인원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시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년구금과 6개월 미만의 자유형 또는 대체자유형을 이행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시설수용을 집행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유입을 중단하고 법원은 보호관찰과 가석방자의 조항 준수 위반자에 대해 구금시설로 보내는 관행을 멈췄으며, 미국 콜로라도, 미시건, 메릴랜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등은 주지사의 행정명령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비폭력, 저위험군 소녀사범들을 석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호관찰업무와 관련하여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보호관찰소 사무소를 폐쇄하고 대상자와의 접촉은 전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대면 접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 접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해 소년보호기관 내에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높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보호기관 종사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기관의 기본적인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코로나 19는 소년보호기관의 업무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한다. 소년보호기관의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소년원의 경우 인성교육의 상당부분이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인의 소년원 출입

이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되다보니 기존 인성교육을 실시하던 외부 전문가가 소년원을 출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소년원 직원이 대신 인성교육을 진행하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였다. 인성교육은 소년의 사회정착 및 재범예방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소년원 직원이 인성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던 교육을 직원이 실시할 경우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 19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인성교육까지 맡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능경기대회와 같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소년에게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업훈련을 받는 소년의 입장에서 경진대회라는 목표는 직업훈련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경진대회에서의 수상은 소년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며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소년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기능경기대회에 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이는 소년들로 하여금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 혹은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직업훈련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고 소년의 시설 내 생활 및 사회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에는 결정전조사와 지도·감독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뀜에 따라 대면을 통해서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경우 소년이 전화를 받으면서 어디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소년이 생활하는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대면에 비해 충분히 수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대면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의 누락은 소년의 재판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정전조사와 지도·감독은 그나마 비대면으로라도 실시될 수 있지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대면으로만 집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집행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년보호기관의 업무 방식을 기존 대면방식에서 가능한 부분은 비대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소년원의 경우 효과성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인성교육 중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교육은 없는 지, 직업훈련의

경우 유급강사를 활용한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기능경진대회의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년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면 면회가 폐쇄형 면회로 제한되고 비대면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소년들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조사와 지도·감독 실시에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의 방식은 없는지(예를 들면 소년에게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멀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수강명령 중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회봉사명령을 꼭 다른 시설에 가서 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스카이프를 통해 화상면회를 실시하기도 하고, 홈스쿨처럼 생활실에서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으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독일 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한 시설에서는 교도관과 동행해서 혹은 단독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격리구역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식으로 외출하기도 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소년의 경우 스카이프를 통해 정신건강치료 및 상담을 받기도 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기관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업무 및 교육/프로그램 중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소년보호기관에서도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였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소년원의 교과교육,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의 경우 방식에 있어서 변경은 있었을지라도 코로나 19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수행되었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소년들의 결정전조사와 지도감독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다. 반면, 소년원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면회, 보호자 상담, 종교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주말가정학습 등은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취소되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다 소년의 원호부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직도 코로나 19에 대응하느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올해 소년 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현행 대응 방식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영국의 경우 2020년 4월 21일에 3개의 소년수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는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와 관련된 안전 측면, 소년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돌봄 측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변화와 관련된 활동 측면,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년의 사회정착 서비스와 관련된 재정착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아울러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관찰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20년 7월 10일에 ‘코로나 19 회복계획을 위한 가이드선스’를 마련하였고 매년 제출하는 연례계획서 대신 2020년 9월까지 소년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소년범죄대응팀으로 하여금 코로나 19를 어떻게 대응하고 서비스를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인 ‘회복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서에는 코로나 19가 소년법 관리와 서비스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 협력기관과의 관계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미친 영향, 자원 할당 및 지출,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의 필요(needs), 직원의 필요(needs) 및 협력기관의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s)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미국과 영국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업무방식을 변경할 때 소년의 복지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소년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기존 방식대로 구금시설에 위탁시키기 보다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과 가족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시설 내 프로그램의 감소가 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감소한 이후 소년들의 전화사용을 점검하여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소년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며 스카이프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소년보호기관에서도 코로나 19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소년보호기관이 코로나 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년보호기관 업무에 있어서의 변화가 소년보호기관의 본래 업무인 소년의 품행개선, 사회정착지원 및 재범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보호기관을 접촉하는 소년 및 가족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간과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의 핵심은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국내문헌

김응수, 독일의 소년보호 정책과 법적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2), 81-102면, 2018.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의 종류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최종검색 : 2020.12.28.).

박선영, 영국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자립지원, 교정담론, 14(1), 1-23면, 2020.

박준용, 과밀수용 소년원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 한겨레 2020년 1월 24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651.html, 최종
검색 : 2020.12.29).

법무부 보도자료, 코로나는 ‘소년원’에도…가족 느낄 ‘부모님 세족식’도 취소

(<http://www.moj.go.kr/bbs/cppb/33/524675/artclView.do>, 최종검색 :
2020.12.28.).

안현선, [코로나 19] 확진자 5000명 돌파 … 5186명 확진·29명 사망, 세이프타임즈
2020년 3월 3일자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65>, 최종검
색 : 2020.12.28.).

유영재, 보호주의에 기반한 소년친화적 시설 내 처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윤진아,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법과 정책연구 18(4), 255-288면,
2018.

이경우, 춘천소년원, 사제가 함께 하는 축구 대회...서로 격려, 강원신문 2020년 3월
5일자(<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49009>, 최
종검색 : 2020.12.28.).

이승현, 영국 소년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소년보호연구 18, 157-194면, 2012.

이재희,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288명 어제 코로나 19 추가 확진, KBS NEWS 2020년 12월 25일자(<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80137>, 최종검색 : 2020.12.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도 자료

(http://ncov.mohw.go.kr/tcmBoardList.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140&gubun=, 최종검색 : 2020.12.28.).

진수명·김혜정, 각국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독일)(법무부 용역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2면, 2001.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5일)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1588&act=view, 최종검색 : 2020.12.28).

표태준, 코로나 확산에... 대법 “법원 3주 휴정 권고”, 조선일보 2020년 12월 21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1/ZFSRA2OCRZEGLHALHSENAEWEVU/, 최종검색 : 2020.12.28).

한동훈, 경찰청 본청도 뚫렸다...코로나 19 첫 확진자 발생, 서울경제 2020년 8월 21일자(<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Y90SXT>, 최종검색 : 2020.12.28).

2. 영미문헌

Council of Juvenile Justice Administrators, Issue Brief COVID-19 Practice, Policy & Emergency Protocols in State Juvenile Facilities(<https://jjs.utah.gov/wp-content/uploads/2020/06/COVID-19-Issue-Brief-.pdf>, 최종검색 : 2020.12.28.).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홈페이지

(<http://www.djj.state.fl.us/>, 최종검색 : 2020.12.29.).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Press Releases, Update from the Florida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 Regarding COVID-19

(<http://www.djj.state.fl.us/news/press-releases>, 최종검색 : 2020.12.29.).

- Hockenberry, S., and Puzanchera, C., Juvenile Court Statistics, 2018
(<https://ojjdp.ojp.gov/library/publications/juvenile-court-statistics-2018>,
최종검색 : 2020.12.28.).
- Hockenberry, S., and Sladky, A., Juvenile Justice Statistics, National Report Series
Bulletin: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 2016: Selected Findings
(<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pubs/251785.pdf>, 최
종검색 : 2020.12.28.).
- Massachusetts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홈페이지
(<https://www.mass.gov/orgs/departement-of-youth-services>, 최종검색 :
2020.12.29).
- Mooney, E., and Bala, N., Youth Probation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rstreet.org/wp-content/uploads/2020/06/No.-198-Youth-
Probation-in-Time-of-Covid.pdf](https://www.rstreet.org/wp-content/uploads/2020/06/No.-198-Youth-Probation-in-Time-of-Covid.pdf), 최종검색 : 2020.12.29.).
-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https://sfgov.org/juvprobation/>, 최종검색: 2020. 12.29).
-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Response
([https://sfgov.org/juvprobation/sites/default/files/SFJPD_COVID19-
Response_July%20%202020.pdf](https://sfgov.org/juvprobation/sites/default/files/SFJPD_COVID19-Response_July%20%202020.pdf), 최종검색 : 2020.12.29.).
-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Services in San Francisco
County([https://sfgov.org/juvprobation/sites/default/files/10_COVID-
19%20Services%20in%20San%20Francisco%20County_May%20%202020.
pdf](https://sfgov.org/juvprobation/sites/default/files/10_COVID-19%20Services%20in%20San%20Francisco%20County_May%20%202020.pdf), 최종검색 : 2020.12.29.).
- San Francisco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Working to Keep Children Safe
during COVID-19 Pandemic([https://sfgov.org/juvprobation/article/work
ing-keep-children-safe-during-covid-19-pandemic](https://sfgov.org/juvprobation/article/working-keep-children-safe-during-covid-19-pandemic), 최종검색 : 2020.12.
29.).
- Texas, Denton County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Juvenile Probation
(<https://www.dentoncounty.gov/504/Juvenile-Probation>, 최종검색 : 2020.
12.29.).
-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
(<https://www.tjjd.texas.gov/>, 검색일: 2020.11.14.).

- Texas Juvenile Probation Department, COVID-19 Response Plan
(<https://www.dentoncounty.gov/DocumentCenter/View/3014/COVID-19-Response-Plan-for-Juvenile-Probation---updated-July-2-2020-PDF?bidId=>, 최종검색 : 2020.12.29.).
- 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 COVID-19 Response, TJJD Response to COVID-19(<https://www.tjjd.texas.gov/index.php/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 The Guardian, Covid Stopped Family Visits for Children in Youth Prisons in England and Wales(<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sep/23/children-in-england-youth-prisons-denied-family-visits-due-to-covid-restrictions>, 최종검색 : 2020.12.29.).
- U.K., Association of Youth Offending Team Managers: Children Included in Numbers to be Released from Custody Due to Covid19
(<https://aym.org.uk/2020/04/06/children-included-in-numbers-to-be-released-from-custody-due-to-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 U.K.,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Report on Short Scrutiny Visits to Young Offender Institutions Holding Children by HM Chief Inspector of Prisons(<https://www.justiceinspectors.gov.uk/hmiprisons/wp-content/uploads/sites/4/2020/05/YOIs-SSV-Web-2020-1.pdf>, 최종검색 : 2020.12.29).
-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Coronavirus (COVID-19) and Prisons(<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nd-prisons#prison-visits-in-england>, 최종검색 : 2020.12.29.).
- U.K., Her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Probation Roadmap to Recover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92498/probation-roadmap-to-recovery.pdf, 최종검색 : 2020.12.29).
- U.K.,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Coronavirus (Covid-19): The Impact on Prisons(<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2154/documents/20016/default/>, 최종검색 : 2020.12.29).
- U.K., Justice Committee Oral Evidence: Coronavirus (Covid-19): The Impact on

- Prison, Probation and Court Systems(<https://committees.parliament.uk/oralevidence/565/pdf/>, 최종검색 : 2020.12.29).
- U.K., Legislation,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8/4/contents>, 최종검색 : 2020.12.29.).
- U.K.,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Courts
(<https://www.gov.uk/courts/youth-courts>, 최종검색 : 2020.12.29.).
- U.K., Ministry of Justice, Types of Prison Sentences
(<https://www.gov.uk/types-of-prison-sentence/sentences-for-young-people>,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Custody Servic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https://www.gov.uk/age-of-criminal-responsibility>,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Custody Service, Coronavirus and Youth Offending Teams: Advice for Children(<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and-youth-offending-teams-advice-for-children>,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Custody Servi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Custody Service, Youth Justice Board update on COVID-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youth-justice-board-update-on-covid-19>,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Guidance COVID-19 Recovery Plans: Guidance for Youth Offending Tea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recovery-plans-guidance-for-youth-offending-teams>,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Justice Board, Youth Offending Teams
(<https://www.gov.uk/youth-offending-team>,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Justice Resource Hub, Practice Professional Development Research and Evidence(<https://yjresourcehub.uk/>, 최종검색 : 2020.12.29.).

- U.K., Youth Justice Service: Youth Justice Service: Update-Covid-19
(<http://www.sheffield-yos.org.uk/>, 최종검색 : 2020.12.29).
-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Guidance for Correctional&Detention Facilities(<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rrection-detention/guidance-correctional-detention.html>, 최종검색 : 2020.12.29.).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COVID-19 Guidance : State Juvenile Detention and Correctional Facilities(<https://ojjdp.ojp.gov/sites/g/files/xyckuh176/files/media/document/OJJDP-COVID-19-Guidance-for-States.pdf>, 최종검색 : 2020.12.29.).
- WHO,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gclid=EAIaIQobChMIusjwsaLp7QIV0IVgCh3ruAlzEAAYASABEGjvDvD_BwE, 최종검색 : 2020.12.28.).
- Youth.GOV 홈페이지, Council of Juvenile Corrections Administrators
(<https://youth.gov/shared-resources/council-juvenile-corrections-administrators>, 최종검색 : 2020.12.29).

3. 독일 문헌

- Achte Verordnung über Maßnahmen zur Eindämmung der Ausbreitung des neuartigen Coronavirus SARS-CoV-2 in Sachsen-Anhalt
(https://coronavirus.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Geteilte_Ordner/Corona_Verordnungen/Dokumente/3_A_EVO_Achte_SARS-CoV-2-EindV-Lesefassung_27112020_nachKabinett.pdf, 최종검색 : 2020.12.29.)
- ADB e.V.-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Bewährungshelferinnen und Bewährungshelfer
(https://www.bewaehrungshilfe.de/?page_id=109, 최종검색 : 2020.12.29.)
- Bayerischer Influenzapandemieplan(<https://www.stmgp.bayern.de/wp-content/uploads/2020/02/influenza-bayern.pdf>, 최종검색 : 2020.12.29.)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Corona-Informationen
(<https://www.justiz.bayern.de/justizvollzug/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 Berliner Justizvollzug, Jugendstrafanstalt Berlin
(<https://www.berlin.de/justizvollzug/anstalten/jugendstrafanstalt-berlin/>, 최종검색 : 2020.12.29.)
- Berliner Justizvollzug, Jugendarrestanstalt Berlin-Brandenburg
(<https://www.berlin.de/justizvollzug/anstalten/jugendarrestanstalt-berlin-brandenburg/>, 최종검색 : 2020.12.29.)
- Berliner Justizvollzug, Parlamentarische Anfragen
(<https://www.berlin.de/justizvollzug/service/parlamentarische-anfragen/>
(2020년 5월 자료 참조), 최종검색 : 2021.1.12.)
- Brücke Köln e.V., Aufgaben
(<http://www.bruecke-koeln.de/index.php?menuid=14>, 최종검색 : 2020.12.29.)
-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html>, 최종검색 : 2021.1.12.)
- 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https://www.bzga.de>, 최종검색 : 2021.1.12.)
- DBH-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Auswirkungen des Coronavirus in der Justiz
(<https://www.dbh-online.de/aktuelles/auswirkungen-des-coronavirus-der-justiz>, 최종검색 : 2020.12.29.)
- Der Beschluss von Bund und Ländern zur Bekämpfung der Corona-Pandemie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uerokratieabbau/bund-laender-beschluss-1805264>, 최종검색 : 2020.12.29.)
- Deutsches Jugendinstitut, Jugendarrest in Deutschland
(https://www.dji.de/fileadmin/user_upload/jugendkriminalitaet/Jugendarrest_in_Deutschland__2017.pdf, 최종검색 : 2020.12.29.)
-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Updated projections of

COVID-19 in the EU/EEA and the UK

(<https://www.ecdc.europa.eu/en/publications-data/covid19-updated-projections-november-2020>, 최종검색 : 2020.12.29.)

Frankfurter, EU-Behörde zweifelt an Deutschlands Corona-Maßnahmen: „Es gibt neun Länder, in denen wir vorhersagen, dass ...“

(<https://www.fnp.de/deutschland/coronavirus-deutschland-lockdown-prognose-analyse-ecdc-eu-zweifel-infektionen-trend-kritik-zr-90110622.html>, 최종검색 : 2020.12.29.)

Freistaat Thüringen, MInisterium für Migration,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Bestätigte Corona-Infektionen in JVA Untermaßfeld

(<https://justiz.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rmationen/detailseite/bestaetigte-corona-infektionen-in-jva-untermassfeld>(최종검색 : 2021.1.12.)

Freistaat Thüringen, MInisterium für Migration,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Impfungen für Vollzugsbedienstete mit Priorität

<https://justiz.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rmationen/detailseite/impfungen-fuer-vollzugsbedienstete-mit-prioritaet>(최종검색 : 2021.1.12.)

Freistaat Thüringen, MInisterium für Migration, Justiz und Verbraucherschutz, Positiver Corona-Test bei zwei Bediensteten der JVA Tonna und bei einem weiteren Bediensteten der JSA Arnstadt

(<https://justiz.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rmationen/detailseite/positiver-corona-test-bei-zwei-bediensteten-der-jva-tonna-und-bei-einem-weiteren-bediensteten-der-jsa-arnstadt>(최종검색 : 2021.1.12.)

Jugendhilfeeinrichtung Frostenwalde des Evangelischen Jugend- und Fürsorgewerkes (EJF), Über Uns

(<https://www.ejf.de/ueber-uns/unternehmensverbund-ejf/ejf-ev.html>, 최종검색 : 2020.12.29.)

Justiz-Online, Besucher-Infos, Informationen zur Besuchsregelung der JVA Herford

(<https://www.jva-herford.nrw.de/infos/index.php>, 최종검색 : 2020.12.29.)

Justiz-online, Fachbereich Bewährungshilfe

(https://www.justiz.nrw.de/Gerichte_Behoerden/ordentliche_gerichte/

Strafgericht/dienste/Bewaehrungshilfe_1/index.php, 최종검색 : 2020.12.29.)

Justizvollzugsanstalt Adelsheim, Besuchsverkehr

(<https://jva-adelshheim.justiz-bw.de/pb/,Lde/Startseite/Service/Besucherinfo>, 최종검색 : 2021.1.12.)

Justizvollzugsanstalt Dresden, Aktuelle Informationen zum Zutritt zur Justizvollzugsanstalt Dresden

(<https://www.justiz.sachsen.de/jvadd/>, 최종검색 : 2020.12.29.)

Niedersächsisches Justizministerium, Informationen zum Umgang mit dem Corona-Virus in der Justiz

(https://www.mj.niedersachsen.de/startseite/aktuelles/corona_virus/fragen_und_antworten/informationen-zum-umgang-mit-dem-corona-virus-in-der-justiz-186310.html, 최종검색 : 2020.12.29.)

Rahmen-Hygieneplan gemäß § 36 Infektionsschutzgesetz für Einrich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Kinder- und Jugendheime, betreute Wohngruppen u. ä.(http://service.mvnet.de/_php/download.php?datei_id=46558, 최종검색 : 2020.12.29.)

Rhein-Neckar-Zaitung, Wie Häftlinge mit der strengeren Situation und Besuchsverbot umgehen(https://www.rnz.de/nachrichten/buchen_artikel,-jva-adelshheim-in-corona-zeiten-wie-haeftlinge-mit-der-strengerer-situation-und-besuchsverbot-umgehen-_arid,510542.html, 최종검색 : 2020.12.29.)

Robert Koch Institut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nCoV.html, 최종검색 : 2021.1.12.)

Robert Koch Institut, Pandemiepläne der Bundesländer

(https://www.rki.de/DE/Content/InfAZ/I/Influenza/Pandemieplanung/Pandemieplaene_Bundeslaender.html, 최종검색 : 2020.12.29.)

Schleswig-holstein Der echte Norden, Coronavirus Informationen für Schleswig-Holstein(<https://www.schleswig-holstein.de/DE/Schwerpunkte/Coronavirus/FAQ/Dossier/Justiz.html>, 최종검색 : 2020.12.29.)

Senatsverwaltung für Verbraucherschutz und Antidiskriminierung, Corona: Justizv

ollzug entlastet Mitarbeitende und schafft Personalreserven
(<https://www.berlin.de/sen/justva/presse/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908021.php>, 최종검색 : 2020.12.29.)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Verbraucherschutz und Antidiskriminierung, Coronavirus Covid-19 Aktuelle Informationen
(<https://www.berlin.de/sen/justva/presse/informationen-zu-corona/>, 최종검색 : 2020.12.29.)

Statista, Anzahl der Justizvollzugsanstalten in Deutschland und in den einzelnen Bundesländern im Jahr 2018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93902/umfrage/anzahl-der-JVAen-in-deutschland/>, 최종검색 : 2020.12.29.)

Thüringer Verordnung zur Fortschreibung und Verschärfung außerordentlicher Sondermaßnahmen zur Eindämmung einer sprunghaften Ausbreitung des Coronavirus SARS-CoV-2 sowie zur Ergänzung der allgemeinen Infektionsschutzregeln Vom 14. Dezember 2020
(<https://corona.thueringen.de/verordnungen>, 최종검색 : 2020.12.29.)

Wendepunkt e.V, Geschichte, 25 Jahre Wendepunkt e.V. - Wurzeln und Entwicklungen
(<https://www.wendepunkt-ev.de/ueber-uns/>, 최종검색 : 2020.12.29.)

Wendepunkt e.V., Weiterhin erreichbar für Menschen in Not
(<https://www.wendepunkt-ev.de/aktuelles/wendepunkt-e-v-weiterhin-erreichbar-fuer-menschen-in-not/>, 최종검색 : 2020.12.29.)

Zdf heute, Wie Corona das Leben im Gefängnis verändert
(<https://www.zdf.de/nachrichten/panorama/coronavirus-gefaengnis-kontakt-einschraenkung-100.html>, 최종검색 : 2020.12.29.)

Zeit Online, Wo man in Deutschland jetzt übernachten darf
(<https://www.zeit.de/gesellschaft/2020-10/corona-regeln-deutschland-maskenpflicht-veranstaltungen-buero-bundeslaender-uebersicht>, 최종검색 : 2020.12.29.)

4. 일본 문헌

少年院のしおり, 法務省矯正局

矯正施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感染防止対策ガイドライン, 法務省, 2020
保護観察·少年院送致となった生徒の復学·進学に向けた支援について, 法務省矯正局·保
護局

神谷和孝, 「非行少年の保護観察処遇における官民協動に関する一考察」, 東海學院大學紀
要, 2012

法務総合研究所, 令和2年版犯罪白書, 2020

「三つの密」,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的対処方針 (2020년 3월 28일)」
(2020년 4월 7일 개정)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본부 결정

保護観察·少年院送致となった生徒の復学·進学に向けた支援について, 法務省矯正局·保
護局

細川隆夫(矯正局成人矯正課長), 西岡慎介(矯正局更生支援管理官), 矯正局における試飲
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について-ガイドラインの策定とその運用を中心と
して- 25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1541号)

清水政明(大阪拘置所調査官), 職員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た際の対応(大阪拘
置所), 45-49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 1541号)

菊池康司(東京拘置所首席矯正処遇官), 東京拘置所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被収
容者への対応について, 51-57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 1541
号)

秋田和也(京都刑務所次席矯正処遇官),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想定訓練-京都刑務所に
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想定訓練について-, 60-64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 1541号)

加来浩器(防衛医科大学学校防衛医学研究センター広域感染症疫学, 制御研究部門教授),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 Withコロナ時代を乗り越えるために必要
な知識, 12면, 『刑政』2020/ 10 第131卷第10号(通卷1541号)

矯正施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感染防止対策ガイドライン、改正版2版、概
要、2020年6月、法務省矯正局

Abstract



Juvenile Justice Agencies' Response to COVID-19

Youngoh Jo·Jisun Choi·Sunyong Park·Ji-Hye Chung·Bo Ram Kim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VID-19 on juvenile reformatories and probation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epidemic diseases such as COVID-19. To this end, quant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internal data.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employees and juveniles at the facilities, and guardians. In addition, responses of juvenile facilities in USA, U.K., Germany, and Japan to COVID-19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es, the number of inmates, the number of new inmates, the number of releases, and the proportion of early releases among total releas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or short-term (up to 6 months) and long-term confinement (up to 2 years) while the number of inmates at reformatories for 1-month confinement substantially decreased because the youth who receive 1-month confinement stay at the community until their confinements are scheduled.

For short-term and long-term confinement, the number of inmates who had received educational programs increas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due to the decrease in expulsion from schools which resulted from the increase in online classes at schools in community. Vocational training and character education were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VID-19 because these programs are mainly administered by employees of the facilities. However, some programs run by external specialists or volunteers were managed by employees or replaced with other programs, which migh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Most of programs which require contacts with people outside the facilities, such as programs for guardians, religious programs, visiting, volunteer activities, and field trips decreased or stopped due to COVID-19. For example, religious programs were partially provided online, and visiting was replaced with phone calls.

For juvenile probation, the number of presentence investigations and the length from receipt of a presentence investigation to delivered final report were not affected by COVID-19 except for the period when courts were closed due to the pandemic while presentence investigation were conducted through phone calls. Likewise, the number of guidance and surveillance by probation officers were not influenced by COVID-19, but the proportion of face-to-face guidance and surveillanc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numbers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n education order changed slightly while the execution of them decreased consistently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y were hardly executed in August and September. Number of warrants for arrest decreased, and release after arrest increased during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employees, juveniles, and guardians, juvenile justice agenci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maintain both the protection from COVID-19 and the execution in an emergency. In the reformatories and the diagnosis center, the youth entering the facilities were quarantined, meetings were set in closed-type areas, and restricting the external instructors and activities. The probation offices conducted a limited number of executions under full-scale disinfection measures and conducted non-face-to-face probation. However, during the process, all institutions were having difficulty in COVID19 due to spatial constraints for prevention from the disease, overload of employees, lack of manuals in situations, and lack of government cooperation. The juveniles and guardian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juvenile justice agencies' measures and understood the measures taken for safety. The juveniles in the reformatories were a little disappointed due to the limited situations, especially the closed-type meeting sessions. However, the

juvenile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staying at the facilities. The juveniles under probation were not complaining, even liked the non-face-to-face probation,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probation's effectiveness is better when face-to-face. The juveniles' guardians under probation considered the probation itself was sufficient enough; the adjustments after the COVID19 were acceptable. As a result of the interviews, it is shown that the efforts of the institutions and employees maintain the current safety level while giving satisfaction to the juveniles and guardians. However, the safety maintenance of juvenile justice agencies is temporarily defending problematic situations. If the problems are not resolved, emergency and long-term risk are high;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s countermeasures as possible.

Based on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es with internal data, interviews with employees, juveniles, and guardians, and literature review on responses of juvenile agencies in other nations to COVID-19,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in terms of preventing the spread of epidemic diseases and carrying out programs and service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epidemic diseases at juvenile institutions, first, the agencies should have a designated quarantine area for the you who are infected or showing symptoms, or for new inmates. In addition, an education area should be separated from an administration are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diagnosis centers and facilities which provide programs for one-month confinement to have enough quarantine space to prevent mass infection. Second, juvenile agencies need to discuss with courts regarding reducing or suspending confinement, education order, and community order to reduce the risk of epidemic diseases at the agencies. They also need help from other governmental agencies to secure enough disinfection materials. Third, the agencies should develop comprehensive and effective response guidelines for epidemic diseases, and provide employees with regular simulation training based on the guidelines. In terms of execution of

administrative duties such as providing programs and services, first, the juvenile agencies should relieve overworked employees because officers are more likely to become burned out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from additional duties of controlling epidemics. Therefore, the agencies should adjust workload by focusing on main work. Second, the agencies should select or develop programs and services which can be provided online during the spread of epidemics. Third, comprehensive assessment on the influence of COVID-19 on juvenile agencies(employees, juveniles, and guardian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pidemic diseases. The agencies need to make youth well-being a priority when developing policies and strategies.

〈부록 1〉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²⁰⁸⁾

개정 제2판, 2020년 6월 3일 법무성 교정국 통지

■ 경위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의 전국적 확대가 계속되고 있어, 교정시설에서도 2020년 4월 5일 교정직원의 감염이 발생함. 4월 6일에는 법무대신 지시에 따라 법무성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등의 위기관리대응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법무성위기관리 전문가회의'가 설치됨. 이후에도 교정직원 다수가 감염되고, 같은 달 11월에는 피수용자 1명도 감염됨에 따라 법무대신의 지시에 의해 같은 달 13일에는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상기 전문가회의아래 법무부대신을 좌장으로 하는 '교정시설 감염방지 TF'가 설치됨

동 TF는 같은 달 14일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어 같은 달 22일 제2회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달 27일 제3회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이 책정됨.

1.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대책에 관한 이해

(1) 감염 메커니즘 등

- 주요 감염경로는 비말감염 또는 접촉감염
- 잠복기간은 5일정도이나, 1-14일정도의 정도의 차가 있음
- 감염가능기간(발병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가능한 기간)은 증상발현 2일전부터 임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답, 흉부통, 콧물, 코 막힘), 두통, 격렬한 피로감등의

- 증상이 많은 외에, 미각장애 또는 후각 장애만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도 있음
- 증상자의 80%는 증상발현으로부터 1주간 정도로 경증인 채로 치료받으나, 2%정도는 중증으로 악화되어 호흡 곤란을 동반한 폐렴으로 진전되거나, 심할 경우 인공호흡 관리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며 치사율은 2-5%임
- 중증 증상은 주로 고령자이거나 순환기 질환, 호흡기질환, 암, 각종면역부전 등이 중증화 되기 쉬운 요인임
- 젊은 층의 경우 특히,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나 경증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큰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큼

(2) 방호에 관한 기본적 이해

- 감염증은 ① 감염원, ② 감염경로, ③ 숙주(宿主) 세 가지 요인에 의한 감염, 이들 요인을 토대로 ① 감염원 복멸, ② 감염경로 차단, ③ 숙주대책이 기본임
- 감염원 대책(감염원 복멸)으로 환자의 조기박멸, 격리, 기침 에티켓, 마스크 착용, 환기,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등에 의한 소독
- 감염경로대책으로 표준적 예방책, 감염경로별 철저한 대책, 3개창을 통한 동시 회피(리스크 저감을 위한 제로 회피)
- 숙주 대책으로 충분한 휴식 및 식사를 통한 자연 면역력 향상
- 긴급사태 선언 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적인 대응방침 책정, 교정시설의 모든 관련자에 대한 대응 방침 주지 및 행동변용의 촉진, 비품 및 소비품의 준비
- 조직적인 환경정비, 감염예방책의 실시 및 감염확대방지책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실시, 충실화
- 긴급사태선언 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정시설의 '새로운 생활양식'의 확실한 시행
- 기본적인 이해사항으로 주지해야할 사항(3개의 창 방지, 환기, 기침 에티켓, 개인 방호구(PPE), 소독 및 세정, 농후 접촉자, 건강관리, 새로운 생활양식), 기본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포스터 등의 시설 내 각 소에의 게시, 일상적 주지의 철저

(3) 교정시설 특유의 감염 위험

- 도주방지를 위한 창 및 문의 개방 곤란성, 제한된 공간에서의 집단 작업 및 교육 등의 실시에 의한 3개 창 조건의 중복, 시설 내 감염이 발생한 경우의 감염확대 위험의 취약성
 - 불안 등에 의한 피수용자의 혼란, 규율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위험
 - 감염증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경우의 이용 가능한 의료 상 자원의 한계
 - 직원의 경우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근무
 -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 기초질환을 가진 피수용자의 수용
 - 사회 내 등에서 코로나 19에 노출된 가능성 있는 자에 의한 시설 내 바이러스 유포의 기회(직원, 민간협력자, 민간사업자의 출입, 입소, 시설 간 이송, 면회, 관계기관에 의한 조사, 법정 출정, 외부의료진료, 병원이송, 외출 및 외박, 외부 통근 작업, 원외 교정교육 실시 등)
 - 법률질서의 유지 및 적절한 관리운영을 위해 일정수의 직원배치가 필요함에 따른 사회적 거리 확보위한 텔레워크, 재택근무 활용의 한계
 - 사무실, 대기실, 가수면실 등 지원간의 공유 설비 및 비품이 많은 것 및 야근직원을 중심으로 한 직무상 구속시간의 장기 등
 - 국가공무원인 직원 외, 업무를 민간 위탁한 경우 민간사업자 등, 상이한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는 관계자의 근무에 의한 일정 기준 설정의 어려움
- 상기 기재한 교정시설 특유의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감염증 미 발생 시의 대처 및 발생 후의 대응을 신속,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시설의 매뉴얼작성 등의 조직적인 준비 필요

(4) 교정시설의 감염방지 대책의 조직화

- 판단체제 구축
- 건강관리체제 구축
-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 구축
- 업무계속 계획 책정

2. 감염 방지 대책

(1) 직원·피수용자 각자의 감염 방지

- 개인방호에 관한 정확한 지식의 주지('3개의 창 방지', '환기', '기침 에티켓' '개인 방호구', '소독 및 세정'의 게시)
- 코로나 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간 중, 직원의 수용구역 내외의 의료용 마스크, 피수용자의 의료용 마스크 또는 면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 폐기장소의 지정, 적절한 착용법(폐기 시에는 마스크 표면 비접촉)의 실시
- 소독용 알코올에 의한 손 소독 철저
- 직원 외출의 자제
- 직원 통근수단으로서의 공공교통기간 이용 자제(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감염예방책과 시차출근), 자가용 통근
- 긴급사태선언 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생활양식'을 의식한 대처

(2) 건물, 설비의 감염 방지

- 사무실, 대기실, 수면실, 공장, 교실, 면회실 등의 창 개방 등의 환기(복수의 사람이 일정기간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매시간 2회 이상, 각 회당 일정시간 이상, 2방향의 창 또는 출입구 전부 폐쇄,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풍기 및 환기구의 병용)
- 기계 환기(공기정화설비, 기계 환기 설비)의 필요 환기량(1인당 매시 3m³)의 확보
- 복수 직원 및 피수용자가 접촉하는 장소(집무실, 대기실, 수면실, 공장, 숙소 등, 목욕시설, 화장실 등) 및 비품(차량, 컨테이너, 작업도구, 운동기구 등)의 정기소독(소독용 알코올 등에 의한 소독)실시
- 수면실 사용 시 개인 침구 지참을 통한 공유 회피, 침구 공유 시 직원 개인화 및 시트, 베개커버 등 직원별 교환 사용 철저
- 입소 2주 이내 피수용자를 수용실 전실(轉室) 시 원래 수용실의 소독 및 청소
- 공장, 식당, 교실, 공동 실 등의 작업대, 책상, 침구 등 위치 조정, 피수용자 간 거리 확보
- 감염발생시 신속한 zoning 실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정비
- 면회 시 개인실 사용 및 면회 실시 후의 소독

(3) 집무환경, 처우 환경의 감염 방지

- 직원 점검, 회의, 훈련, 연수 등 다수 직원이 모여 실시하는 업무의 간략화 및 중지, 연기 등 조치, 실시하는 경우에는 3개 창 회피, 단시간 실시, 의료용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방호 철저
- 업무 축소 등에 의한 1일 출근 직원 축소, 근무배치 고정화, 그룹화에 의한 위험 분산
- 감염확대상황에 따라 공지되는 통지 등에 근거한 업무 축소 등
- 운동, 목욕, 의무진료, 도서교환 등의 경우의 환기 철저, 1회당 인원수 축소에 따른 피수용자간 거리 확보
- 다수 피수용자가 모이는 행사 중지 또는 연기
- 이송, 법정 출정, 외부진료, 병원이송 등의 시설 외로의 피수용자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화장실 겸비된 관용차, 휴대용 화장실 사용, 의료용 마스크 또는 면 마스크 착용, 환기 철저
- 물품 납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의 구비
- 교정시설 내 업무 실시하는 민간사업자간의 의심환자 발생 시 정보공유체제 구축

(4) 직원 건강관리

- 코로나 19 감염증상이 인정된 경우, 감염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감염자와의 접촉, 보건소에서 농후접촉자로 인정된 경우, 가족에 의한 감염위험 발생한 경우 등)의 직원에 의한 보고 철저
- 건강관리 총괄 확인자 및 건강관리 확인자에 의한 건강 불량 등이 있는 직원, 감염자(감염 우려 있는 경우 포함) 및 농후접촉이 있었던 직원의 건강상태의 파악 및 재택근무, 특별휴가, 연차 휴가사용 등의 대응
- 코로나 19 감염증확대 상황에 따른 건강관리 확인자에 의한 출근직원의 상태확인 (체온, 감기증상, 피로감, 구토, 미각장애 등 유무), 건강관리 총괄 확인자에 보고
- 보건소가 결정하는 농후 접촉자 외, 교정시설 특유의 감염위험을 고려하여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자도 독자적 건강관찰 대상으로 함
- 건강관찰 대상자 직원의 직장 복귀와 관련한 보건소, 의료기관 간 조정
- 불가피한 대중교통기관 이용 직원에 대한 적극적 역학 조사 협력이 가능하도록,

최근 2주간 근무표의 기록, 각 직원에 대한 과거 2주간 행동경력(근무일, 방문 장소, 접촉자 등)의 설명준비 주지

(5) 피수용자의 건강관리

- 신입소자의 건강상태파악 철저,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인수 및 확인
- 신입소자의 단독실 사용 14일간 매일 조석으로 체온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14일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시설 실정에 따른 건강 상태 파악
- 출소자 출소 전 2주정도 건강상태의 관찰,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본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피수용자의 건강에 관한 기록 정리

(6) 외부방문자로부터의 감염방지책

- 면회자, 보호자, 민간협력자,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의료용 마스크 또는 면 마스크 착용, 손 위생 철저
- 한정된 장소에서의 물품 유입
- 협력 거부자 대응 사전 예시
- 감염상황에 따라 공지되는 통지 등에 따른 민간협력자 및 관계기관과의 활동, 작업업무의 조정(중지, 연기, 대체조치 검토), 외부자에 의한 감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최근 2주간 외부방문자 기록 준비

3. 감염자 등이 발생한 때의 대응

(1) 시설내의 초기 대응

- 직원 또는 그 동거가족이 감염된 경우 또는 농후접촉자가 된 경우의 시설장에게 보고
- 피수용자, 민간협력자(가족 포함)에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에 신속 보고
- 보건소 지시에 기초한 대응

- 감염자 이외자의 긴급 건강상태 파악(새로운 감염자 등의 조치 파악)
- 감염자 행동력 조사, 접촉한 피수용자 등 지정
-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최근 14일간 행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준비
- 상급관청에 보고

(2) 외부관계기관과의 조정

-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 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 신규 입소, 공판기일 조정 및 면접, 석방 등의 대응과 관련된 경찰, 검찰, 법원, 변호인, 지방강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 보건소 등의 관계기관과 연락, 협의, 조정
- 민간협력자에 대한 설명 및 활동 중지, 감염자 등과 일정 접촉이 인정되는 민간협력자에 대한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 조사에의 협력 요청
- 형사시설시찰위원회, 소년원시찰위원회 또는 소년감별소 시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필요 정보 제공

(3) 직원이 감염된 경우의 대응

- 감염증 대처 병원에 원칙적 입원, 증상 및 입원 의료기관의 상태 등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자택에서의 자숙
- 감염자의 퇴원기준, 퇴원 후 2주간 건강상태 확인, 직장복귀시기 검토

(4) 피수용자가 감염된 경우의 대응

- 지역 감염 상황, 피수용자의 증상, 고령자 및 기초질환 유무 등에 따른 의료체제 정비(교정시설 수용된 상태에서의 치료,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입원, 의료형무소 이송), 증상 악화시의 보건소에의 보고
- 피수용자의 증상이 악화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자 또는 친족에의 통지, 피수용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사관 등에의 통보, 피수용자가 미결구금자인 경우 검찰에의 통보, 통지 및 통보 시기와 관련된 의사와의 협의

(5) 건물 및 설비의 감염 대책

1) 소독 등 실시

- 감염자가 코로나 19 감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2일 전을 기점으로 한 감염자의 행동장소 조사, 특정 및 소독 실시
- 감염자가 장기간 체재한 장소 환기, 접촉했다고 보이는 부위 및 물품(화장실, 세면소, 욕실, 도아노브, 수도꼭지 등)의 소독(소독용 알콜로 청소), 소독실시시 개인 방호구(고글, 마스크, 장갑, 가운 등) 착용에 의한 2차 감염 방지 철저
- 감염자가 사용한 식기, 린넨 수용성 세탁 커버, 비닐봉지 등에 의한 반송, 뜨거운 물 세정(80℃에서 10분간)

2) zoning(오염지역과 소독지역 분류)

- 감염자 및 감염 의심자를 수용하는 '환자격리지역'(오염지역-red zone), 감염자와 농후 접촉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하는 '건강관찰지역'(오염지역(red zone), 직원 등의 직무지구와 감염자와 접촉이 없는 자를 수용하는 '일반 에리어'(소독지역 green zone)의 구분, 각 에리어 간 직원 및 피수용자의 왕래 제한,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간 완충지대(yellow zone)의 설치
- zoning, 각 에리어에 따른 개인 방호구의 적절한 착용, 탈의, 물품 수수 등에 의한 감염 방지
- 각 에리어에 근무하는 직원 선정 및 특정, 처우팀 편성
- 각 에리어 경계선에 테이프, 간이칸막이, 표지판에 의한 표시, 각 에리어와 교차되지 않는 동선 확보

(6) 감염 피수용자 대응(개인 방호구 등)

- 각 에리어에 따른 눈, 코, 입을 둘러싸는 개인 방호구(아이시트 부착된 의료용 마스크 도는 의료용 마스크와 고글, 페이스실드 등의 조합), 모자, 가운, 장갑 착용, 상황에 따른 방호복 착용
- 개인 방호구의 효율적 사용
- 의료용 마스크 및 장갑 등 적절한 조치, 소정의 장소에의 폐기, 정기적인 회수, 적절한 처리

- 적절한 손 소독 철저(손 소독 전 눈이나 얼굴 접촉 금지)

(7) 농후 접촉자 등의 특성과 그 대응

- 교정시설 특유의 감염위험에 근거한 접촉자의 조사 및 분류
- 농후 접촉자의 바이러스 검사, 감염자가 오염된 가능성 있는 환경을 특단의 소독 및 환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72시간 이내 이용한 자의 최후 접촉 등의 익일부터 14일간의 건강 관찰
- 감염자의 증상발현 14일 전후에 접촉한 자에 대한 건강 상태 확인, 상황에 따른 건강관찰 등 조치
- 농후 접촉자 등의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의 분류
- 감염자에 대한 조사 결과, 외부관계자(민간협력자, 형부작업 제공기업의 종업원, 외부강사 등)에 접촉자가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의 해당 관계자 또는 해당 관계자가 소속하는 기관에의 신속한 연락

(8) 감염 확대 방지책

1) 직원이 감염된 우려가 발생한 경우

- 농후접촉자 등에 해당하는 직원의 바이러스 검사실시와 자택 대기에 의한 건강 관찰
- 상기 이외의 직원의 경우 감염자 및 농후접촉자 등과의 동일 장소 근무 등 장기간, 비교적 근거리에서 함께 지냈다고 여겨지는 직원의 조석 체온 측정
- 건강 관찰 대상이 된 직원의 직장 복귀
-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조사의 결과, 농후접촉자로 판단된 직원의 직장 복귀
- 타 시설 직원의 응원근무를 포함한 업무계속 방책의 검토 및 실시

2) 피수용자가 감염된 경우

- 감염된 피수용자의 환자격리 에리어(오염지역)에서의 격리
- 건강관찰 대상이 된 피수용자의 건강관찰 에리어(오염지역)에서의 개인실 지정, 공장에서의 작업 등 집단처우 중지, 매일 체온측정 및 증상 확인
- 각 에리어에서의 처우 등 요령 책정

- 건강관찰대상이 된 피수용자의 일반 에리어에서의 수용 및 처우
- 보건소에 의한 적극적 역학조사의 결과, 농후접촉자라고 판단된 경우의 피수용자의 일반 에리어에서의 수용 및 처우
- 건강관찰 대상이 된 피수용자에게 감염이 우려되는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의한 지시에 근거한 대응, 환자 격리 에리어로 이동 검토

(9) 업무계속 대책(직원의 근무대응 등)

- 자택대기직원 수에 대응한 근거리 시설 등으로부터의 근무 지원 조정
- 교정국에 의한 발생시설의 대응상황 및 관내시설의 직원 상황에 대응한 특별기동 경비대의 응원근무의 검토 및 실시
- 응원직원의 감염위험의 낮은 업무 종사, 오염지역에서의 근무 등 불가피하게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응원 종료 후의 건강관찰 등 응원 원래 시설에의 바이러스 유입 방지
- 통근 등의 이동에 의한 감염위험 배제위해 응원직원의 지구 내 숙박시설이용 및 지역 외 숙박시설로부터의 관용차 송영 검토

4. 감염방지를 위해 확보해야 할 비품 및 소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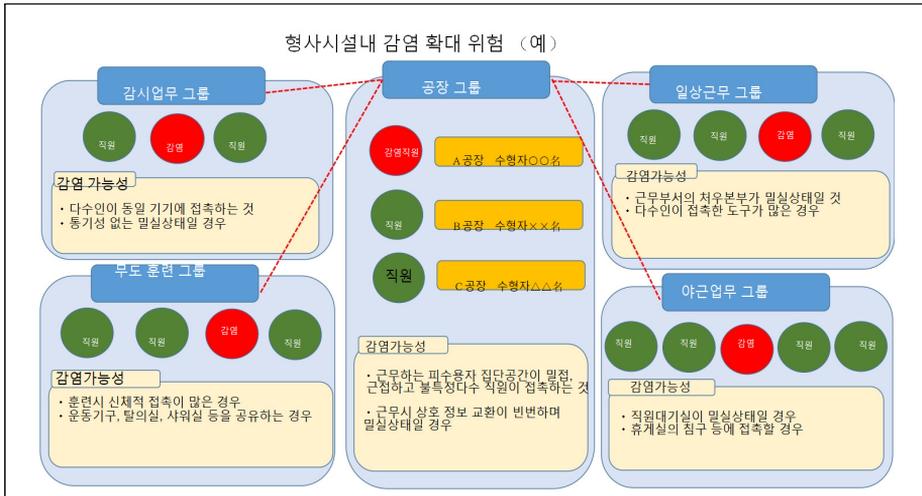
장갑, 의료용 가운, 방호복, 모자, 고글, 페이스실드, N95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체온계(접촉형, 비접촉형), 소독에 필요한 재료 등, 개별방호 및 소독에 필요한 비품, 소비품의 사용기준 명확화, 효율적인 사용

<그림 2>²⁰⁹⁾

208) 加来浩器(防衛医科大学校防衛医学研究センター広域感染症疫学,制御研究部門教授), 特集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 Withコロナ時代を乗り越えるために必要な知識, 12면, 『刑政』2020/10 第131卷第10号 (通卷1541号)

209) 矯正施設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感染防止対策ガイドライン、改正版2版、概要、2020年6月、法務省矯正局

210) 厚生労働省社会・援護局総務課 事務連絡 (2020년 4월 8일), 各都道府県地域生活定着促進事業担当課 御中



2. 사회 내 처우의 경우

현재 법무성의 코로나 관련 지침의 시설 내 처우의 경우만 통지되어 있으며, 사회 내 처우관련 시설별, 담당자별 처우는 일반적인 코로나 19대응책 및 소속기관 특성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경우 소재지 도도부현지사의 업무지시 및 협력을 통해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각 도도부현에 통지한 사무연락은 다음과 같다.

[후생노동성, 지원국, 총무과 사무연락 발췌]

○ 사업의 일시정지²¹⁰⁾

- 도도부현 지사의 요청 내용, 지역생활정착 지원센터 직원이 감염된 경우, 관계 업무 담당인 복지관계사업자의 상황 등 사정에 따라 지역생활 정착지원센터의 업무를 정지해야할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업무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장의 의뢰에 따라 생활환경 조정 협력 및 보호관찰소의 대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귀소 희망지 또는 귀소예정지로 다른 도도부현 센터로부터의 지원업무협력의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된 것을 협력의뢰처인 소재지

212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센터에 보고하고, 소재지센터는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소관 하는 보호관찰소와 대응을 협의하여야 한다.

- 지원중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담당자 및 협력의뢰처 시설 직원 등을 통하여 사전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록 2〉

[행사시설, 입국자수용소 등 면회 관계- 면회를 위해 교정시설 방문하는자에 대한 요청-]

2020년 5월 26일자

긴급사태선언이 2020년 5월 25일 해제됨. 전국 교정시설(형무소, 구치소, 소년형무소, 소년원, 소년감별소)에서 통상대로 면회 실시함.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고, 면회를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시설 방문자에게 이하의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력을 요청함.

- 코로나 19 감염환자, 확진자, 접촉자 및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분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방문자수는 되도록 한정해 주세요.
-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필착해 주세요.
- 접수 및 대기실에서는 되도록 거리를 두어 앉아주세요.
- 방문자 수가 많은 경우 대기실 입장 제한이 있습니다.
- 직원이 발열체크 또는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강이 좋지 않은 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는 분 등은 시설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록 3〉

[관계 법률]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2012년 법률 제31호」

제45조 ① 특정 도도부현 지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의 경우, 신형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특정 도도부현 주민에게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잠복기간 및 치유까지의 기간과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특정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기간 및 구역에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자의 주택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소에서의 외출 금지 및 기타 신종 플루엔자 등의 감염 방지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정 도도부현 지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의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잠복기간 및 치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특정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기간에 학교, 사회복지시설(단기간의 입소에 한함), 흥행장(興行場)(흥행장법(1948년 법률 제137호)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흥행장을 말한다.)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행사 개최를 개최하는 자(다음 항에서 '시설관리자 등')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개최 제한이나 정지,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설관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도도부현 지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설관리자 등에게 해당 요청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④ 특정 도도부현 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연구총서 20-AB-07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발행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한인섭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고려씨엔피 02-2277-1508/9

I S B N | 979-11-89908-94-2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